

第177回國會 統一外務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95年9月20日(火)

場 所 統一外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1994年度歲入歲出決算(계속)
가. 外務部所管
2. 1994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外務部所管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歲入歲出決算(계속)
가. 外務部所管 1面
2. 1994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外務部所管 1面

(10時20分 開議)

○委員長 吳世應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77回國會 第3次 統一外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1994年度歲入歲出決算(계속)
가. 外務部所管
2. 1994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外務部所管

○委員長 吳世應 議事日程 第1項 1994年度歲入歲出決算 議事日程 第2項 1994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外務部長官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幹部를 소개해 주시고 報告해주시기 바랍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존경하는 吳世應 統一外務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委員長님 말씀에 따라서 우선 새로 부임한 저희 外務部 幹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西아시아·아프리카局長으로 새로 부임한 金明培理事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文化協力局長 全富寬理事官입니다.

在外國民領事局長 姜雄植理事官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으로부터 1994年度 外務部所管 歲入歲出 決算과 豫備費支出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年度 歲出豫算과 豫備費를 사용하여

시행한 外務部の 主要事業 實績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決算 내용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중 外務부가 추진한 주요사업 실적은 북한 核問題 해결과 平和定着 모색, 頂上外交 추진, 새로운 經濟環境에의 능동적 대처, 亞·太地域協力の 심화, 유엔 등 국제기구 外交強化, 문화외교의 내실화 및 재외국민 지원 그리고 외교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당면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韓·美·日 공동보조를 근간으로 한 國際共助體制를 통해 북한 핵의 국제적 관리 및 통제와 북한의 NPT 잔류 등 북한 핵문제해결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3단계 美·北韓會談이 94년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핵문제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해결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냉전종식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 있어 韓·美 양국간 頂上會談과 外務長官간의 회담을 수시로 개최하여 기존 동

맹관계를 강화해 가는 한편 경제, 통상, 과학,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켰습니다.

日本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94년3월 金泳三大統領의 訪日과 94년 7월 무라야마總理의 訪韓 등을 계기로 총 3차례에 걸친 頂上會談과 6차에 걸친 外務長官會談을 통하여 양국간의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신린우호관계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中國과는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인적 교류가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金泳三大統領의 中國 公式訪問과 李鵬 中國總理의 訪韓 그리고 5차에 걸친 韓·中 外務長官會談을 통해 실질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러시아와는 94년6월 金大統領의 公式訪問과 양국 外務長官會談을 통해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주변 4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우리의 외교지평을 넓히는데 힘써 왔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새로운 經濟環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經濟實利外交를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무역입국으로서 GATT체제 이후의 세계 통상질서에 적극 참여키 위해 WTO 가입협정의 비준을 추진하는 한편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에 우리가 적극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WTO 事務總長에 立候補한 金喆壽 商工資源部長官의 被選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韓·美頂上會談과 經濟協議會 등 定例協議를 통해 양국간의 통상마찰을 극소화하고 각종 통상현안 타결을 위해 양국정부 및 민간간 협력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중국과는 지속적인 통상관계의 확대로 중국은 우리의 3大 貿易相對國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6大 交易相對國으로 부상하였으며, 아세안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은 계속 신장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EC의 EU로의 확대개편과 더불어 EU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경제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對EU 교역 및 투자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環境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제적인 地球環境保護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선진 경제권에 진입하는 역사적인 관문으로서 OECD에의 加入을 결정하고 이의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亞·太地域協力 심화를 위해 능동적인 亞·太外交를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亞·太지역의 地域協力體인 아세안 擴大外務長官會議과 APEC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우리 亞·太外交의 양축으로 활용함으로써 亞·太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실리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94년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第2次 APEC 頂上會談을 계기로 金泳三大統領은 클린턴 美國大統領 및 무라야마 日本總理와 최초로 韓·美·日 3個國 頂上會談을 개최하여 외교적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金泳三大統領은 APEC 頂上會議 참석기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를 방문하였으며, 國務總理는 베트남 싱가포르 방글라데시를 순방하여 亞·太지역내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유엔 등 國際機構 外交強化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安保理 非常任理事國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인도적 구호활동 등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가는 한편 開途國의 경제 사회개발을 위한 협력사업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93년 소말리아 平和維持團 참여에 이어 94년 7월에 서부 사하라 평화유지단에 의료부대 42명, 그루지아 유엔감시국에 군용저버 6명, 인도·파키스탄 軍事監視團에 군용저버 5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은 응분의 기여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더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원화되어 가는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國家間의 文化交流의 중요성이 더욱 증

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각국과의 문화협정 체결, 문화공동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교류 등 정부차원에서의 문화외교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한 민간의 문화 학술단체를 활용하여 민간차원에서의 문화교류 증진활동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조하에 해외에 있는 우리 文化遺蹟과 文化財의 實態調査 保存 또는 國內還收를 추진하고 중경 臨政廳舍 복원 및 上海 臨政廳舍 관리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행정의 公開意志를 구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48년 정부수립이후 1959년도까지의 외교문서를 94년 1월말부터 공개하였으며 1960년 이후 文書도 94년말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在外國民 支援과 관련하여서는 일본내 우리 교포의 일본내 地方參政權 獲得運動을 측면 지원하는 등 재일교포가 일본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재미교포의 경우에도 현지사회에 잘 적응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교포의 안전대책에 특히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미국 사회의 제반분야에 진출하여 위상을 높이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僑胞들의 母國訪問이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함을 감안하여 특히 구소련 제국 지역과 중국 거주 교포의 모국방문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한편 외무부의 오랜 宿願事業으로서 외무부의 廳舍建立을 위한 設計費를 95년 정부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시켰으며 서울시측과 부지문제 해결되는 대로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면 앞으로 우리 외교의 국제경쟁력 확충에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제정세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하여 94년중에는 청도 總領事館을 신설하고 거점공관 중심으로 기동성있는 외교망을 운영코자 나미비아, 우간다 2개 공관을 폐쇄하는 등 外交網 整備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외교업무를 위해 외교망 정비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4年度 主要業務實績에 대한 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決算內譯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4年度 外務部 歲入豫算은 314억1,3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551억6,0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237억4,700만원정도의 세입초과를 가져왔습니다.

94년도 歲出豫算額은 3,276억원 계상되었으나 여기에 豫備費 前年度 豫算移越額 그리고 收入對替經費 등 503억원이 추가됨으로써 豫算現額은 3,779억원이 되었습니다.

豫算現額에 대한 執行率은 약 94%입니다만 동 집행 잔액 214억원중 92억원은 95년도로 이월되었고 122억원은 불용액으로 국고에 납입 조치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年度 外務部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內譯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原案대로 承認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世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구체적인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外務部企劃管理室長 金恒經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994年度 外務部所管 歲入歲出 決算報告 및 豫備費 支出內譯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報 告)

목 차

I. 일반회계

1. 1994년도 결산개요

○세입

○세출

2. 세입 결산요약

3. 세입 결산보고서

○세입 증감액 조서

4. 세출 결산요약

가. 세출 예산 집행 개요

나. '94 세출 예산 결산요약

5. 주요업무 추진실적

6. 예비비 사용조서
 7. 세출예산 이용사유 총괄표
 ○세출예산 이용 조서
 8. 세출예산 전용사유 총괄표
 ○세출예산 전용조서
 9. 세출예산 이월사유 총괄표
 ○세출예산 이월조서
 10. 세출예산 불용액사유 총괄표
 ○세출예산 불용액조서

11. 수입 대체경비 세입결산
 12. 수입 대체경비 세출결산
 13. 국고채무부담행위 개요
 14. 채권 현재액 보고
 15. 정부출연금 집행내역
 16. 보조금 집행내역
 II.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1. 세출결산보고서
 2.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I. 일반회계

1. 1994년도 결산개요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예산액 (A)	정수결정액 (B)	수납액 (C)	C/A(%)	C/B(%)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31,413	55,160	55,160	175.6	100.0	0	0

나. 세출

(단위 : 백만원)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C/A(%)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327,566	377,900	356,494	108.8	94.3	9,217	12,189

※ 예산현액 377,900 : 예산액 327,566 + 예비비 12,668 + 전년도 이월액 32,616 + 수입대체경비 5,050 (단위 : 백만원)

2. 세입결산 요약

가. 세입결산 내역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 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의차	예산액대 수납액 비율(%)
재화 및 용역 판 매 수 입	1,750	3,291	3,291	0	0	1,541	188
수입대체경비	29,663	51,869	51,869	0	0	22,206	175
합 계	31,413	55,160	55,160	0	0	23,747	176

나. 예산대비 수납액 증감사유

- 여권발급 수수료 및 영사수입금 증가

- 재외공관 국유화 자금 이자 및 잡수입 증가

3. 세입결산보고서

(단위 : 원)

과	목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세입예산원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 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차		예산대비 증감사유
	항	목								증	감	
13 재화및 용역판매 수입	69 기타 잡수입		1,749,670,000	0	1,749,670,000	3,291,010,001	3,291,010,001	0	0	1,541,340,001		
			1,749,670,000	0	1,749,670,000	3,291,010,001	3,291,010,001	0	0	1,541,340,001		
14 수입 대체경비	65 면허료및 수수료	691	1,749,670,000	0	1,749,670,000	3,291,010,001	3,291,010,001	0	0	1,541,340,001		
			29,663,059,000	0	29,663,059,000	51,868,568,000	51,868,568,000	0	0	22,205,509,000		
수입 대체경비	651		29,663,059,000	0	29,663,059,000	51,868,568,000	51,868,568,000	0	0	22,205,509,000		
			29,663,059,000	0	29,663,059,000	51,868,568,000	51,868,568,000	0	0	22,205,509,000		
합	계		31,412,729,000	0	31,412,729,000	55,159,578,001	55,159,578,001	0	0	23,746,849,001		

○ 세 입 증 감 액 조 서

일반회계 외무부소관

(단위 : 원)

과목	예산대비 증감차액		증감사유
	증	감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541,340,001		○ 재외공관 국유화 자금이자 및 잡수입 증가
69 기타 잡수입	1,541,340,001		
691 기타 잡수입	1,541,340,001		
14. 수입 대체경비 수입	22,205,509,000		○ 여권발급 수수료 및 영사 수입금 증가
65 면허료 및 수수료	22,205,509,000		
651 면허료 및 수수료	22,205,509,000		
합 계	23,746,849,001		

4. 세출결산 요약

가. 세출예산 집행개요

1) '94예산 변동내역

가) 예산액 : 327,565,875,000

나) 예산결정후 증감액 : 50,334,034,000

—전년도이월액 : 32,616,490,000

—예비비 : 12,667,856,000

—수입대체경비 : 5,049,688,000

다) 예산현액 = (가) + (나) : 377,899,909,000

2) 지출액 : 356,493,865,560

3) 다음년도 이월액 : 9,217,028,200

○이월사유

—걸프전 관련 지원사업 지연 : 8,922,904,200

—국제전용회선료 청구 지연 : 294,124,000

4) 불용액 : 12,189,015,240

—계획변경 및 취소 : 2,046,074,000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 20,000,000

—예산절감 : 313,185,670

—집행잔액 : 8,975,190,570

—거타 : 834,565,000

※불용액중 예비비 : 2,918,966,570, 일반예산 : 9,270,048,670

(다음 페이지에 계속)

나. '94 세 출 예 산 결 산 요 약

일반회계 외부수관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예산결정후증감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이용증감액					
130 일반행정	327,565,875,000	32,616,490,000 (5,049,688,000)	12,667,856,000	3,106,853,000 -3,106,853,000	1,280,443,000 -1,280,443,000		377,899,909,000	356,493,865,560	9,217,028,200	12,189,015,240
132 외부행정	327,565,875,000	32,616,490,000 (5,049,688,000)	12,667,856,000	3,106,853,000 -3,106,853,000	1,280,443,000 -1,280,443,000		377,899,909,000	356,493,865,560	9,217,028,200	12,189,015,240
1100 외부행정	29,317,160,000	0	0	8,250,000 -8,250,000	516,183,000		29,833,343,000	26,772,993,650	0	3,060,349,350
1101 기관운영	29,169,549,000	0	0	8,250,000 -8,250,000	516,183,000		29,685,732,000	26,625,886,230	0	3,059,845,770
1111 공관관리	147,611,000	0	0	0	0		147,611,000	147,107,420	0	503,580
1200 외교활동	26,602,417,000	32,616,490,000	12,667,856,000	182,336,000 -182,336,000	0		71,886,763,000	58,336,822,060	9,217,028,200	4,332,912,740
1211 일반외교 활동	15,668,145,000	32,377,128,000	12,202,737,000	-64,722,000	0		60,183,288,000	47,253,458,810	9,217,028,200	3,712,800,990
1212 문화홍보 활동	4,375,341,000	0	0	15,588,000 -90,800,000	0		4,300,129,000	4,249,834,990	0	50,294,010
1213 경제활동	4,830,576,000	0	0	8,902,000 -20,000,000	0		4,819,478,000	4,413,318,760	0	406,159,240
1214 국제회의	1,260,528,000	0	0	157,846,000	0		1,418,374,000	1,358,890,820	0	59,483,180
1216 의전활동	467,827,000	239,362,000	465,119,000	-6,814,600	0		1,165,494,000	1,061,318,680	0	104,175,320

일반회계 외무부소관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비비 사용액	전용증감액	이용증감액				
1300 영사교인	12,753,697,000	(5,049,688,000)	0	0	0	17,803,385,000	17,629,135,650	0	174,249,350
1311 영사교인	7,820,143,000	0	0	0	0	7,820,143,000	7,654,700,630	0	165,442,370
1312 여권발급	4,919,222,000	(5,049,688,000)	0	0	0	9,968,910,000	9,963,114,150	0	5,795,850
1313 이민사업	14,332,000	0	0	0	0	14,332,000	11,320,870	0	3,011,130
1400 제외공관	193,712,336,000	0	0	2,884,290,000	-1,280,443,000	192,431,893,000	187,880,891,000	0	4,551,002,000
1411 공동운영	111,150,335,000	0	0	1,140,167,000	-1,280,443,000	108,427,929,000	103,888,390,330	0	4,539,538,670
1412 주·미국 대사관운영	4,837,882,000	0	0	72,400,000	0	4,910,282,000	4,910,155,670	0	126,330
1413 주·일본 대사관운영	7,095,418,000	0	0	755,046,000	0	7,850,464,000	7,846,931,240	0	3,532,760
1414 주·중국 대사관운영	2,944,273,000	0	0	379,102,000	0	3,323,375,000	3,323,166,840	0	208,160
1415 주·러시아 대사관운영	1,784,495,000	0	0	0	0	1,784,495,000	1,784,419,060	0	75,940
1416 주요공관 운영	16,680,403,000	0	0	379,912,000	0	17,060,315,000	17,059,408,370	0	906,630
1417 기타공관 운영	49,219,530,000	0	0	157,663,000	0	49,075,033,000	49,068,419,490	0	6,613,510
5100 외교연구	8,519,773,000	0	0	31,977,000	511,534,000	9,031,307,000	8,987,898,020	0	43,408,980

일반회계 외무부소관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예산결정후증감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 비 비 사 용 액	전용 증감액	이용증감액					
5111 외교안보 연구원운영	8,519,773,000	0	0	31,977,000 -31,977,000	511,534,000		9,031,307,000	8,987,898,020	0	43,408,980
7100 대외협력	56,660,492,000	0	0	0	252,726,000		56,913,218,000	56,886,125,180	0	27,092,820
7112 국제기구 분 담 금	25,617,600,000	0	0	0	252,726,000		25,870,326,000	25,870,325,980	0	20
7113 대개도국 재 원	31,042,892,000	0	0	0	0		31,042,892,000	31,015,799,200	0	27,092,800

(參 照)

5.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북한 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

1)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

- 한·미 정상간 hot-line 체제 구축
- 한·미 외무장관 회담 수시 개최
- 양국 핵대사간 긴밀한 협의체제 유지 및 현지 공관을 통한 상시 협조체제 유지
- 대통령의 중국(3.26-30), 러시아(6.1-4, 7) 방문 등 중·러와의 협조관계 유지
-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IAEA 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2) 한반도 안보기조 공고화 및 통일촉진 노력

- 한·일 정상회담(3회), 외무장관 회담(6회), 국회차원의 교류 등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관계 강화
-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12.1),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 개최 등 한·미 안보협력관계 강화
- 한·중 정상회담, 국회 외통위 의원단 방중 등 중국과의 관계 강화
- 대통령 러시아 방문(6.1-4.7) 후 양국 외무장관 회담(7.25), 러시아 주요인사방한 등 한·러 정상회담 후속조치 철저

나. 새로운 경제환경에의 능동적 대처

1) 통상의 확대 균형 추구

-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 주요국과 상호보완적 경제협력관계 구축
 -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호주 방문 등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다자간 통상외교 기반강화 및 국내적 준비태세 확립
 - WTO 협정가입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
- APEC에서의 핵심적 역할 수행
 - APEC 정상회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조정 역할
 -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의장국으로서 APEC 활성화에 기여
- 미·일·EU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동반자적 경제, 통상협력 기반 마련
 - 한·미 경제협력대화(DEC)의 성공적

마무리

- 한·일 신경제협력기구(NIEP) 1, 2차 회의 개최
- 한·EU 각료회의 개최(한·EU 기본협력협정 체결추진)
- 2)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
 - OECD가입 준비
 - OECD에 아국 가입의사 통보(94.4.27 외무장관 서한)
 - 95년중 가입조건 협의
 - 96년말까지 가입
 - OECD 산하위원회 참가 확대
 -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정회원 가입
 - 재정위원회외 8개 위원회 옵서버 참가 결정(OECD 26개 위원회중 17개 위원회 참가)
 - 3) 환경 및 과학, 기술, 자원 외교활동 강화
 - 국제환경협약 가입 및 양자 환경협정 체결
 -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몬트리올의정서 코펜하겐 개정의정서 가입
 - 몬트리올의정서상 개도국으로 재분류 확정 및 10년 유예기간 확보 등 우리 입장 반영
 - 제2단계 지구환경기금(GEF) 가입, 동해 오염공동조사 실시, 일·중과 환경공동위원회 및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채택회의 개최 등 다자 및 양자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 과학·기술 선진국과의 과기협력 확대
 - 미·일·러·중과 과기공동위 개최 등
 - 한·중 원자력협력협정 등 과기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자원협력 강화
 - 사하가스전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합의
 - 4) 대개도국 경제협력 기반 강화
 - 무상협력 110여개국에 2,921만불 지원, 유상협력(EDCF) 4개국 9개 사업에 1억 2백만불 지원 결정
 - 제35차 콜롬보플랜 총회 서울 개최(10.26-28)
 - 한·중 산업협력위원회(94.6), 한·중 경

제공동위(94.12) 개최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 기반 강화

다. 아·태 협력 심화

- 1) APEC을 중심으로한 포괄적 아·태 협력 추진
 - 94.11.APEC 정상회의 각료회의 및 4회에 걸친 APEC 고위 간부회의에 적극 참가, 우리의 아·태 경제외교 기반 강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무역투자위원회(CTI)의 장국으로서 역내 조정자 역할 수행
 - 실무그룹을 중심으로한 APEC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
 - APEC 저명인사그룹(EPG), 태평양 경제인 포럼(PBF) 참여 야국인사 지원
- 2) 다자안보대화를 통한 안보체제 보완
 - 아·태지역차원의 광역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적극 참가
 - 고위간부회의(94. 5), 각료회의(94. 7)
 - 다자안보대화 기반조성을 위한 한·미·일 3자 정책협의회 2회 개최
 - 구주안보협력회의(CSCE) 참여를 통한 경험과 지식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추진에 활용

라. 유엔 등 국제기구 외교강화

- 1)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 96-97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 아프리카(5.2-12) 3개국 및 중동(5.29-6.9) 4개국에 지지교섭을 위한 대통령 특사 파견
 - 유엔 및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
 - 유엔 산하위원회(유엔인권위원회 등 5개 위원회)
 - 유엔 전문기구(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등 8개 기구)
 - 기타(국제통신위성기구 등 5개 기구)
 - 한국인의 국제기구사무국 진출을 통한 우리나라와 국제기구간 협력기반 강화
- 2)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참여
 - 평화유지활동 참여
 -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MINURSO)의로 부대 42명 파견(94.9)
 - 그루지아 평화유지단(UNOMIG)에 군용

서버 6명 파견(94.10)

—인도·파키스탄 군사감사단(UNMOGIP)에 군용서버 5명 파견(94.11)

○유엔 군축활동 참여

—유엔 군축위원회(UNDC) 회의 참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서명

○인권·여성·민권 등 범세계적 문제관련 국제회의 적극참가

마. 문화외교의 내실화

1) 우리예술과 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 조성

- 각국과의 문화협정 체결(77개국), 문화공동위 설치(18개국) 및 청소년 교류
- 민간의 문화·학술 단체를 활용하는 민간차원에서의 문화교류 증진활동 지원
-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한 지원활동
- 대개도국 체육지원 및 교류 확대 추진
-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지원활동 전개

2) 해외유적·유물 및 문화재 보호

- 우리 문화유적과 문화재의 실태조사, 보존 또는 국내환수 추진
- 중경임정청사 복원 및 상해임정청사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

바. 재외한인 지원

1) 국제화시대에 상응한 교포정책 지원

- 교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정 및 재외공관공증 수수료 규정 개정
 - 주일 각급 공관 여권업무의 민단경우 관행 개선
 - 재외공관의 여권 유효기간 연장업무 개선
 - 해외 유학생 병적업무 개선
 - 우리국적 상실자의 토지 양도기간 연장
 - 외국 국적 소지 교포의 국내체류절차 개선

○교민 거주국에서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2) 본국과의 유대강화

- 한인회 등 교민단체의 문화행사, 한글학교 운영등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포행사 지원

○CIS, 중국 등 사회주의권 거주 동포의 모국방문기회 확대 및 모국어 교육등을

통한 전통문화 재생, 확산 지원
사. 국제화 지원과 외교의 국제경쟁력 강화

1) 국제화 지원

○국제관계자문대사를 활용한 지방의 국제화 도모

○외교안보연구원을 통한 공무원의 국제화 교육

—국제회의 전문요원과정,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국제화 교육과정, 경제·통상 전문가 양성 과정 등 운영

○각종 민간포럼의 개최와 민간기구의 국제적 활동 장려

2) 외교의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 통상, 환경, 군축, 안보, 인권 등 제분야의 전문외교관 양성 추진

○공관장의 효율적 지휘체제의 정립을 통한 재외공관의 외교능력의 극대화 도모

○외무부 청사 건립 추진

아. 정상외교 추진

1) 대통령 외국방문

○일본 및 중국 방문(3.24-30)

—일본 방문(3.24-26)

- 양국간 신뢰협력관계 확대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위한 지역적 기반 구축
- UR 이후 우리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중국 방문(3.26-30)

- 양국간 신뢰우호 및 실질협력관계 증진
-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의 능동적 참여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방문(6.1-7)

—러시아 방문(6.1-4, 7)

- 우리의 안보 및 평화통일 기반 강화 등 양국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정립
-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경제협력 확대

—우즈베키스탄 방문(6.4-6)

- 양국간 상호보완적 실질협력관계 강화 기반 구축
- 양국간 경제협력, 문화교류 증대기반 조성
- CIS거주 한인 보호 및 민족적 유대감 고취

○아·태 3개국 순방

—필리핀 방문(11.10-12)

—인도네시아 방문 (11.12-16)

—호주 방문(11.16-19)

○APEC 정상회의(11.15, 인도네시아 보고르)참석계기 양자 및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양자회담

한·미, 한·일, 한·중, 한·캐나다(11.14, 자카르타)

—한·미·일 3국 정상회담

2) 외국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방한

○Iliescu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3.9-11)

○Hnatychyn 캐나다 총독 방한(4.21-25)

○Wesinemesinge스리랑카 수상 방한(5.24-27)

○Chuan 태국 수상 방한(6.23-26)

○무라야마 일본 총리 방한(7.23-24)

○Klaus체코 수상 방한(10.5-7)

○Aho 핀란드 수상 방한(10.26-29)

○이붕 중국 총리 방한(10.31-11.4)

○Frei 칠레 대통령 방한(11.20-22)

○Masire 보츠와나 대통령 방한(11.30-12.2)

○Walesa 폴란드 대통령 방한(12.9-10)

○Rabin 이스라엘 총리 방한(12.14-17)

6. 예 비 비 사 용 조 서

(단위 : 원)

일반회계 외무부소관

사 항	지출결정액 (1)	배 정 액	지 출 액 (2)	잔 액 (1-2)	대 통 령 결 재 일	내 용
일반경비	4,065,932,000	4,065,932,000	2,768,115,040	1,297,816,960	94. 3. 16	○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 일본 및 중국 공식방문
일반경비	132,462,000	132,462,000	119,208,270	13,253,730	94. 3. 16	○ 이은 일리에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및 레이몬 나타쥬 카나 다 총독 영접 경비
일반경비	3,926,311,000	3,926,311,000	3,017,357,140	908,953,860	94. 5. 25	○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 러시아 및 우즈베크 공식 방문
일반경비	4,210,494,000	4,210,494,000	3,254,416,120	956,077,880	94. 10. 26	○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국민 방문 및 APEC지도자 회의 참석
일반경비	332,657,000	332,657,000	288,846,580	43,810,420	94. 10. 26	○ 이봉 중국총리, 프레이 칠레 대통령, 마시레 보츠와나 대통 령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 라빈 이스라엘 수상 영접경비
계	12,667,856,000	12,667,856,000	9,447,943,150	3,219,912,850		

7. 세출예산 이용사유 총괄표

일반회계 외무부 소관

(단위 : 천원)

유 형 별	이용의 구체적인 발생사유	금 액
1) 인건비 부족액	○ 기관운영 인건비 부족액	516,183
	○ 외교안보연구원 인건비 부족액	511,534
	소 계	1,027,717
2) 국제기구분담금 환차손에 의한 미납액	○ 국제기구 분담금 환차손 보전	252,726
	소 계	525,726
합 계		1,280,443

○ 세출예산 이용조서

일반회계 외무부소관

(단위 : 천원)

과 목	이 용 증 감	이 용 사 유
130 일반행정	1,280,443 -1,280,443	
132 외무행정	1,280,443 -1,280,443	
1100 외무행정	516,183	
1101 기관운영	516,183	
101 기본급	126,515	인건비 부족액
102 수 당	229,795	인건비 부족액
204 업무추진비	159,873	인건비 부족액(업무추진비)
1400 재외공관	-1,280,443	
1411 공동운영	-1,280,443	
102 수 당	-1,280,443	인건비(1,027,717) 국제기구 분담금(252,726)
5100 외교연구	511,534	
5111 외교안보 연구원운영	511,534	
101 기본급	346,519	인건비 부족액
102 수 당	60,145	인건비 부족액
204 업무추진비	91,889	인건비 부족액(업무추진비)
205 복리후생비	12,981	인건비 부족액(복리후생비)

과 목	이 용 증 감	이 용 사 유
7100 대외협력	252,726	
7112 국제기구 분 담 금	252,726	
307 해외경상이전	252,726	국제기구 분담금 부족액
소 관 합 계	1,280,443 -1,280,443	

8. 세출예산 전용사유 총괄표

일반회계의무부소관

(단위 : 천원)

유 형 별	이용의 구체적인 발생사유	금 액
1)인건비 부족액	○문화홍보활동 업무추진비 부족액	5,788
	○경제활동 업무추진비 부족액	8,902
	○국제회의 업무추진비 부족액	16,846
	○외교안보연구원 복리후생비 부족액	16,637
	소 계	48,173
2)환율인상에 따른 추가부담	○재외공무원 의료보험료 부족액	268,911
	○재외공관 비정규직 보수 부족액	397,663
	○재외공관 관서운영비 부족액	1,310,940
	○재외공관 자산취득비 부족액	35,520
	소 계	2,013,034
3)기타	○국회 음성중계 시설비	8,250
	○유엔 50주년 기념 사업 확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100,000
	○국제회의 국외여비 부족액	41,000
	○국고채 원리금 조기상환	871,256
	○외교안보연구원 관서운영비 부족	15,340
	○외교문서 보존실 시설 보완	9,800
	소 계	1,045,646
합 계		3,106,853

○ 세출예산 전용조서

일반회계 외무부 소관

(단위 : 천원)

과 목	전 용 증 감	전 용 사 유
130 일반행정	-3,106,853 3,106,853	
132 외무행정	-3,106,853 3,106,853	
1100 외무행정	-8,250 8,250	
1101 기관운영	-8,250 8,250	
201 관서운영비	-8,250	국회 음성중계 시설비
404 시설비	8,250	국회 음성중계 시설비 부족액
1200 외교활동	-182,336 182,336	
1211 일반외교활동	-64,722	
204 업무추진비	-24,722	인건비(업무추진비)
307 해외경상이전	-40,000	유엔 50주년 기념 행사
1212 문화홍보활동	-90,800 15,588	
201 관서운영비	-90,800	유엔 50주년 행사(40,000) 외교문서 보존실 시설(9,800) 국제회의 국외여비(41,000)
204 업무추진비	5,788	인건비 부족액(업무추진비)
404 시설비	9,800	외교문서 보존실 시설보완
1213 경제활동	-20,000 8,902	
201 관서운영비	-20,000	유엔 50주년 기념 행사
204 업무추진비	8,902	인건비 부족액(업무추진비)

일반회계 외무부 소관

(단위 : 천원)

과 목	전 용 증 감	전 용 사 유
1214 국제회의	157,846	
202 여비	41,000	국제회의 국외여비 부족액
204 업무추진비	16,846	인건비 부족액(업무추진비)
304 민간경상이전	100,000	유엔 50주년 기념행사 지원
1216 의전활동	-6,814	
204 업무추진비	-6,814	인건비(업무추진비)
1400 재외공관	-2,884,290 2,884,290	
1411 공동운영	-2,582,130 1,140,167	
101 기본급	-1,000,000	비정규직 보수(397,663) 관서운영비(297,906) 자산취득비(35,520) 직원의료보험료(268,911)
102 수 당	-710,874	관서운영비
301 보상금	268,911	재외공관 직원 의료보험료 상승에 따른 부족액
308 차입금이자	-871,256	국고채 원리금
602 해외차입금상환	871,256	국고채 금리인상 대비한 원금 조기상환
1412 주미(대)운영	72,400	
201 관서운영비	72,400	임차료 부족액
1413 주일(대)운영	755,046	
103 비정규직보수	240,000	비정규직 보수 부족액
201 관서운영비	302,160	임차료 부족액
	212,886	공공요금 및 시장비 부족액
1414 주중(대)운영	379,102	
201 관서운영비	343,582	임차료 부족액
407 자산취득비	35,520	자산취득비 부족액
1416 주요공관운영	379,912	
201 관서운영비	379,912	임차료 부족액
1417 기타공관운영	-302,160 157,663	

과 목	전 용 증 감	전 용 사 유
103 비정규직보수	157,663	비정규직 보수 부족액
201 관서운영비	-302,160	임차료
5100 외교연구	-31,977	
	31,977	
5111 안보연구원운영	-31,977	
	31,977	
102 수 당	-16,637	인건비 복리후생비
201 관서운영비	5,215	관서운영비 수용비 부족액
202 여 비	-15,340	관서운영비
204 업무추진비	4,625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족액
205 복리후생비	16,637	인건비 복리후생비 부족액
407 자산취득비	5,500	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부족액
소 관 합 계	-3,106,853	
	3,106,853	

9. 세출예산 이월사유 총괄표

일반회계 외무부소관

(단위 : 원)

유 형 별	이용의 구체적인 발생사유	금 액
미지급금 이월	○ 대통령 순방국가의 전용회선료 청구지연	294,124,000
사업계획변경	○ 걸프전 조기 종결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주한미군 지원 건설사업) 및 사업추진 지연	8,922,904,200
합 계		9,217,028,200

○ 세출예산 이월조서

일반회계 외무부소관

(단위 : 원)

과 목	이 월 액	이 월 사유	사 업 별 내 역
130 일반행정	9,217,028,200		
132 외무행정	9,217,028,200		
1200 외교활동	9,217,028,200		
1211 일반외교활동	9,217,028,200		
201-02 공공요금	294,124,000	미지급금이월	대통령 순방국가의 전용회선료 청구지연
307-01 해외경상이전	8,922,904,200	사업계획변경	결프전 조기종결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주한미군지원 건설사업) 및 사업추진 지연
합 계	9,217,028,200		

10. 세출예산 불용액사유 총괄표

일반회계 외무부소관

(단위 : 원)

유 형 별	불용액의 구체적인 발생사유	금 액
(1)계획변경 및 취소	○ 외교정보통신 전산시스템 현대화추진 지연 ○ 교민단체 경상비지원 대폭축소 및 공관 부지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학자연구 활동 사업 취소	1,970,695,000 75,379,000
(2)정원 및 기준 호봉미달운영	○ 외무부기구 축소 관서운영비 불용액	20,000,000
(3)기타	○ 공관 인사이동 건수 감소에 따른 항공료 감소 ○ 국제기구분담금 당초예상보다 적게 책정	800,000,000 34,565,000
(4)집행잔액		8,975,190,570
(5)예산절감		313,185,670
합 계		12,189,015,240

※ 세출예산 불용액 구성내역

○ 일반예산 : 9,270,048,670

○ 예 비 비 : 2,918,966,570

합 계 : 12,189,015,240

(參照)

○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

일반회계 외무부 소관

(단위 : 원)

과 목	불 용 액	불 용 사 유
130 일반행정	12,189,015,240	
132 외무행정	12,189,015,240	
1100 외무행정	3,060,349,350	
1101 기관운영	3,059,845,770	
101 기 본 급	29,944,44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2 수 당	131,938,83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1 관서운영비	1,905,567,410	계획변경 및 취소
202 여 비	914,616,90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4 업무추진비	8,884,62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5 복리후생비	7,194,34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6 연구개발비	15,270,000	계획변경 및 취소
301 보 상 급	600,000	집 행 잔 액
304 민간경상이전	214,210	집 행 잔 액
404 시 설 비	16,210,010	집 행 잔 액
407 자산취득비	29,405,010	집 행 잔 액
1111 공관관리	503,580	
103 비정규직보수	6,500	집 행 잔 액
201 관서운영비	32,360	집 행 잔 액
404 시 설 비	463,190	집 행 잔 액
407 자산취득비	1,530	집 행 잔 액
1200 외교활동	4,332,912,740	
1211 일반외교활동	3,712,800,990	
102 수 당	1,754,660	집 행 잔 액
103 비정규보수	7,26,320	집 행 잔 액
201 관서운영비	1,134,171,520	집 행 잔 액
202 여 비	826,088,41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3 특수활동비	1,263,696,870	집 행 잔 액

일반회계 외무부 소관

(단위 : 원)

과 목	불 용 액	불 용 사 유
204 업무추진비	451,851,53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6 연구개발비	1,072,160	계획변경 및 취소
304 민간경상이전	0	
307 해외경상이전	25,476,040	계획변경 및 취소
407 자산취득비	1,450,480	집 행 잔 액
1212 문화홍보활동	50,294,010	
201 관서운영비	39,055,720	집 행 잔 액
202 여 비	8,699,76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4 업무추진비	2,025,33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03 출 연 금	0	
304 민간경상이전	0	
404 시 설 비	0	
407 자산취득비	513,20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13 경제활동	406,159,240	
103 비정규직보수	5,215,200	계획변경 및 취소
201 관서운영비	48,488,820	집 행 잔 액
202 여 비	43,558,520	집 행 잔 액
204 업무추진비	298,452,310	집 행 잔 액
206 연구개발비	9,839,020	계획변경 및 취소
407 자산취득비	605,370	집 행 잔 액
1214 국제회의	59,483,180	
103 비정규직보수	1,600	집 행 잔 액
201 관서운영비	38,46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2 여 비	0	
204 업무추진비	52,043,120	집 행 잔 액
206 연구개발비	7,400,000	계획변경 및 취소
304 민간경상이전	0	
407 자산취득비	0	
1216 의전활동	104,175,320	
201 관서운영비	5,495,010	집 행 잔 액
202 여 비	50,085,910	집 행 잔 액
204 업무추진비	42,580,050	집 행 잔 액
404 시 설 비	652,350	집 행 잔 액
406 시설부대비	5,362,000	집 행 잔 액
407 자산취득비	0	
1300 영사교민	174,249,350	

과목	불용액	불용사유
1311 영사교민	165,442,370	
201 관서운영비	7,917,77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2 여비	6,629,210	집행잔액
204 업무추진비	75,887,150	계획변경 및 취소
304 민간경상이전	0	
307 해외경상이전	69,661,950	집행잔액
407 자산취득비	5,346,29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312 여권발급	5,795,850	
103 비정규직보수	4,588,750	집행잔액
201 관서운영비	0	
202 여비	1,203,400	집행잔액
204 업무추진비	0	
305 자치단체경상이전	0	
407 자산취득비	3,700	집행잔액
803 반환금 기타	0	
1313 이민사업	3,011,130	
201 관서운영비	87,950	집행잔액
202 여비	2,923,180	집행잔액
1400 재외공관	4,551,002,000	
1411 공동운영	4,539,538,670	
101 기본급	2,072,844,160	집행잔액
102 수당	1,750,874,52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1 관서운영비	4,626,570	집행잔액
202 여비	5,283,770	집행잔액
204 업무추진비	416,700,620	집행잔액
205 복리후생비	262,677,440	집행잔액
301 보상금	0	
308 차입금이자	109,90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04 시설비	24,097,580	집행잔액
407 자산취득비	2,322,270	집행잔액
602 해외차입금상환	1,840	집행잔액
1412 주미(대)운영	126,330	
103 비정규직보수	6,820	집행잔액
201 관서운영비	3,220	집행잔액
202 여비	7,040	집행잔액
204 업무추진비	61,500	집행잔액
404 시설비	0	

과목	불용액	불용사유
407 자산취득비	47,750	집행잔액
1413 주일(대)운영	3,532,760	
103 비정규직보수	3,800	집행잔액
201 관서운영비	2,650	집행잔액
202 여비	35,080	집행잔액
204 업무추진비	3,650	집행잔액
404 시설비	3,441,090	집행잔액
407 자산취득비	46,490	집행잔액
1414 주중(대)운영	208,160	
103 비정규직보수	360	집행잔액
201 관서운영비	4,630	집행잔액
202 여비	23,130	집행잔액
204 업무추진비	49,530	집행잔액
407 자산취득비	130,510	집행잔액
1415 주러(대)운영	75,940	
103 비정규직보수	630	집행잔액
201 관서운영비	6,120	집행잔액
202 여비	11,090	집행잔액
204 업무추진비	38,920	집행잔액
407 자산취득비	19,180	집행잔액
1416 주요공관운영	906,630	
103 비정규직보수	970	집행잔액
201 관서운영비	4,180	집행잔액
202 여비	56,390	집행잔액
204 업무추진비	31,040	집행잔액
407 자산취득비	814,050	집행잔액
1417 기타공관운영	6,613,510	
103 비정규직보수	272,960	집행잔액
201 관서운영비	720	집행잔액
202 여비	79,070	집행잔액
204 업무추진비	69,470	집행잔액
407 자산취득비	6,191,290	집행잔액
5100 외교연구	43,408,980	
5111 안보연구원운영	43,408,980	
101 기본급	954,900	집행잔액

과목	분용액	분용사유
102 수당	32,840,830	집행잔액
103 비정규직보수	1,541,440	집행잔액
201 관서운영비	0	
202 여비	5,782,990	집행잔액
204 업무추진비	0	
205 복리후생비	2,200,200	집행잔액
301 보상금	88,620	집행잔액
304 민간경상이전	0	
403 토지매입비	0	
404 시설비	0	
407 자산취득비	0	
7100 대외협력	27,092,820	
7112 국제기부담금	20	
307 해외경상이전	20	집행잔액
7113 대개도국지원	27,092,820	
303 출연금	27,092,800	집행잔액

11. 수입 대체 경비 세입결산

(단위 : 원)

일반회계 외무부소관

예산과목	예산액	정수결정액	수납액	초과수입		증인액과 수납액과의 증감사유
				증인액	수납액	
14 수입대체경비 수입 65 면허료 및 수수료 651 면허료 및 수수료	29,663,059,000	51,868,568,000	51,868,568,000	5,049,688,000	22,205,509,000	○ 여권발급수수료 및 영사수입금 증가

12. 수입 대체 경비 세출 결산

(단위 : 원)

일반회계 외무부소관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수입대체 경비초과 증인 지출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진용증 (△)감액	이용및 이체액	수입대체 경비		
장 130 관 132 항 1300 세항 1312	4,919,222,000 4,919,222,000 4,919,222,000 4,919,222,000					5,049,688,000 5,049,688,000 5,049,688,000 5,049,688,000	5,795,850 5,795,850 5,795,850 5,795,850	5,049,688,000 5,049,688,000 5,049,688,000 5,049,688,000
103-01(일용감금)	30,150,000						4,588,750	
201	3,542,860,000					4,801,453,000	0	4,801,453,000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수입대체 경비초과 승지출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증 (△)감액	이용및 이체액					
-01(일반수용비)	2,373,792,000					7,175,245,000	7,175,245,000		0	4,801,453,000
-02(공공요금결제)	152,970,000					152,970,000	152,970,000		0	
-03(피복비)	3,447,000					3,447,000	3,447,000		0	
-05(특근배식비)	10,500,000					10,500,000	10,500,000		0	
-06(운영수당)	3,010,000					3,010,000	3,010,000		0	
-07(임차료)	631,255,000					631,255,000	631,255,000		0	
-09(시설장비유지비)	367,876,000					367,876,000	367,876,000		0	
202	10,763,000					10,763,000	9,559,600		1,203,400	
-01(국내여비)	2,591,000					2,591,000	1,856,130		734,870	
-02(국외여비)	8,172,000					8,172,000	7,703,470		468,530	
204-01(일반업무비)	4,000,000					4,000,000	4,000,000		0	
305-01(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1,255,323,000					1,503,038,000	1,503,038,000		0	235,715,000
407 (자산취득비)	39,088,000					49,608,000	49,604,000		3,700	10,500,000
803 (반환금)	27,038,000					27,038,000	27,038,000		0	
합 계	4,919,222,000					9,968,910,000	9,963,114,150		5,795,850	5,049,688,000

13. 국고채무부담행위 개요

(단위 : 백만원)

가. 국고채무부담행위액 현재액

1) '93년도말 현재액 173,656

2) '94년도중 부담 또는 증가액 15,706

- '94년도 부담행위액 19,880

- 환차 및 전년도 누락분으로 인한 부담액
△4,174

3) '94년도중 상환 또는 소멸액 26,428

4) '94년도 현재액(1+2-3) 162,934

나. '94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내역

1) 주고오베 총영사관 청사증·개축 793

2) 주고오베 총영사관 관저 개축 460

3) 주나고야 총영사관 청사 신축 3,523

4) 주베네수엘라 대사관 청사매입 252

5) 주영국 대사관 청사 증·개축 3,302

6) 주영국 대사관 관저 증·개축 2,036

7) 주요코하마 총영사관 청사, 관저 개축
473

8) 주제네바 대표부 청사부지 매입 5,143

9) 주중국 대사관 청사부지 매입 1,937

10) 주카이로 총영사관 관저 신축 238

11) 주캐나다 대사관 청사 신축 1,723

합 계 19,880

14. 채권 현재액 보고

(단위 : 원)

가. 채권 현재액

○임차보증금 4,559,906,886

계 : 4,559,906,886

나. 채권 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

○채권현재액(A) : 4,559,906,886

○세입미수납액(B) : 0

○차액(A-B) : 4,559,906,886

15. 정부출연금 집행내역

일반회계 외무부 소관

(단위 : 백만원)

출 연 기 관 명	출 연 내 역	
	예 산 액	지 출 액
한국 국제협력단	31,786	31,759
한국 국제교류재단	1,995	1,995
계	33,781	33,754

(정관제 : 유관)

구분 소관	보조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 조 목 적	보 조 비 율(%)	지 급 대 상		비 고	
									단 체 명	대표자		
외무부	외교관자녀 기숙사 운용	149	148	148	0	0	외교관자녀 기숙사 운	29	외교협회	전상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한·일 여성친선협회지원 (Korea-Japan Friendship Association)	20	20	20	0	0	영보조 한일친선도모 한일친선도모	22 39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일친선협회	박정자 김숙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한·일 친선협회 지원 (Support for Korea-Japan Friendship Association)	167	167	167	0	0	외교정책 이해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20	외교협회	전상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외교정책홍보활동 (public Relations for Foreign Policy)	17	16	16	0	0	교포 정책자료 발간 및 심포지엄 개최	30	해외교포 국제연구소	이구홍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외교포문제 연구소지원 (Research Institute for Korea Residents Abroad)	12	12	12	0	0	사할린 동포 무연고자 모국 방문단 추진	100	대한 적십자사	강영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방시·도 여권발급 위임지원	100	각지방청	-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재일거류민단 및 기타 교민단체 지원	100	해외교민단체	-	해외경상 이전	
							동북아 해양협력문제 국제세미나 행사준비	100	한국해로연구회	김달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비 보조					
							유엔 50주년 기념 한 국위원회 보조			유엔한국위원회	김경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Ⅱ.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특별회계 외무부 소관

과 목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						지출액	음 도 이월액	불용액	사업개요 경비내역
장	관	항	세항	목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증 감액	이용이 월액	수입대 체경비	세출예산 현 액				
130	132	1200	1212	303-02	-	-	-	-	-	10,000,000	10,000,000	-	-	
일반행정	외무행정	외교활동	문화홍보 활동	출연금										
합 계										10,000,000	10,000,000			

2.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과목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130 일반행정 132 외무행정 1200 외교활동 1212 문화홍보활동 303 출연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사업개요) ○ 외무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 출연금 (경비내역) (단위 : 천원) <table><tr><th>구분</th><th>예산현액A</th><th>집행액B</th><th>증감액 A-B</th></tr><tr><td>국제 교류 기금 으로 출연 (기금 적립)</td><td>10,000,000</td><td>10,000,000</td><td>0</td></tr></table>	구분	예산현액A	집행액B	증감액 A-B	국제 교류 기금 으로 출연 (기금 적립)	10,000,000	10,000,000	0
구분	예산현액A	집행액B	증감액 A-B									
국제 교류 기금 으로 출연 (기금 적립)	10,000,000	10,000,000	0									

이 상으로 1994年度 外務部所管 歳入・歳出 決算報告 및 豫備費 支出內譯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世應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姜熙復 전문위원입니다.

1994年度 外務部所管 歳入・歳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 차

Ⅰ. 一般會計

1. 歳入

2. 歳出

3. 檢討意見

가. 一般會計 歳入部門

나. 一般會計 歳出部門

(1) '94年度 歳出執行概要

(2) 移用 및 轉用

(3) 不用額

(4) 移越額

(5) 豫備費

(6) 國庫債務負擔行爲

(7) 기타사항

Ⅱ. 財政投融资特別會計

1. 歳入

2. 歳出

3. 檢討意見

※참고자료

(參 照)

I. 一般會計

1. 歲入

(單位: 千圓)

가. 豫算額: 31,412,729

나. 徵收決定額: 55,159,578

다. 收納額: 55,159,578

라. 不納缺損額: 0

마. 未收納額: 0

바. 豫算額 대 收納額 比率: 175.6%

사. 豫算額 대 收納額과의 差異: 23,746,849

아. 收納增加事由

歲入豫算額 31,412,729千圓 對比 75.6%에 해당하는 23,746,849千圓이 增額 收納되었는 바, 그 事由는 海外旅行增加에 따른 旅券發給 手數料 및 領事 收入金の 增加(22,205,509千圓), 國有化資金 利子收入 등 雜收入金の 증가(1,541,340千圓)에 기인함.

〈표 1〉 세입결산내역

(단위: 千圓)

科 目	豫 算 額	徵收決定額	收 納 額	不納 缺損額	豫算대 收納 額의 差	備 考
所 管 計	31,412,729	55,159,578	55,159,578	0	23,746,849	
雜 收 入	1,749,670	3,291,010	3,291,010	0	1,541,340	在外公館 國有化 資金 利子 및 雜收入增加
免許料 및 手數料收入 (收入代替經費收入)	29,663,059	51,868,568	51,868,568	0	22,205,509	旅券發給手數料 및 領 事 收入金 증가

2. 歲出

가. 歲出豫算執行概要

(單位: 千圓)

(1) 豫算現額: 377,899,909

豫算額: 327,565,875

前年度移越額: 32,616,490

豫備費支出決定額: 12,667,856

收入代替經費: 5,049,688

(2) 支出額: 356,493,866(豫算現額의 94.3%)

(3) 不用額: 12,189,015(豫算現額의 3.2%)

(4) 다음年度移越額: 9,217,028(豫算現額의 2.5%)

나. 移用額內譯

(單位: 千圓)

(1) 移用額內譯: 1,280,443

(2) 移用內譯

① 人件費 不足額: 1,027,717

(財源)

— 共同運營, 手當: 1,027,717

(不足額)

— 機關運營, 基本給: 126,515

— 機關運營, 手當: 229,795

— 機關運營, 業務推進費: 159,873

— 外交安保研究院運營, 基本給: 346,519

— 外交安保研究院運營, 手當: 60,145

— 外交安保研究院運營, 業務推進費: 91,889

— 外交安保研究院運營, 福利厚生費: 12,981

② 國際機構負擔金不足額: 252,726

(財源)

— 共同運營, 手當: 252,726

(不足額)

— 國際機構 分擔金, 海外經常移轉: 252,726

다. 轉用內譯

(單位: 千圓)

(1) 轉用總額: 3,106,853

(2) 轉用內譯

① 人件費

(財源)

— 一般外交活動, 業務推進費: 24,722

— 儀典活動, 業務推進費: 6,814

— 外交安保研究院運營, 手當: 16,637

合計：48,173

(不足額)

- 文化弘報活動, 業務推進費：5,788
- 經濟活動, 業務推進費：8,902
- 國際會議, 業務推進費：16,846
- 外交安保研究院運營, 福利厚生費：16,637

合計：48,173

② 換率引上에 따른 追加負擔

(財源)

- 共同運營, 基本給：1,000,000
 - 共同運營, 手當：710,874
 - 其他公館運營, 官署運營費：302,160
- 合計：2,013,034

(不足額)

- 共同運營, 補償金：268,911
- 駐美(대)運營, 非正規職 報酬：72,400
- 駐日(대)運營, 非正規職 報酬：240,000
- 駐日(대)運營, 官署運營費：515,046
- 駐中(대)運營, 官署運營費：343,582
- 駐中(대)運營, 資產取得費：35,520
- 主要公館運營, 官署運營費：379,912
- 其他公館運營, 非正規職 報酬：157,663

合計：2,013,034

③ 國庫債元利金 早期償還

(財源)

- 共同運營, 借入金 利子：871,256

(不足額)

- 共同運營, 海外借入金償還：871,256

④ 유엔 50周年 記念行事

(財源)

- 一般外交活動, 海外經常移轉：40,000
- 文化弘報活動, 官署運營費：40,000
- 經濟活動, 官署運營費：20,000

合計：100,000

(不足額)

- 國際會議, 民間經常移轉：100,000

⑤ 國際會議 國外旅費 不足

(財源)

- 文化弘報活動, 官署運營費：41,000

(不足額)

—國際會議, 旅費：41,000

⑥ 外交安保研究院 官署運營費 不足

(財源)

- 文化安保研究院運營, 旅費：15,340
- (不足額)
- 外交安保研究院運營, 需用費：5,215
 - 外交安保研究院運營, 業務推進費：4,625
 - 外交安保研究院運營, 資產取得費：5,500

⑦ 外交文書保存室 施設補完

(財源)

- 文化弘報活動, 官署運營費：9,800
- (不足額)
- 文化弘報活動, 施設費：9,800

⑧ 國會 音聲中繼 施設費

(財源)

- 機關運營, 官署運營費：8,250
- (不足額)
- 機關運營, 施設費：8,250

라. 不用額 內譯

(單位：천원)

- 計劃變更 및 取消：2,046,074
- 定員 및 基準號俸未達運營：20,000
- 公館人事異動 減少에 따른 航空料 減少：800,000
- 豫算節減：313,186
- 執行殘額：8,975,190
- 其他：34,565

마. 豫備費 支出內譯

(單位：천원)

(1) 支出概要

- ① 支出決定額：12,667,856
- ② 支出額：9,447,943
- ③ 不用額：2,925,789
- ④ 다음年度移越額：294,124

(2) 豫備費 支出 內譯

- ① 大統領 日本 및 中國 公式訪問：2,768,115
- ② 이온 일리에스쿠 루마니아 大統領 및 레이몬 나타신 캐나다總督 迎接 經費：119,208
- ③ 大統領 러시아 및 우즈베크 公式訪問：3,017,357
- ④ 大統領 필리핀, 인도네시아, 濠洲

國賓訪問 및 APEC指導者會議 參席
: 3,254,416

- ⑤ 이붕 中國 總理, 프레이 칠레 大統領, 라빈 이스라엘 首相 迎接 經費
: 288,847

合計: 9,447,943

바. 移越額 內譯

(單位: 천원)

(1) 移越額: 9,217,028

(2) 內譯

① 豫算科目別

— 公共料金: 294,124

— 海外經常移轉: 8,922,904

② 發生事由別

— 大統領 巡訪國家의 專用回線料 請求 遲延: 294,124

— 걸프戰 早期終結로 인한 事業計劃 變更 및 事業推進 遲延: 8,922,904

사. 國庫債務 負擔行爲

(單位: 천원)

(1) 國庫債務 負擔行爲額

① '93년말 現在額: 173,656,041

② '94년 負擔行爲額: 19,880,434

③ 換差 및 前年度漏落分으로 인한 負擔額: △4,173,909

④ '94年度중 償還 또는 消滅額: 26,428,190

⑤ '94年度末 現在額(①+②+③-④): 162,934,375

(2) '94年度 國庫債務 負擔行爲 內譯

① 駐고오베總領事館 廳舍增·改築: 792,592

② 駐고오베總領事館 官邸改築: 460,036

③ 駐나고야總領事館 廳舍新築: 3,523,510

④ 駐베네수엘라大使館 廳舍買入: 251,792

⑤ 駐英國大使館 廳舍買入, 增·改築: 3,302,598

⑥ 駐英國大使館 官邸增·改築: 2,036,509

⑦ 駐요코하마總領事館 廳舍·官邸改築: 472,705

⑧ 駐제네바代表部 廳舍 敷地買入: 5,143,056

⑨ 駐中國大使館 廳舍 敷地賃借: 1,937,139

⑩ 駐카이로總領事館 官邸新築: 237,540

⑪ 駐캐나다大使館 廳舍新築: 1,722,957

合計: 19,880,434

아. '94年度 監査院 監査指摘事項

(1) 指摘事項

① 在外公館 國有化事業 借入金 利子 歲入處理 不徹底(注意)

② 韓日親善協會 補助金 執行 指導監督 不徹底(注意)

③ 儀典用 車輛管理 不適正(注意)

④ 收入金 등 直接使用 承認業務 不適正(通報)

⑤ 在外公館 職員住宅 賃借保證金 回收 不適正(通報)

⑥ 外交센터 建立 民資誘致事業 施行 不適正(通報)

⑦ 海外駐在 外交官 身邊安全保險 料率 算定業務 不適正(通報)

⑧ 진지휴가비 支給 不適正(注意)

⑨ 外務公務員 經歷評定 不適正(通報)

⑩ 現地 移住者 住民登錄抹消 協調業務 不適正(通報)

⑪ 機關別·職級別 定·現員 運用 不適正(通報)

(2) 模範事例

國庫債 元利金 償還方式 改善으로 豫算節減에 寄與

3. 檢討意見

가. 一般會計 歲入部門

'94年度 歲入決算의 내용을 살펴보면

○ 豫算額 314억1,300만원

○ 徵收決定額 551억6,000만원

○ 收納額 551억6,000만원으로서

豫算額 대비 收納額 비율은 약 1.8배, 금액으로는 237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 요인은 수입대체경비로 되어 있는 『여권발급수수료 및 재외 공관의 영사수입금』이 당초예산보다 222억원이나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상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입 예산과 결산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표 2〉 여권발급 수수료 및 재외공관 영사수입금의 예산과 결산 비교

(단위: 억원)

년 도	'92	'93	'94
예산(A)	237	275	297
결산(B)	316	322	519
B/A 倍	1.33	1.17	1.76

나. 一般會計 歳出部門

(1) '94年度 歳出執行概要

'94年度 당초 豫算額은 3,275억6,600만원, 前年度移越額 326억1,600만원, 豫備費 126억6,800만원, 收入代替經費 50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豫算現額은 총 3,779억원이었으며, 이중 3,564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집행은 당초 국회가 심의한 예산과 내용상 차이를 보이는 이용 및 전용 부분(44억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 부분(122억원), 다음년도의 이월액 부분(92억원)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移用 및 轉用

① '94年度 移用總額은 12억8,000만원입니다.

移用の 주요내역을 보면,

국내의 人件費 不足額(전체는 10억2,700만원이며 이중 외교안보연구원의 소요액은 5억1,200만원임)과 國際機構分擔金 부족액(2억5,300만원)을 각각 충당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예산을 전액 移用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과 관련하여 '94년중 외교인력의 배치구조를 살펴보면 국내(본부와 외교안보연구원)에서는 상위직급에 定員보다 現員이 훨씬 많으며 재외공관에서는 상위직급의 경우 현원이 부족하고 하위직급에서는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과거의 경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의 일선이 재외공관이라는 점에서 예산상의 정원보다도 감축하여 재외공관의 현원(특히 상위직)을 운영하는 것은 외교현장에서 그만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근무하는 정원 이외의 현원이 인건비외에 활동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인건비만 移用하여 국내에 들어온 직원은 적절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활동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특1급 내지 3급 이상의 고위외교직 공무원은 상당한 외교경험을 축적한 고급전문인력임을 고려하면 활동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고급인력의 국내 배치는 결국 중요 外交 資産을 낭비하는 것으로 그 개선이 시급합니다.

〈표 3〉 예산액·예산현액·집행액의 비교

(단위: 억원)

년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비비 (C)	수입대체 경비(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미 집 행 액	
							불용액 (절감액)	이월액
'92	2,730	1,025	177	18	3,950	3,479	65(1.2)	406
'93	3,072	407	126	28	3,633	3,149	158(102)	326
'94	3,276	326	127	50	3,779	3,565	122(3.1)	92

<표 4> 연도별 외무공무원 정원·현원 과부족 현황

구 분	'91		'92		'93		'94	
	국 내	재 외	국 내	재 외	국 내	재 외	국 내	재 외
특1~특2	19	△18	18	△18	18	△23	16	△25
1~3급	15	△18	24	△24	29	△30	20	△29
4~5급	△23	△91	14	△87	△7	△99	7	△98
6~7급	△41	28	△30	22	△22	19	△30	24

② '94년도 豫算轉用總額은 31억700만원입니다.

轉用の 주요 내역을 보면,

福利厚生費, 職級補助手當 등 인건비성 경비 부족 4,800만원, 換率引上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직원의료보험료, 비정규직 보수, 공관임차료 등으로 20억1,300만원, 國庫債元利金 조기상환 8억7,100만원, 유엔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補助金 지원 1억원, 기타 7,500만원이 轉用되었습니다.

轉用の 대부분(28억8,400만원)은 예산상在外公館 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3) 不用額

'94년도 歲出豫算의 不用額은 121억 8,900만원으로 豫算現額 대비 3.2%에 해당됩니다.

不用額 발생의 주요 내역을 보면,

執行殘額이 89억7,500만원, 외교정보통신 전산시스템 현대화추진 지연 등 19억7,100

만원, 공관 인사이동 전수감소에 따른 航空料 감소 8억원, 豫算節減 3억1,300만원, 기타 1억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不用額을 원천별로 구분하면 일반예산에서 92억6,300만원, 豫備費에서 29억2,600만원으로 나타나서 豫備費 부분에서 불용액의 상당부분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93억원에 달하는 일반 예산의 경우 移·轉用 등으로 예산을 적극 활용하면 상당부분이 불용액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94년도 예산 심의시에 증액이 거론되었던 재외국민보호 사업, 경제외교활동 강화, 환경보호 외교활동 강화 등에서 당초 정해진 예산 이외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는지 확인키 어려운 바 불용액으로 처리하기 앞서서 예산 확보가 미흡한 부분에 미리미리 재원을 적극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표 5> 예산불용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일반예산의 불용액	예비비중 불용액	전체 불용액
'92	5,415	1,081	6,496
'93	14,769	980	15,749
'94	9,263	2,926	12,189

(4) 移越額

다음年度 移越額은 豫算現額 대비 2.3%에 해당하는 92억1,7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월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그 대부분(89억

2,300만원)은 걸프전 조기종결과 관련하여 사용되지 못한 잔액에 의해 추진키로 한미간에 합의한 계획사업중 일부(진해 탄약부두 건설 사업)가 지역사정 등으로 그 집행이 지연된

것이며, 대통령 순방국가의 專用回線料 청구 지연으로 인한 것은 2억9,400만원이었습니다. 걸프전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추진키로 합의된 사업비중 일부가 이미 3년간 이월되

었습니다. 또 '95년도로 제4차 事故移越 된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표 6> 걸프전 지원관련 이월액추이

(단위: 억원)

년 도	'90(당초)	'91(1차)	'92(2차)	'93(3차)	'94(4차)
이월액	3억 5,000만불	754	401	322	89

(5) 豫備費

'94년도 豫備費 배정액은 126억6,8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 3.4%) 이중 94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9,400만원은 移越하였으며 잔액 29억2,6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大統領의 日本, 中國 등 7개국 公式訪問등에 90억4,000만원, 일리에스쿠 루마니아 大統領, 李鵬 中國總理 등 외빈영접에 4억8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배정된 금액에서 23.1%를 차지하는 금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겸소한 행사에서 기인하였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사업계획이 정밀하지 않거나 예비비 신청이 과다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으므로 豫備費의 算定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6) 國庫債務負擔行爲

재외공관의 國有化事業을 추진하기 위한 '94년도 國庫債務負擔 限度額은 259억원(미화 32,376천불)이었으며 이중 198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국유화사업은 당 위원회의 '94년도 예산 심의시에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특히 이미 상당한 공관이 국유화를 완료하였으므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그리고 국유화사업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결국 그 상환원리금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외무부 예산 전체를 크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의 추진은 가급적 억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오베 총영사관의 청사 및 관저의

증·개축 등 5건이 '94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채 추진되었으며, 반면 신규사업으로 당초 그 필요성을 강조 되었던 싱가포르 대사관의 부지매입은 사업시행이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국유화사업은 그 기채시부터 借入利자가 발생하므로 시기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조기차입에 의해 해당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36만불(약 2억8,800만원) 상당의 이자수입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이상의 사례들은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좀더 신중히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7> '94년 국고채차입금의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 현황

(단위 : 미불)

공 관 명	사 업 명	차 입 일	금 액	예 치 기 간	발 생 이자
주 중 국 (대)	청사부지 장기임차	94. 2. 3	1,500,000	-	기채즉시 집행
주요꼬하마(총)	청사·관저 개축 (추가)	94. 4. 28	597,000	94. 4. 28-7. 31	3,409
주 중 국 (대)	청사부지 장기임차 (추가)	94. 9. 1	646,500	-	기채즉시 집행
주 제네바 (표)	청사매입	94. 11. 25	6,495,398	94.11.25-95.6.30	273,255
주 이집트 (대)	관저신축(추가)	94. 12. 21	300,000	-	기채즉시 집행
주 나고야 (총)	청사신축	94. 12. 28	4,450,000	94.12.28-4. 3	23,256
주 캐나다 (대)	청사신축	94. 12. 30	2,176,000	94.12.30-95.8.25	58,614

(7) 기타사항

①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결산과의 연계분석
외무부가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각종 행사 및 업무만 나열되어 있고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서는 분야(예산의 세항에 해당)별로 목별 지출만 나열되어 있어 이들 양자를 연계하여 분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예산심의시에 작성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가 구체적 사업별로 예산소요를 나타내는 것과 대조를 보입니다. 이로인해 예산심사에서는 각 개별 사업별로 심의를 받는데 반하여 그 결산에서는 구체적 사업별로 검토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의 경우에 예산의 경우와 같이 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집행내역이 파악된다면 단위 업무별 생산성(예를 들어 人時와 所要資金)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11. 94예산심의 지적사항과 결산과의 비교 참조>

② 본부 간부직원의 海外出張

'94년도 외무부 본부 3급이상 고위직의 해외출장 현황을 분석해 보면 100일 이상 2인, 100일미만 60일 이상 6인, 60일 미만

30일 이상 11인으로서 모두 19인이 한달 이상입니다. 여기서 고위직의 해외출장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무부의 인력배치와 연계하여 볼 때, 재외공관에 있어야 할 고급인력은 국내에 들어와 활동할 예산이 없이 귀국하였고 국내에서 외교정책의 수립·조정에 힘써야 할 고위직은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를 비우는 현실입니다.

이는 외교인력의 최대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8> 본부 3급이상 간부의 해외출장(30일이상)현황

(금액단위 : 미불)

구 분	해당직위수	출장회수	출장일수	여비
100일 이상	2	18	203	77,234
100일 미만 60일 이상	6	50	421	250,537
60일 미만 30일 이상	11	63	474	231,550

(주) 여비는 항공료와 체재비임.

③ 國際機構分擔金 부담과 직원진출

'94년도 집행한 국제기구분담금은 258억 7,000만원(미화 32,570천불)이었습니다. 이들 국제기구중 우리가 1년에 10만불이상 분담금을 부담하는 기구는 총 29개이며, 이중 해당 기구에 1명의 직원도 확보하지 못한 기구는

15개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만큼 해당기구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므로 외무부는 어떤 원칙을 정하여 우리 국민이 국제기구 요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표 9> 미화10만불이상 분담금을 부담('94)하는 국제기구 및 한국인 진출 현황

(금액단위 : 천불)

구 분	국제기구수	전체분담금	전체한국인 진출인원	한국인 진출 못한 기구수
100만불이상 부담기구	8	22,264	42(19)	0
100만불미만 50만불이상 부담기구	3	2,200	7(1)	1
50만불미만 10만불이상 부담기구	18	3,178	6(2)	14
계	29	27,642	55(22)	15

주) ()는 파견직원수임.

④ 韓國國際協力團의 결산

'94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당초예산보다 2,700만원이 적은 310억1,600만원이었습니다. 협력단이 작성한 동 결산서의 사업별 주요추진실적에 의하면 "해외이주사업"은 '94. 9부터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나, 韓國國際協力團法상 해당사업이 개정·삭제 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94년 105개국에 80억6,700만원 상당의 기자재를 제공하였었습니다.

이러한 기자재를 공여하면서 상대국으로부터의 클레임이 발생한 사례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상으로 기자재를 공여하는 목적이 그들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와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많은 돈을 들여 실시하는 사업이 사소한 클레임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표 10> 클레임 발생 현황

구 분	'91	'92	'93	'94
총계약건수(A)	119	134	143	207
클레임건수(B)	16	9	8	5
B/A	13.4%	6.7%	5.5%	2.4%

II. 財政投融资 特別會計

1. 歳入

없음

2. 歳出

가. 歳出豫算執行概要

(單位:천원)

(1) 豫算現額: 10,000,000

豫算額: 10,000,000

前年度移越額: 0

豫備費支出決定額: 0

收入代替經費: 0

(2) 支出額: 10,000,000

(3) 不用額: 0

(4) 다음年度移越額: 0

나. 支出內譯

—國際交流基金 出捐: 10,000,000

3. 검토의견

'94년도 외무부의 財政投融资特別會計 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은 國際交流基金에 대한 출연으로 100억원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의 설립취지가 국가외교활동의 일부를 민간차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재단의 사업재원인 동 기금이 민간차원에서도 조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단이 설립된 지 4년 지난 현재까지도 민간으로부터의 출연실적이 아직도 없는 것은 유치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 재단이 해외 大學과 研究所에 지원한 사업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美國에 심하게 편중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大學에 대한 지원총액(43억9,400만원)중 美國의 24개 대학에 대한 지원금액이 36억9,300만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研究所에 대한 지원총액(23억2,700만원)중에서 美國의 研究

所에 대한 지원금액은 21억2,600만원으로 91.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

(參 照)

참고자료

목 차

1. 연도별 결산통계('88~'94년도)
2. 불용액 내역
3. 예비비 지출내역
4. 연도별 보조금 집행내역
5. 연도별 국고채무부담행위 개요
6. '94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 집행개요
7. 재외공관 청사, 관저 지역별 국유화 현황
8. 외무공무원 정원·현원 현황
9. '94년도 외무부분부 3급이상 간부 30일 이상 출장현황
10. 미화 10만불 이상 부담 국제기구 및 한 국인 진출현황
11. '94예산심의 지적사항과 결산과의 비교

(다음 페이지에 계속)

1. 연도별 결산통계('88~'94년도)

(單位: 千원)

1) 歲 入

區 分 年度別	豫算額 (A)	徵收決定額 (B)	受納額 (C)	C/A	C/B	不 納 缺損額	未受納額
'88	13,448,000	25,445,499	25,271,129	188	99	0	174,370
'89	25,057,000	44,953,240	44,761,855	179	99.6	0	191,394
'90	34,817,250	45,451,529	45,278,409	130	99.6	0	50,247
'91	26,209,367	31,514,410	31,464,162	120	99.8	0	50,247
'92	24,199,000	33,907,181	33,856,933	140	99.9	50,247	0
'93	28,351,897	34,794,574	34,794,574	123	100	0	0
'94	31,412,729	55,159,578	55,159,578	175.6	100	0	0

2) 歲 出

(單位: 千원)

區 分 年度別	豫算額 (A)	豫算現額 (B)	支出額 (C)	C/A	C/B	移越額	不用額
'88	142,569,606	151,781,346	143,593,449	101	95	2,245,656	5,942,241
'89	154,271,104	170,317,423	162,897,538	105.6	95.6	1,796,993	5,622,891
'90	256,202,193	279,171,742	236,049,913	92.4	84.5	39,505,897	3,615,931
'91	438,487,351	504,938,930	394,685,357	90	78.1	102,514,205	7,739,367
'92	273,056,707	395,027,266	347,862,326	127.3	88.0	40,669,322	6,495,618
'93	307,203,713	363,284,146	314,918,146	10.3	86.7	32,616,490	15,749,510
'94	327,565,875	377,899,909	356,493,866	108.8	94.3	9,217,028	12,189,015

2. 불용액 내역

(單位: 원)

性質別 年度別	人件費	物件費	經常移轉	資本去來	其他經費	計 (豫算現額 對不用額)
'88	1,203,246,000	4,383,315,000	259,885,000	90,327,000	5,468,000	5,942,241,000 (3.9%)
'89	1,967,783,260	2,254,093,630	1,092,271,910	65,034,370	242,708,290	5,622,891,460 (3.3%)
'90	62,267,680	3,476,273,060	34,109,840	36,407,500	6,873,560	3,615,931,640 (1.3%)
'91	139,854,410	3,101,102,200	4,396,415,630	82,319,650	19,675,310	7,739,367,200 (1.5%)
'92	2,720,739,140	2,266,879,290	1,114,177,350	393,812,780	9,370	6,495,617,930 (1.6%)
'93	3,525,074,090	8,599,436,340	2,745,993,410	834,989,400	44,017,210	15,749,510,450 (4.3%)
'94	4,040,060,690	7,928,585,830	123,243,540	97,123,340	1,840	12,189,015,240 (3.2%)

3. 예비비 지출내역

(單位 : 원)

年度	支出 決定額	支 出 額	殘 額	執 行 率	備 考
'88	7,706,913,000	5,733,621,210	2,063,291,790	73.54	
'89	10,836,800,000	9,971,494,970	865,305,030	92	
'90	19,060,305,000	15,577,134,330	3,483,170,670	81.7	
'91	21,815,528,000	18,903,768,420	2,911,759,580	86.6	
'92	17,669,943,000	16,370,010,200	1,299,932,800	92.6	
'93	12,619,748,000	11,490,217,430	1,129,530,570	91	
'94	12,667,856,000	9,447,943,150	3,219,912,850	74.6	

4. 연도별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배만원)

事業名	'89		'90		'91		'92		'93		'94	
	豫算額	支出額	豫算額	支出額	豫算額	支出額	豫算額	支出額	豫算額	支出額	豫算額	支出額
1.外交協會補助	162	162	79	76	78	76	86	80	87	78	166	165
2.名譽領事補助	163	81	134	80	144	81	147	101				
3.特殊 國際支援	1,339	1,111	1,156	1,154	1,527	340			(한국국제협력단사업 출연금)			
4.物資援助 및 協調基金	8,450	8,804	8,809	1,005	9,009	149						
5.國際機構等 分擔金					6,292	6,291	14,627	14,627				
6.海外僑胞問題 研究所 支援	18	18	18	17	18	14	18	17	18	16	12	12
7.僑民團體 補助 育成	6,206	5,506	5,053	5,039	5,018	4,957	6,013	6,010	7,729	7,551	6,408	6,408
8.旅券發給 地方 委任	528	791	785	827	960	1,000	1,103	1,296	1,103	1,397	1,265	1,503
9.海外開發公社 支援	880	871	807	792	749	161			(한국국제협력단사업 출연금)			
10.韓國해로연구회 지원	33	33	33	32	32	32	33	31	33	30	20	20
11.韓國國際關係研 究所等 民間學術 團體 支援	46	43	86	83	166	160	318	287	398	358		
12.韓·日女性親善 協會 支援	25	25	25	24	25	24	25	23	25	15	20	20
13.YMCA 結婚相 談센터協會 支援	26	26	26	25	11	11						

事業名	'89		'90		'91		'92		'93		'94	
	豫算額	支出額	豫算額	支出額	豫算額	支出額	豫算額	支出額	豫算額	支出額	豫算額	支出額
14.韓國國際文化協會 支援			665	665								
15.外交政策弘報 活動			23	23	23	22	23	21	23	21	16	16
16.사할린동포 母國訪問事業 支援					162	162	164	153	164	148	137	137
17.韓・日親善協會							70	65	185	105	167	167
18.UN韓國委員會											0	100
合計	17,876	17,471	17,699	9,932	24,214	13,480	22,627	22,711	9,765	9,718	8,195	8,531

5. 연도별 국고채무부담행위 개요

(單位: 원)

區分 年度別	前年度末 現在額(1)	本年度分		本年度中 償還 또는 消滅額	本年度末 現在額
		本年度 負擔 行爲額(2)	計(1+2)		
'88	57,224,263,433	16,920,978,514 (-7,565,695,068)	65,579,546,879	7,845,882,797	56,733,664,082
'89	57,733,664,082	23,228,971,020 (-433,057,552)	80,529,577,550	9,204,080,490 (10,919,289,050)	60,406,208,010
'90	60,406,208,010	34,170,871,300 (3,397,219,230)	97,974,298,540	6,267,593,450 (181,189,800)	91,525,515,290
'91	91,525,515,290	38,300,449,000 (6,944,600,050)	137,370,564,340	13,465,606,200 (333,329,940)	123,571,628,200
'92	123,571,628,200	50,600,505,000 (4,442,574,070)	178,614,707,270	18,190,553,630 (3,403,053,090)	157,021,100,550
'93	157,021,100,550	36,094,661,000 (3,932,142,810) [1,906,108,780]	198,954,013,140	22,513,523,450 (2,784,448,550)	173,656,041,140
'94	173,656,041,140	19,880,433,630 (-4,173,909,270)	189,362,565,500	26,428,189,820	162,934,375,680

※註:-()는 換率 變動으로 인한 元貨負擔
增減額 및 과년도 修正分을 이서한
것임

-[]는 全年度 漏落 合計分임.

-國庫債務負擔行爲 限度額과 負擔行
爲額과의 差額は 執行時 換率과 決
算書作成 基準 換率과의 差異에 의

해 發生

6. '94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 집행개요

가. 豫算執行現況

1) '94國庫債 豫算: 25,900,400千원(\$32,
375,500)

2) '94國庫債 執行: 19,880,434千원(\$25,
107,498)

나. '94年度 國庫債務負擔行爲(公館別 事業別 內譯)

(單位: 백만원)

사 업 내 역	예 산 (부담한도액)	집 행 (부담행위액)
1. 계속사업		
주 나고야 총영사관 청사신축	3,560	3,523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청사·관저개축	477	473
주 중국대사관 청사부지 임차	1,957	1,937
주 캐나다 대사관 청사 신축	1,741	1,723
주 영국 대사관 청사 매입	9,600	3,303
2. 신규사업		
주 카이로 총영사 관저신축	0	237
주 고오베 총영사관 청사 증·개축, 관저개축	0	1,253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 청사 매입	0	252
주 영국대사관 관저 개축	0	2,036
주 제네바대표부 청사부지 매입	5,333	5,143
주 싱가포르 대사관 청사부지 매입	3,232	0
계	25,900	19,880

7. 재외공관 청사, 관저 지역별 국유화 현황

'95. 8 현재

용 도 별	대 상	국 유 화	비 율	지역별 현황
청사	140	52	37.1%	아 주 : 18개 공관 미 주 : 10개 공관 구 주 : 15개 공관 아·중동 : 9개 공관
관저	140	82	58.6%	아 주 : 20개 공관 미 주 : 27개 공관 구 주 : 20개 공관 아·중동 : 15개 공관

8. 외무공무원 정원·현원 현황

(94. 12. 31 현재)

*()은 별도정원

직 급	국 내				재 외 공 관		계		과부족
	본 부		연 구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특 1 급	5	2	0	5	34	23	39	30	- 9
특 2 급	0	9	0	5	37	23	37	37	0
1 급	2	5	4	6	50	40	56	51	- 5

직 급	국 내				재 외 공 관		계		과부족
	본 부		연 구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2 급	18	25(1)	3	6	66	58	87	89(1)	+ 2
3 급	22	24(9)	10	13	102	91	134	128(9)	- 6
4 급	46	115(19)	16	4	213	154	275	273(19)	- 2
5 급	199	149(95)	6	6	193	154	398	309(95)	- 89
6 급	65	60(5)	9	3	85	88	159	151(5)	- 8
7 급	78	56(2)		3	19	40	97	99(2)	+ 2
계	435	445 (131)	48	51	799	671	1,282	1,167 (131)	- 115

9. '94년도 외무부본부 3급이상 간부 30일 이상 출장현황

(금액 단위 : 미불)

직 위	출장회수	출장일수	여비	비고
장 관	9	77	91,012	
차 관	5	50	30,874	
제 1 차 관 보	8	52	25,801	
제 2 차 관 보	10	77	36,081	
외교정책기획실장	12	100	41,949	
핵 담 당 대 사	9	68	40,030	
공 보 관	5	43	21,816	
조 약 국 장	5	32	13,774	
국 제 연 합 국 장	6	48	28,887	
국 제 경 제 국 장	9	50	20,237	
통 상 국 장	10	76	33,427	
서·아 국 장	3	33	16,511	
의 전 실 심 의 관	5	37	11,310	
아·태 국 심 의 관	7	41	14,466	
서·아 국 심 의 관	3	40	24,491	
국제연합국 심의관	8	103	35,285	
조 약 국 심 의 관	5	63	20,505	
국제경제국 심의관	7	60	29,482	
"	7	48	23,383	

(주) 여비는 항공료와 제채비임.

10. 미화 10만불 이상 부담 국제기구 및 한국인 진출현황

(금액 단위 : 미불)

기 구	분담금('94)	한국인직원수
유엔사무국	11,019,277	16(6)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445,324	2(2)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2,009,497	5(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461,860	(1)
국제해사기구(IMO)	386,400	2(1)
국제노동기구(ILO)	1,037,798	1(4)
국제원자력기구(IAEA)	1,172,712	7(3)
세계관광기구(WTO)	106,518	1(1)
ASPAC사회 문화센터	112,000	
국제이민기구	159,461	
유엔개발계획(UNDP)	1,566,682	5
유엔아동구호기금 (UNICEF)	900,000	4
재한유엔기념묘지위원회 (UNMCK)	237,369	
유엔인구기금(UNFPA)	150,000	2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100,000	
전직정부수반협의회 (IAC)	100,000	
유엔농업개발기금 (IFAD)	800,000	(1)
세계식량계획(WFP)	120,000	1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200,000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1,449,670	4(1)
GATT(WTO)	1,563,100	2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178,500	
아시아생산성기구(APO)	200,000	
OECD개발센터 (OECD/DC)	142,011	
OECD원자력에너지기구	174,360	
유엔공업개발기금 (UNIDF)	100,000	
아태개발센터(APDC)	100,000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 (AVRDC)	150,000	
한·에스캅협력기금	500,000	3

11. '94 예산심의 지적사항과 결산과의 비교

94 예산심의 지적사항	외무부 답변	94 결산 내용	비고
1. 신외교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편성의 지지가 불명확 ※ 재외국민 지위향상과 관련한 영사교민 사업비는 9,430백만원에서 7,820백만원으로 오히려 감소	외교다변화 147억원 외교다각화 89억원 외교세계화 579억원 총 820억원	1. 새로운 경제환경에의 능동적대처, 유엔등 국제기국외교강화, 문화외교의 내실화 등을 통한 신외교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강화 ※ 영사교민사업지 집행액:76억55백만원	결산보고서 P19-36
2.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에 기인 (91:77억원, 92:64억원)	불용액의 최소화 및 효율적 집행에 더욱 노력	2. 불용액:121억89백만원	P26-27
3. 외환율의 적정성	환차손의 자동보전장치를 강구중	3. 환율:1불대800원	P46
4. 정상외교를 위한 예산편성 필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노력	4. 대통령 일본, 중국방문 등을 통한 정상외교 예비비 집행액:94억47백만원	P62-63
5. 복미경제통합 대비비용이 지나치게 소액(2천몇백만원)	경제통상외교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 운영	5. 계상된 예산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집행:220만원	P24-25

주)94 예산심의시 지적사항과 외무부 답변은 속기록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94결산내용과 비교는 외무부에서 작성하였음.

94 예산심의 지적사항	외무부답변	94 결산내용	비고
6. 지구환경보전 예산이 부족(2억미만)	환경외교수행 예산은 다소 증액된 것임. 앞으로 계속 증액을 추진하겠음.	6. 국제환경협약가입, 제2단계 지구환경가입, 동해오염공동조사 실시, 일·중과 환경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환경협력 강화	P22-23 P36-37
7. 대북한 개방촉진 외교활동비(1,143만원)는 소액	통일원등과 사전협의하여 편성	7. 통일원등 유관부처와 협력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P22-23
8. 북한해개발 지지 활동비가 93대비 감소	통일원등과 사전협의하여 편성	8. 통일원등 유관부처와 협력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P22-23
9. 한일친선협회 지원금이 너무 많다 (167백만원)	93년 대비 약10% 삭감	9. 집행액: 1억67백만원	P132-133
10. 국고채부담행위의 신중한 추진	-내년에는 좀더 과감히 개선했음. 앞으로 사업계획 및 시행과정에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노력		
가. 신규추진	-신규는 주재네바다대사관(직원41명, 임차료 64만불) -주싱가폴대사관(직원22명, 임차료 34만불)		
나. 계속사업승인필요(예산회계법 제22조와 제27조 문제)	-제22조(계속비)문제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가능하면 시정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배정액) (차입액)	차액발생사유	비고
1. 주나고야(총) 청사 신축	4,150,000 (3,560,000)	4,150,000 (3,592,000) (3,323,510)		계속
2. 주중국(대) 청사부지 임차	2,446,500 (1,957,000)	2,446,500 (1,983,000) (1,937,138)		
3. 주요코하마(총) 청사, 관저신축	597,000 (477,000)	597,000 (484,000) (472,704)		
4. 캐나다(대) 청사신축	2,176,000 (1,741,000)	2,176,000 (1,729,000) (1,722,956)		
5. 주영국(대) 청사 매입	12,000,000 (9,600,000)	4,170,600 (3,313,000) (3,302,597)	* 사업규모 축소	

94 예산심의 지적사항	외무부답변	94 결산 내용	비고
다. 국유화이후 임차료보다 유지비가 더 많은 경우(주미대사관)도 발생			
라. 무역확성(영국대사관, 중국대사관)			
마. 잦은 설계변경(오키와마 총영사관)			
바. 상환액의 파다로 예산전반을 경직화			
사. UN차석대사의 관저 필요성이 의문			
아. 93. 9말현재 관저 141개중 80개, 청사141개중 51개 국유화로 일본보다 앞서있으므로 사업휴식년제 실시 필요			
11. UN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예산대책이 불명확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동 (평화유지활동, 사회적 및 인도적 활동)		11. 아프리카 및 중동 7개국에 대통령 특사 파견 : 74백만원
- 국회의원의 UN외교활동 지원방안이 없음	- 특사로 수시활동 가능		- 특사파견 또는 유력인사 초청사업을 통한 의원외교활동 측면지원(예산액 : 9억 96백만원)
12.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이 부족하여 밀린 분담금의 완불이 어려움.	부족이 예상됨.		- 미납액 : 5,388천불

94 예산심의 지적사항	외 무 부 담 변	94 결 산 내 용	비 고
13. 재일거류민단 지원예산의 답습적 편성은 지양(55억원) -민단의 자립도 80%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38.5%가 운영비, 인건비등으로 사용 -4년전부터 매년 20%씩 삭감토록 결정한것임.	재정자립을 위해 21세기 재단 추진중 연구비(총338백만원)을 연차적으로 증액토록 노력	13. 재일거류민단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자립을 기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민단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 정부예산허용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지원 : 55억원 14. 94년도 연구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증액을 반영토록 강구중임.	P40-41
14. 외교연구원의 연구업무 부실 15. 외무부 독립청사의 확보 시급	연구비(총338백만원)을 연차적으로 증액토록 노력	15. 총무처소관 예산에 95년도 설계비로 20억 계상됨.	P24-25
16. 국제교류기금의 민간출연유도 대책	전경련, 무협 등의 긍정적 반응	16. 전경련, 무협 등에 출연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나, 상금 출연 실적은 없음.	P20-21
17. 외교문서 전산화 사업예산 26억원 이 충분한지 여부		17. 94년도 외교문서 전산화사업으로 1억7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동사업을 정부예산허용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	P36-37
18. 국제협력단 관련사항 -파견공무원의 정리 -직업훈련 지원사업중 대수단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그 효과가 의문	-단계적 철수방안 협의중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18. -단계적 철수방안 계속 강구중 -대수단 직업훈련사업은 93년도 양국 대통령간 합의사항으로 그간 수단정정 불안으로 지연되어왔으나, 정부간 신뢰성 유지 및 대수단 아국투자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총사업비 450만불로 95년 10월 완공예정임)	
-한인거주지역에 직훈사업집중 지원 강구	-내년도 사업으로 적극추진할 예정		

94 예산심의 지적사항	외 무 부 담 변	94 결 산 내 용	비 고
-기차재공여사업 수행시 수익계약 체결과 검수제도 미흡으로 퍼원조국의 크레임 발생 -기차재공여사업이 너무 소액으로 다수나라에 걸쳐 있어서 효과가 의문	-이제는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 실시중이며 또한 검수제도를 강화 -계속하는 것이 필요함	-94년도 동사업에 대한 예산미계상 -공개경쟁입찰 및 검수제도 강화로 문제점 발생을 사전 예방 -저개발국가에 대해 매년 시행되고 있는 기자재 공여사업은 정부예산 사정상 현재까지는 일국당 10-20만불등 소액지급되고 있으나, 동 국가들과 관계강화를 위해 계속 재공합이 요망되며, 동 사업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P36-37 P36-37
19. 특정업무추진비 9,767백만원의 전액 삭감 필요	-안기부 정보비와는 무관하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 (비공개회의시 설명) -국제교류재단 사업으로 적극 검토	특정업무추진비는 대외보안을 요하는 외교활동추진을 위해 계상된 최소한 경비임	P22-35
20. 민간경상이전경비 219백만원의 전액 삭감과 국제교류재단 차원에서 지원	-외교적 이유가 있으나 지원 계속 여부를 검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음. -외교적 이유가 있으나 지원계속 여부를 검토	20. 민간경상이전비 2억19백만원이 아래와 같이 집행됨.	P132-133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일친선협회 -한국해로연구회	-외교적 이유가 있으나 지원 계속 여부를 검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음. -외교적 이유가 있으나 지원계속 여부를 검토	-한일여성친선협회 보조액 : 20백만원 -한일친선협회 보조액 : 167백만원 -한국해로연구회 보조액 : 20백만원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년지원 예산 1,200만원을 계검토 -교류재단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불가피함. 다만 청소년 교류사업은 단계적으로 재단이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임.	-해외교포문제연구소 보조액 : 12백만원 21.	
21. 문화홍보활동중 국제교류재단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정리(비동맹국가 언론인 초청, 동북아4국 청소년 교류사업)	-비동맹 언론인 초청사업(10명)집행액 : 31백만원 -동북아4개국 청소년 교류사업(3개국	-비동맹 언론인 초청사업(10명)집행액 : 31백만원 -동북아4개국 청소년 교류사업(3개국	P24-25 30

94 예산심의 지적사항	외 무 부 답 변	94 결 산 내 용	비 고
22.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 -협력단의 이민사업예산 1,433만원 -한·아세안 협력기금 16억원, 200만불 -재외국민 모국방문 지원 예산	-일종의 분담금으로 약속된 사업. -러시아, 중국내 조선족의 모국방문 지원, 다만 재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명) 집행액 : 66백만원 22. -이민사업집행액 : 1,132만원 -한·아세안 협력기금 집행액 : 16억원 -재외국민 모국방문지원 집행액 : 3,400만원	P28-29 P22-23 P26-27
-해외여행 안전대책반 운영예산 5백만원 23. 외교안보연구원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인한 예산의 이·전용이 상례화(인력구조상의 문제점)	-앞으로 경제기획원 및 총무처와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겠음.	-해외여행 안전대책반 운영집행액 : 456만원 P28-29 외무부는 연구위원들의 정원반영을 총무처에 요청해 오고 있으나, 총무처는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2항에 의거 재외공관 정원의 이체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정원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임.	P34-35
24. 국제교류기금의 목표규모와 기여금 징수의 지속기간	-2000년까지 정부·민간 각2천억원씩 4천억원으로 재단이 정하고 있으나 너무 과도함. 다만 기금 조성을 필요함.	24. 94년도 정부출연기금 : 100억원 P142	
25. 산하기관의 운영비가 방만 -국제협력단의 승용차(15대) 과다보유 -국제교류재단 인원(58명)이 과다 -국제교류재단의 승용차 유지비 과다 -외교안보연구원 청사를 매각하여 외무부 독립청사 확보하는 방안 강구	-94예산은 15대이나 실제로 12대임	25. -실제 승용차 보유수 : 12대 -국제교류재단 인원 : 61명 -국제교류재단 승용차 유지비 : 35백만원 -4페이지 15항 참조	

94 예산심의 지적사항	의 무 부 답 변	94 결 산 내 용	비 고
26. 군대위안부 명단 자료 발간 25만원은 부실	-예산편성상 부득이하였으나 책임감을 느낀다	26. 군대위안부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당초 발간 계획을 취소함.	
27. 재외공관장회의 개최비의 감축편성도 좋지만 권역별 실시로 효율성 제고	-94년에는 아주 및 미주공관장 회의, 95년에는 구주와 아중동 공관장회의를 각각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	27. 9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장소 및 일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 파리, 4. 9-10 -구주지역 : 브뤼셀, 4.17-18 -미주·아주지역 : 서울, 2.2-7	P22-23
28.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 급여가 4급 공무원보다 적은 것은 문제		28.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급여는 국립대학 교수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각목 명세서상 급여액은 정부예산 기준단가에 의거 일괄적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동 교수들의 실제 수령액은 호봉이 낮을 경우 4급 공무원과 비슷하며,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월등히 많은 편임.	P34-35

○委員長 吳世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委員들께 議事日程에 관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行政府側에서 한두마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요청하셔도 괜찮은데 긴 설명이 필요한 것은 한 대여섯분 질의를 하고 나신 다음에 行정부에서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愚貞委員 어제 제일 늦게 發言權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일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李愚貞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 決算書 읽어봤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지금 不用額이 122억원 가깝게 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입이 旅券發給手數料라든지 여러군데에서 수입이 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여간 122억원의 不用額이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太平洋戰爭對策問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예산을 책정할 때 거기에 지원액이 25만원으로 나왔었습니다.

從軍慰安婦 名單이나 真相調查費로 25만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太平洋戰爭犧牲者問題를 마무리하는 비용으로 25만원을 책정을 했느냐고 제가 아주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太平洋戰爭遺族會 사람들이 外務部 찾아가고 또 豫算決算委員會에서 노력을 해서 유족회 500만원 정신대대책협의회 500만원 1,000만원을 예상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의 파행적인 운영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심의가 못되었지요. 그래서 25만원이 그대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25만원이나마 취소를 하셨어요. 취소를 하셨는데 이유가 從軍慰安婦들의 명예를 위해서다 그런데 이미 從軍慰安婦는 그것을 불명예로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고 국가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범죄로 인정하고 배상해야 하고 일본은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당당히 요구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 자기네가 從軍慰安婦로 밝히는 것을 불명예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25만원 취소한 이유가 개인의 從軍慰安婦의 不名譽 私生活保護側面 이라서 이것을 취소했다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

것이 남독이 안갑니다.

이번에 오늘 지금 발표하는 것을 들으니가 미국하고 독일 정부가 2次大戰때 미군병사가 독일 포로수용소에서 학대받은 것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독일이 200만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존자가 10명인데... 그런데 미국하고 독일 이쪽 선진국에서는 과거의 일이지만 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상대정부에 인정시키고 배상을 끝까지 받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까 外務部長官께서 보고하셨는데 2페이지에 보면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는 다 清算하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외교기틀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를 아예 清算한 것으로 이런 자세로 나오시는데 이것은 곤란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똑바로 고치지 않고 바로 잡지 않고 어떻게 바람직한 미래가 옵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太平洋戰爭問題 네가지가 아직도 해결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從軍慰安婦問題 그 다음 太平洋戰爭犧牲者遺族들이 받아야 할 문제 그 다음에 그때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임금이 지금 은행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편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찾아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고생하고 일한 노동의 댓가는 이것은 전쟁피해하고 또 다릅니다. 이것은 의당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못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군인으로서 강제징병 당해서 가서 싸웠는데 일본 傷痍軍人は 4조엔이라는 그 기금으로 生活保護 福祉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사는 우리 韓國人 戰爭傷痍者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푼도 못받습니다. 끌어갈 때는 일본인으로 끌어가고 배상줄 때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안주는 이런 일본 정부의 오만한 자세에 대해서 과거는 다 清算되었다 이라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한 회의와 분노를 느낍니다.

이번 북경에서 UN 4차 世界女性大會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쟁과 갈등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強姦, 性的 奴隸化는 이것

은 분명히 戰爭犯罪이고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부기관대표회의에서 결의를 하고 明文化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從軍慰安婦는 일본정부에서 戰爭犯罪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慰勞金이나 補償金 안 받겠다 그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도 안받는 것 좋습니다. 기금을 통해서 慰勞金 준다는 것 당사자들이나 한국여성 전체가 그것은 侮辱이다 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戰爭犯罪라는 것을 인정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번 世界女性大會에서도 그것을 건의했고 또 政府機關 代表會議에서 그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만 유독 과거는 청산되었다 하고 이것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안합니까? 저는요 이 從軍慰安婦문제에 있어서 和蘭 女子가 인도네시아에서 위안소에 끌려가서 從軍慰安婦로 당했을 적에 그렇게 한 사람은 戰犯者로 처벌받았습니다. 和蘭 女子를 그렇게 한 일본군인은 戰犯者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여자를 그렇게 한 일본 군인은 戰爭犯罪 裁判도 회부안되고 처벌도 안받았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정책을 쓰고 이런 의식을 가진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자세를 가다듬고 요구할 것 요구하고 책임추궁할 것 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차별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決算을 보면서 外務部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不用額이 120억이나 넘는데 거기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금년 94년도에도 일본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太平洋戰爭犠牲者들의 遺族會 사람들이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재판이 있어서 몇 번 일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從軍慰安婦들도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對策協議會 사람도 제비마로 뉴욕의 UN으로 세계를 뛰어 다녔습니다. 이 일본에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外務部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명목으로든지 그 여비나 비용을 안보태주시고 그 25만원 그나마 취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정책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때 다시 말하겠지만 이번 決算을 보면서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것 세계가 다 책임추궁하는데 세계여성들이 전부 책임추궁하고 일본이 常任理事國 되는 것을 여성대회에서 전부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도덕한 이런 일본이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안지는 일본이 어떻게 UN의 지도국이 되느냐 어떻게 常任理事國이 되느냐 해가지고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민간은 안그런데 정부만 일본하고 과거는 청산되었다 미래 지향적으로 좋은 관계유지한다 이것 말이 안됩니다. 이것 低姿勢도 너무 低姿勢입니다.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왔는데 UN에 부담금을 내는 기구의 18개국중에서 우리 직원이 몇 안된다든지 이런 돈내는데 상응하는 우리의 권익이라고 그럴까 책임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주장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人件費는 硬直性 經費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硬直性 經費는 예산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決算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왜냐하면 월급은 처음에 정하니까요. 그런데 人件費 超過가 굉장히 많습니다. 2억 얼마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海外公館人件費면은 달러 환율 어찌고 이래서 양해가 되지만 國內 人件費입니다.

그래서 이런 硬直性 經費라는 것은 대개 예산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상례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2억몇천만원씩 초과해야 하나 그것도 국내 人件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번에 世界女性大會에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이 行政機構나 立法府나 모든 직장에 아주 割當制로 여성을 고용하는 문제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外務部 혹은 大使 外國公館 혹은 국제기구에 여성을 임명하신 여성을 파견하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름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級數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應 수고하셨습니다. 朴定洙委員長의 하십시오.

○朴定洙委員 우리 李愚貞委員 발언하신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하고 지지를 보내 드립니다. 지난 번에 UN 제4차 世界女性大會에 같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도 공감을 100% 했던 바 있습니다. 外務部가 귀남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1994년도 決算에 대한 회의입니다마는 外務部長官께서 보고 말씀 가운데 상당히 懸案에 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懸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決算하고 무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15분밖에 할애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질의를 하겠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장관에게 질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관을 보좌하고 있는 1급참모들이 저기 다 布陣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어떻게 장관을 보좌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알고 싶고 이것도 決算하고 관계가 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열하고는 관계없이 몇몇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UN局長 여기 제시지요?

○外務部國際聯合局長 咸明澈 예.

○朴定洙委員 우리나라가 安保理의 非常任理事國이 되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얼마만한 비용이 들어갔는지 말해 줄 수 있으면 좀 말해 주시고 우리가 非常任理事國이 되면은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 어떠한 기여를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일본의 安保理 常任理事國進出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國際經濟局長 제시요?

○外務部國際經濟局長 尹志峻 예.

○朴定洙委員 OECD가입을 우리가 1996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전망이 어떤지 요즘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문제나 걸림돌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996년 가입에 혹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둘째로 앞으로 EU에 우리가 경제적인 기반을 확충하고 진출하는데 대한 전망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亞洲局長 제시지요?

○外務部아시아·太平洋局長 金夏中 예.

○朴定洙委員 이것은 條約局長 所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만하고의 航空協定締結關係에 관한 것인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대만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문제가 여기에 介在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중국을 너무 의식한 상태에서 우리가 상당히 주저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든지 他國들은 대만하고의 航空協定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우리 정부의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라오스와의 修交關係에 대해서 보도가 있음에 대해서 外務部에서는 또 부인하고 나온 것 같은데 라오스나 캄보디아와의 修交關係에 대해서 그 전망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번째로 政策企劃室長 여기 나와 제시니까?

○外務部外交政策企劃室長 潘基文 예.

○朴定洙委員 북한관계는 政策企劃室에서 다루고 있지요. 북한 水害支援에 대한 外務部の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KEDO에 대한 것인데 북한 輕水爐關係는 누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外務部企劃管理室長 金恒經 기획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朴定洙委員 그러면 거기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추가비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美·日間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하도록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로 領事局長 나와 제시지요?

○外務部在外國民領事局長 姜雄植 예.

○朴定洙委員 첫째로 미국의 入國비자에 대해서 향간에 참 말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外務部가 취하고 있는 교섭이라고 할까 입장 그것을 설명해 주

시고 앞으로 완화하겠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는 在外 우리 국민들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제도적으로나 규제가 너무 심해서 상당한 애로가 많다 지장이 많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완화를 또 개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通商局長 나와 계시지요?

○外務部通商局長 張基浩 예.

○朴定洙委員 自動車市場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對日貿易逆潮現象이 날이 갈수록 더 증가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外務部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다 이러한 발표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고 왜 안되는지 어떻게 시정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와 계시지요.

첫째로 外務部에서는 외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주로 事務官級에서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문인력을 그 이상의 직급에도 채용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지 만일 세우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이미 部內에 있는 전문인력활용상에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전문지식을 활용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國際機構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專門性과 繼續性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덟번째로 文化協力局長 계시요?

○外務部文化協力局長 金富寬 예.

○朴定洙委員 첫째로 國際交流財團活動이 원래의 설립취지하고 알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崔乘震 뉴질랜드 駐在 通信官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 지난번에 李在春次官補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취급하고 있습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亞洲局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朴定洙委員 亞洲局長이 이것을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李東翊大使를 우리가 소환까지 하는 외교사상 처음으로 강경한 조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李東翊大使가 소환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뉴질랜드정부와의 외교관계상 어떠한 문제점이 지금 있는지 교섭과정에서 어떻게 사실상 진전이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관련된 부작용이라든지 이것을 해소하려고 외무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이 진상에 관한 확실한 설명을 외무부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외무부가 여러 번 입장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왁자왁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무부에서는 확실하게 崔乘震通信官의 文書偽造事件에 대한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應 수고하셨습니다.

李富榮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富榮委員 오늘은 외무부에서 결산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한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11월11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2년전 제4차 統一外務委 94회계년도 외무부 예산심의시에 國庫債務負擔行爲豫算은 豫算會計法 제22조에 의해서 繼續費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韓昇洲外務長官은 그 지적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며 외무부에서 검토해서 예산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당국과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94년12월에 외무장관이 교체되어서 업무공백 등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잔전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그 동안 미루어왔습니다.

그 당시 韓昇洲外務長官의 답변 이후 그 國庫債務負擔行爲豫算이 豫算會計法 22조에 따라서 繼續費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외무부로서 추진된 후속조치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豫算會計法 제22조에 보면 완성예數年度를 요하는 공사의 경우 등의 경우 경비의 총액의 연부액, 매년 부담할 액을 정해서 미리 국회의 議決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豫算會計法 22조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무부의 在外公館國有化事業은 單年度別로 예산을 책정해서 종합적인 국회심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년도에는 부지구입비 2차년도에는 부지구입비 추가분 3차년도에는 건물신축비 4차년도에는 건물신축비 추가분 이런 식으로 단년도 예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공관이 신축이 된다 할 때 그것을 총체적으로 예산심의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때그때 매년매년 예산안을 내고 있습니다. 豫算會計法 22조에 엄연히 繼續費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척 예산심의나 결산심의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듭해서 豫算會計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단년도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본위원 질의 이후에 추진된 후속조치를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統一外務委員會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在外公館國有化事業의 無計劃性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4회계년도 외무부 예산심의 당시에 駐 싱가포르大使館의 경우에는 근무인원이 22명이나 되고 임차료가 매년 34만불에 달하기 때문에 청사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94년도 예

산에 부지매입비로 404만불이 책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보된 404만불이 당초에는 없었던 駐 영국대사관저 개축 또 駐 카이로 총영사관 관저신축비 추가 또 駐 고오베 총영사관 청사 관저개축 그리고 駐 베네주엘라 청사매입 이렇게 다섯 건에 전용해서 집행되어서 그냥 404만불 부지매입비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94會計年度 예산심의 일로 부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처럼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도 예견을 못하고 싱가포르 대사관의 부지매입비를 404만불이나 신청했느냐 이것이지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 뒤바뀌어야 될 예산을 왜 신청했느냐, 이렇게 예견이 없느냐, 이렇게 在外公館國有化事業의 無計劃性 이런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된 사유를 장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외무부의 94會計年度 決算內譯 중에서 세입부문에 몇 가지 무계획성 이로 인한 豫算損失問題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세입수납액이 551억6,000만원으로 원래 예산 대비 76%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여권발급 수수료 그리고 영사수입금 증가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在外公館 國有化 借入金의 은행예치에 따른 예금 이자 36만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자수입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國有化事業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國庫債務行爲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이자율이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在外公館國有化事業을 위해서 國庫債務行爲로 현지에서 起債한 자금을 기재한 직후에 즉시 집행하지 못하고 현지은행에 재예치함으로써 그 때 발생한 이자수입이 36만불이나 된다는 것은 대출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즉 36만불 이상의 뭔가 자금손실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재를 해서 그것을 그 즉시 집행하지 못하고 은행에다 재예치해서 거기서 이자수입이 있었다면 돈 꾸는 데 이자를 준 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치해서 얻은 이자수입보다는

더 높았을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駐 제네바 대표부 청사매입을 위해서 94년 11월 25일 650만불을 그 현지은행에서 기채했지만 적당한 건물을 물색하지 못해서 그 결과 95년 6월 30일까지 무려 7개월 이상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예금이자가 27만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이자를 그 이상으로 물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무계획적으로 추진된 在外公館國有化事業 때문에 損失金額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이자수입이 36만불 있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금액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損失金額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責任所在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吳世應委員長, 林采正幹事와 司會交代)

그리고 또 한가지 收入代替經費가 당초 예상액과 실 수납액에서 무려 222억원이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여권발급 수수료인데 이렇게 여권발급 수수료가 76%나 초과 징수되었거든요. 이렇게 예측을 못 합니까? 그럴 정도로 수입대체경비 처음에 책정한 것 하고 뒤에 책정한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한 76%정도 예상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책정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무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수입대체경비 예상액과 실 수납액의 차이를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林采正 다음 鄭夢準委員 질의하세요.

○鄭夢準委員 오늘 보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장관께서 간략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外交文書を 94년 1월 말부터 공개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문서도 94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統一外務委員會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새롭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1960년 이후 문서를, 그 문서도 여

러가지 분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어떠한 계획으로 공개를 하실 것인지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지금 우리 정부의 外交文書公開計劃에 의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서 안전에 따라서는 상대국 정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국 정부의 양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를 하고 상대국 정부에서는 공개를 안하는 경우에는 상대국의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합의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문서는 일반적인 원칙 하에서 공개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鄭夢準委員 관련하시는 분이 가능하면 다음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계속해서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교포의 日本內 地方參政權獲得運動을 측면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방참정권이라고 하셨는데 일본 법제도가 지방참정권하고 중앙참정권이 구별이 되어 있는지요?

○外務部長官 孔魯明 구별 안되어 있습니다.

○鄭夢準委員 그러면 이 경우에 지방참정권 획득을 도와준다고 하면 중앙참정권도 자연적으로 돕게 되는 것입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현재 단계로서는 중앙참정권까지는 하지 않고 외국定住人이라는 견지에서 자기 거주지역에 대한 대표권 또는 선출권 이런 참정권을 지금 획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같이 일본의 법률에 의해서 國籍條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법 개정이 따라야 됩니다.

○鄭夢準委員 보고서 내용에 보면 地方參政權獲得運動을 측면지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중앙참정권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현재 목표로 하는 것은 가령 중앙참정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국회의원을 상정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재일동포 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일본의 衆議院이라든지 參議院 議員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각 市政 前에 지방자치 단체의 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鄭夢準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被選舉權을 말씀하시는데요.

○外務部長官 孔魯明 選舉權을 포함해서 被選舉權까지도 지금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단계에서 주로 주력하고 있는 것은 참정권 가운데 선거권을 우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성립이 되면 참정권이라는 개념속에는 선거권하고 피선거권 양쪽 다 포함이 되겠지요.

○鄭夢準委員 외무부가 노력해서 만약에 진전이 있다면 노력을 좀 많이 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APEC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亞.太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됩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위상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인데요. 이런 국제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위상이 제고되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외무부에서 홍보하시기는 좋지만 정확한 사실이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제 느낌입니다. 위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위상이 제고되었다 그러면 그 회의에 참가한 다른 나라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상이 떨어졌다는 말씀이 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회의를 통해서 무슨 가령 APEC회의다 하는 것을 하면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합니다마는 과연 사실이 그런 것인지 장관께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물론 우리 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APEC내의 주요국가의 하나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PEC내에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도 있고 또 개발도상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는 그러한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의 중개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APEC에는 頂上會談에서부터 閣僚會談 또 그 밑에는 實務會談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실무회담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취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아주 큼니다. 최근의 한 예로서 말씀을 올리면 이번 홍콩 SOM에서는, 「쑤」이라고 그러합니다. 시니어 어피셜즈 미팅(Senior official's Meeting)인데 高位實務者會議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삿포로에서 대만과 중국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대만의 대표가 行政院의 長官이다 행정원의 뭐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대만의 대표권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서 대두했을 적에 이번 홍콩회담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재역할을 해서 대만으로부터도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고 중국으로부터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들의 역할이 커가고 한 가지 질의해 주시는 鄭委員님만 하시더라도 지금 FIFA에 21명 있는 위원 중에 지금 副會長을 하고 계시는 이런 것 역시 우리 國力의 반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얘기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林采正 鄭委員님...

○鄭夢準委員 제가 간략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林采正 하셔도 좋은데 어제부터 本 常任委員會에서 다시 결정한 것이 일단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듣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하기로 했었는데... 알았습니다. 하실 것은 하시는데...

○鄭夢準委員 죄송한데요 吳世應委員長님께 제가 여쭙어 보았어요. 답변까지 포함해서 15분 이내에 끝내면 되느냐고 했더니 그러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林采正 계속하세요.

○鄭夢準委員 李愚貞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관계가 항상 관심인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明成皇后 閔妃를 학살한 일본 낭인들과 그 사람들과 연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일본 公使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으로 보내 가지고서 일본에서 재판 을 하는데 재판기록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

니다. 내용이 이 사람들이 閔妃를 弑害한 證人이 있느냐 했더니 증인이 없다고 그래서 無嫌疑로 보냈다는데 이 보도가 사실인지,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皇后를 우리는 다 낭인들이 죽었다고 확신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재판을 하면서 증인이 없다고 그래서 전부 내 보냈다는데 그런 경우 우리 정부가 무슨 사후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관해서 長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 당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말엽에 일어났습시다마는 지금 鄭委員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 당시에 介在되었던 「미우라 고로오」라고 하는 公使 隸下の 關係人들이 다 無嫌疑 등등으로 풀려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國權을 찬탈 당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느냐, 일본이 하나의 國策으로서 온 국가가 뚝뚝 뭉쳐서 대륙진출 그 다음에 한반도 책략을 펴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鄭夢準委員 이런 경우에 사후적으로 우리 정부가 조치할 수 없습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논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의 인식 이것이 가장 韓日間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은 이미 다 저희들 하고는 유명을 달리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을 지금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것에 대한 일본의 역사인식이라는 것이 야까 李惠貞委員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문제의 근간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鄭夢準委員 정부에서는 조치할 계획이나 그런 국제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답변입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러한 취지에서 韓日 國交正常化 당시에 우리가 日本하고 大韓帝國과의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모든 협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다 하는 것을 韓日基本條約에 삽입하고자 오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협의 결과로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無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역사의 과정에 있습니다.

(林采正幹事, 具昌林幹事와 司會交代)

○鄭夢準委員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 질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 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具昌林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朴九湓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朴九湓委員 自民聯의 朴九湓委員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생략하고 아주 현안문제, 평소 제가 여러 가지로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세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는 어저께 統一院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北의 쌀 지원 문제를 결들여서 統一院과 外務部와의 긴밀한 결론을 낼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문제에 가까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쌀 지원의 굴욕적인 문제점은 다 생략하고 금번에도 北에서는 백 몇십個國에 전부 지원요청을 하고 심각한 문제로 다루면서 우리에게서 일언반구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는 것도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羅雄培 統一院 副總理께서 200만불 지원 문제도 표명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집권당인 民自黨에서는 이 문제에 贊反의 설왕설래 異見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은 우리 집안에 살더라도 형이 동생을 아끼고 돌봐 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돌봐 주고 나면 이 동생은 온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형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노출이 되고 해 가지고 사실은 본위원은 이번 북쪽의 水害被害에 대해서는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의약품이라든가 긴요한 것을 난민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은 불신하고 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統一院과 外務部는 이에 대한 진밀한 협조를 거쳐서 對 北韓問題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줄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外務部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당국이 北蘇軍事即刻介入協定 문제를 일방적으로 破棄하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 또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이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러시아는 우리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요구의 외교적 문제를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우리는 북한 러시아 우리와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어떤 요구에 대한 대응의 우리 정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外務部 文書變造에 관한 것은 朴定洙委員長님이 요약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崔秉震前 뉴질랜드大使館 外信擔當官의 文書變造 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내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정확히 밝힐 시기는 안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배경과 진실성 여부가 철저히 가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씨의 難民申請을 계기로 호지부지하게 넘어가는 인상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外務部는 당시에 長官님께서 밝혔듯이 法的 對應 不辭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질랜드 移民廳이 難民申請을 棄却한 경우에 崔씨가 難民地位抗告審査委員會에 抗告할 수 있어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본위원 생각에는 최씨의 송환은 앞으로 이삼 개월 더 걸릴 것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李東翊 뉴질랜드大使를 問責召還한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具昌林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나머지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續開하기로 하고 停會

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52分 會議中止)

(14時29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世應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질의하신 委員님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李鍾贊委員長께서 議事進行 發言을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李鍾贊委員 지난 3월에 金元雄委員, 朴鍾雄委員, 諸廷堉委員, 金浩一委員, 元惠榮委員, 具天書委員, 崔在昇委員, 曹駟鉉委員 그리고 外 22명이니까 이것은 여야가 다 합의된 결의안인것 같습니다. 일체침략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는 日本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同意反對促求決議案이 이미 우리 委員會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나기를 지금까지 우리 한국 外務部의 포지션은 일본이 과거의 挺身隊問題라든가 또는 原爆被害者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終戰 50周年을 맞이해서 일본의 과거청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일본이 아직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상임이사국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국민적 정서인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決議案이 접수가 되어서 우리 外務委員會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텐데 어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반대입장이었던 것을 撤回하고 다시 이것을 지지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좀 충격적인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사건행발언을 하는 이유는 外務部長官께서 이번에 28일이면 UN에 가시기 때문에 그전에 이 결의안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되겠고 우리의 국민적인 의사가 분명히 반영이 되어서 외무부장관이 UN에 가셨을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에 어떤 변화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해서도 안되겠고 또 현재 그 입장이 무엇인지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는 常任理事國에 일본이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반대하는 이러한 決議案을 採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서도 우리 국회의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느니 만큼 거기에 反하는 그러한 정부의 행동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委員長님께 이번 會期中에 이 결의

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또 외무부는 이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이라도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분명히 서줄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두가지 요구를 한꺼번에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바입니다.

○委員長 吳世應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行政府側의 답변을 듣겠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委員이 안제신...

○李海龜委員 제가 한마디만...

○委員長 吳世應 답변 먼저 듣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지금 한분 남으셨나요? 두분 남으셨어요? 안하셨지요? 그러면 질의를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李萬燮委員 답변을 한번 듣고...

○李海龜委員 제가 간단한 것 한가지 한 1분정도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世應 1분 정도요?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李海龜委員 간단한 것 한가지만 제가 그 中國에 갔을 때 느낀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長官께서 보고한 데 보면 중경 임정청사복원 및 상해임정청사 관리개선을 적극 지원했다는 것이 決算報告에 나와 있습니다. 적극지원이라는 자체가 지금 저도 가 봤습니다만 管理主體와 所有主體가 현재 우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조선족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떤 시점에서 開發이 될 수 밖에 없는 지역 아니냐 상당히 그 落後한 지역으로 옛날 그 모습대로 있는 지역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는가 할 때 우리 상해임시정부청사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 獨立運動... 上海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또 中國에서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中國을 방문하는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上海를 들리면서 꼭 거기가 하나의 관광코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들 들리는데 우리가 中國에서 독립운동을 한 諸般 그 遺跡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展示해 놓고 정신적인 교훈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딱 그 3층 조그만 비좁은 건물 그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展示할 空間도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中國政府하고 어떻게 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소유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옆에까지 우리가 買入을 해서 거기를 우리 독립운동 할 때의 제반 遺品이나마 유적같은 것을 또 사진같은 것을 거기다 展示하는 獨立運動史를 中國에 있어서의 우리의 독립운동을 거기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구보존할 수도 있고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존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지원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長官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世應 예, 수고하셨습니다. 長官께서 답변하실 때 질의하신 委員이 안제신 부분은 뒤로 좀 미루셨다가 끝날 때 까지 질의하신 위원이 안 오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答辯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밑에 앉아서 하시는 것이 편안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外務部長官 孔魯明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李愚貞委員님께서 질의가 계셨던 韓·日過去事와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不用額은 李위원님의 지적이 계셨다시피 121억여원이 됩니다. 그 주요한 내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무부 기구축소에 따른 경비절감과 예산절감에 의해서 일부 발생을 했고 3억여원이 나왔습니다. 또 外交通信網 電算化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에 僑民團體補助金 지원축소등 계획변경과 취소에 의해서 20억여원이 나왔고 공관인사이동 건수의 감소와 豫備費使用 縮小등에 의한 당초 예산의 집행 잔액으로 89억7,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韓·日過去事와 관련된 저희 민간단체에 대해서 왜 이런 돈들을 좀 轉用해서 추가지원을 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하시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로서도...

○李愚貞委員 추가지원 뿐 아니라 적은 액수지만 25만원 策定한 것도 취소하고 안 쓰셨어요.

○外務部長官 孔魯明 예,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차례가 있습니다 마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轉用이 안된 것은 豫算會計法上 동일세항 간에서만 전용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기술적인 법률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또 최근...

○李愚貞委員 예비비도 안됩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것은 마찬가지로입니다. 예비비도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愚貞委員 그런데 여기 人件費轉用은 하셨잖아요. 다른 데 것을 가져다가 전용하셨잖아요?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것은 같은 동일 세항 간이기 때문에 동일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해서 豫算當局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들 단체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운데 25만원까지 왜 깎아버렸느냐 이런 지적이 제셨는데 저희 기록을 보면 太平洋犠牲者遺族會하고 挺身隊對策協議會에 대해서 저희가 94년에는 다같이 각각 250만원씩 보조를 드렸습니다.

○李愚貞委員 그런데 94년 決算에 그것이 왜 안나와요?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것은 제가 후에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5년 금년도 예산에도 이 두 단체에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李愚貞委員 95년도 것은 아직 決算이 안나와 모르겠고...

○外務部長官 孔魯明 예, 물론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신회계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도 예산지원을 增額해서 1,500만원씩 그러니까 3,000만원이시요 지금 이렇게 두 단체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李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제시겠습니까마는 우리 外務委員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韓日關係에 이러한 민간단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가

겠습니다.

○李愚貞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李萬燮委員 委員長님! 내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질의를 꼭 안했는데 答辯하는 가운데 내가 한두가지 長官한테 물어볼 테니까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제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불용액중에 내가 남득이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교민단체경상비지원 대폭축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전에 장관도 말씀하셨나요? 내년도 예산에 교민단체지원비가 모자라서 지금 우리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걱정하고 우리도 걱정을 해서 교민단체경상비지원을 우리가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94년도 歲出을 보면 교민단체경상비지원을 대폭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상비의 예산이 많아가지고 축소를 했다 이 말인가 분명히 좀 알아야 내년도 豫算審議에 도움이 되단 말이에요.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외교정보통신전산시스템 현대화추진 이것을 예산에 策定한 것을 현대화 추진 안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됩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가 되시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장관도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상비지원은 자꾸 축소일로로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올려야 되느냐 하는 어떤 정책이 결정이 돼야 될것 아니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근본적인 교민대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나도 좀 알아야 되겠어요.

○委員長 吳世應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지금李萬燮委員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지요?

○李萬燮委員 알고 답변을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委員長 吳世應 기획관리실장이 더 잘 알려예요. 그러니까 그것 답변 먼저 듣고 장관 답변 계속하세요.

○外務部企劃管理室長 金恒經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94년도의 교민단체예산의 불용액은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 換差이익에 따른 6,900만원의 불용액입니다. 환차이익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교민단체 예

산은 지금 저희가 9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교민단체지원금을 財經院에 늘려서 신청한 것은 우리 在日僑胞, 在日居留民團에 대한 특수한 사정과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제일거류민단 지원금을 우리가 증액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外交通信網 電算化에 따른 통신요금 그것은 애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비를 우리가 절약을 해가지고 7억7,00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그 전산화가 상당히 되어 가지고 전산화된 것으로 실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7억7,000만원이 예산절약이 된 것입니다.

○李萬斐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라니까요. 교민단체경상비지원이 축소된 것은 換差損 때문에 그렇다 그말 아니예요?

○外務部企劃管理室長 金恒經 예, 그렇습니다.

○李萬斐委員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 자료에 하나도 그렇게 기록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國會議員들이 이상하다 僑民團體 經常費가 모자란다고 우리보고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왜 또 줄였나 하고 자꾸 착각이 될 것 아니야.

또 電算시스템 이것도 現代化推進關係도 그러면 당초에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할 때 모르고 했나? 예산편성을 할 때 모르고 했느냐고?

○外務部企劃管理室長 金恒經 그 예산편성했던 것보다 7억7,000만원이 저희가 상당히 電算化가 되고 나서 실시해 보니까 그 만큼 예산이 절약될 수 있어 절약된 부분입니다.

○李萬斐委員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좀 참고로 하라는 거예요. 外務部에서 예산투쟁하는 것 보면은 제일 非科學的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따지를 못해. 또 여러분 예산을 보면 人件費가 不足額이 생기고 國際機構分擔金이라는 것이 이번에 모자랐단 말이야. 이런 것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예산을 따야지 이것을 안 따놓고 나중에 급하니까 이쪽 不用額까지도 轉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손해라니까. 왜 人件費不足額이라든가 國際機構分擔金같은 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왜 확보를 하지 못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대한민국의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 다 外務部에 모여있는데 예산할 때 보면은 너무도 좀 무성의한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변도 그렇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답변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특히 예산담당하는 사람들은 지난 번에 人件費不足額이라든가 國際機構分擔金이 모자랐단가 이런 것은 그 다음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돼야 돼요.

아까 專門委員이 이야기했지마는 여러분들이 主要業績 實績이라고 내놓은 것하고 거기에 든 예산하고 전부 이 자료로 國會議員들한테 맞추어서 내야 된다고. 작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고 얼마를 쓰고 얼마는 남았다 모자랐다 이런 것을 一目瞭然하게 만들어야 당신들도 EPB 豫算關爭할 때도 좋고 豫決에 가서 답변할 때도 좋고 예산 많이 확보하는 데도 좋고 이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좀더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요. 알겠어요.

○外務部企劃管理室長 金恒經 예.

○外務部長官 孔魯明 다음 李愚貞委員님께서 질의가 계셨던 挺身隊 및 強制徵用 피해자들이 提起中인 補償問題와 관련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그 피해자들이 日本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真相糾明과 함께 謝罪, 賠償...

○李愚貞委員 賠償입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인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韓·日協定締結로 일단 일본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금전적 보상은 일단락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현재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李愚貞委員 그런데 그것이 國際法 해석이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구라파에서 공부하신 국제법 학자들은 이 挺身隊問題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래서 이것이 정부차원에서의 금전적인 것...

○李愚貞委員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을 고쳐주

서야지 왜 미국정부는 독일정부의 지나간 일 50년전의 일도 추궁해서 독일정부로 하여금 戰爭犯罪라는 것을 인정시키고 기어이 賠償金을 받아내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韓·日條約에 그 배상이 끝났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에, 그렇습니다.

○李愚貞委員 그 태도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법학자들 해석이 保守的인 국제법학자 해석만 우리 정부가 채택을 하고 지금 구라파나 이런 데서 進歩的인 국제법학자의 해석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韓·日條約에 구애받을 필요없다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로 끝났다. 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것은 李委員님 말이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하고 일본하고는 請求權 및 經濟協力에 관한 協定에 의해서 이것이 정부차원에서는 일단락이 됐는데 독일하고 영국 또 독일하고 미국사이에는 이와 같은 請求權에 관한 協定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간의 그와 같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됩니다.

○李愚貞委員 장관님 압니다. 아는데 그 65년 韓·日協定 그 해석이 정부가 그렇게 꼭 保守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할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국제법학자 해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래서 李委員님 서희들 도요. 개인들의 請求權...

○李愚貞委員 왜 정부가 자꾸 손해보는 입장을 택합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아니 그것은요. 제 말씀의 취지를 좀 들어주십시오.

○李愚貞委員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부입장 압니다. 아는데 65년에 이것으로써 완전하게 最終的으로 세 번 네 번 못박았거든요. 이것으로써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다 배상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도장 찍으셨는데 그 조약자체를 이런 人道에 反한 罪나 또 어떤 時效가 없는 이런 것은 거기에 안들어 가도 된다는 것 또 상환변화라는 것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구애 안받아도 된다는 것이 지금 구라파에서 공부한 국제법학자들의 해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保守的인 국

제법학자의 해석만 딱 쥐고 늘어지고 韓·日條約 때문에 못한다 못한다 왜 그러셔야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外務部長官 孔魯明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정부는 개인적인 請求權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정부가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지금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李愚貞委員 토론이 되어버렸는데요 개인이 고소 걸었지 않습니까? 재판 걸었지 않습니까? 배상해라 이것은 엄연한 戰爭犯罪다 人道에 反하는 罪는 時效가 없다 배상해라 그리고 국제법이나 UN에서 다 그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정부에서 한국정부와의 관계때문에 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한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본정부가.

○委員長 吳世應 李愚貞委員님 장관 얘기를 좀 다 듣고 나서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장관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래서 저희들은 피해자들의 對日 補償請求訴訟에 대해서는 國際社會의 輿論喚起 노력과 함께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李委員님께서 물으신 가운데 또 하나 韓國人的 國際機構 進出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韓國人的 國際機構 進出現況을 말씀드리면은 34개 국제기구에서 현재 2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李委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에 대한 財政的 寄與도와 또 우리의 국제적 位相에 비추어서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外務部는 특히 UN가입이후 UN事務局進出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고위직으로서는 지금 UN50周年記念事務局 局長 1명을 포함을 해서 專門職이 14명 근무중에 있습니다. 金喆壽大使의 WTO事務次長 進出과 閔炳錫 前駐체코大使의 UNCRO團長 就任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국력에 맞는 역할수행과 국익신장을 위해서 韓國人的 國際機構進出을 좀더 체계화하고 또 많은 인원이 진출하도록 지금 노력하기 위해서 國際機構人事센터라는 것을 저희 外務部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國際機構 人事情報를 신속히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제기구에서 空席이 발생할 때는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國際機構 職員候補者 登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 각부처와 민간단체간에서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適材適所에 맞는 이런 인재들을 국제기구에 進出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女性人力의 國際機構進出과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李愚貞委員 그것하고 外務部하고 海外公館하고요.

○外務部長官 孔魯明 예.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제출을 해드리겠는데 아마 받으시면은 별로 만족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李愚貞委員 주세요.

○外務部長官 孔魯明 예.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도 빨리 좀 女性大使도 나오고 이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특히 저희 金泳三大統領께서 女性大使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愚貞委員 자격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구요. 다 그냥 변명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 못한다고 자꾸들 그러시는데...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러지는 않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면이 있나 봐요. 자격이 있는 분은 또 결혼하고 계시고 말이지요. 그러면 郎君의 문제가 있고 말이지요.

○李愚貞委員 아무튼 자료를 보내 주세요.

○外務部長官 孔魯明 예. 그 다음에 人件費不足事由하고 對策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本部人件費 不足으로 인해서 在外公館豫算에서 轉用한 액수는 10억7,0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시면은 아까 李萬燮 前議長님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좀 저희들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편성이 硬性的이 되어놔서 人件費는 定員에 있는 사람만 한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에 책정된 정원이 828명이고 지금 서울에

있는 국내에 있는 現員은 91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생겨서 본부에서 사용할 人件費의 不足이 생깁니다.

○李愚貞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예산을 잘 적에 이것은 人員이나 職級이나 그 봉급액수가 이미 다 정해진 걸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人件費는 대개 예산 결산이 같지 않습니까? 海外公館이라면 換率差 그런 것이 구실이 되지만...

○外務部長官 孔魯明 아니 海外公館에 말이지요. 저희 外務部 및 그 所屬機關職制의 第3條에 의하면은 本部나 在外公館이나 말이지요 8%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이리 갖다쓰고 저리 갖다쓰게 만들어 놔습니다.

그래서 第3條의 1項을 보면은 外務部 및 外交安保研究院의 外務公務員 定員 중 8% 범위안의 인원을 在外公館에 배정가능하고 또 第2項에서는 在外公館公務員 중 8%의 범위안의 인원을 外務部 및 外交安保研究院에 배정가능하다 그러니까 8%를 이리 주고 저기서 받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왜 그러냐 하시면은 外務部の 경우에는 외교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在外公館人事의 탄력적 운영이 불가피해서 本부와 在外公館의 정원을 각각 엄격히 지키면서 인사 운영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法規定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서 총 정원의 범위안에서 本부와 在外公館간의 융통성있는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두었는데 현행 법령상 本부와 在外公館간의 定員移替 8% 허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시 가능한 현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정원에 가깝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在外公館에 있는 돈을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 이러한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문제가 바로 지금 지적하신 왜 人件費가 부족하느냐 이런 원인입니다.

○李萬燮委員 그러니까 특1급 내지 3급 이런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 고위직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그 인력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에도 이제 예산이 들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8% 내의 교류하는 문제 이것은 예산에 미리 확보

가 안 됩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예. 그것은요. 본부장원만 곱셈이 되지 在外公館은 在外公館대로 곱셈을 하고요.

○李萬斐委員 그러니까 그 8%의 범위내에서의 외교능력경험을 활용을 하는 문제라는가 이런 것을 꼭 人件費에 안 들어가면 안 예산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經濟企劃院이 그것을 납득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 우리 外務委員들을 활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밤낮 人件費 不足額은 나머지 안 不用額가지고 轉用을 하고 轉用을 하고 밤낮 이것이 되풀이 된단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여러분들이 하시라니까요.

○李愚貞委員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특1급에서 2급이 93년에 국내가 18명이었다가 금년 94년에 16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1급에서 3급까지가 국내가 93년에 29명이었다가 94년에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인 전비가 부족으로 더 많이 지출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설명도 거기 적용이 안 됩니다.

○李萬斐委員 그러니까 국내정원 이외의 분이 와가지고 일하는 데 대한 예산이 이제 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안 데서 轉用을 한 것 같은데...

○李愚貞委員 그러니까 고급관리가 줄어들었다니까요.

○李萬斐委員 그러니까 李愚貞委員이나 내가 말씀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결산 심의할 때 또 그렇다구요.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러면 室長으로 하여금 좀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萬斐委員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봐요.

○李愚貞委員 10억2,700만원이니깐 또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매년 저희들이 지적당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外務部企劃管理室長 金恒經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在外公館의 정원을 본부가 8% 범위내에서 본부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人件費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本部定員의 人件費가 따로 있고 在外公館의 정원의 人件費가 별도로 있습니다. 本部定員의 人件費하고 在外公館定員의 人件費가 액수가 다릅니다. 本俸은 같습니다만 在外公館은 在外勤務手當 기타 다른 것을 받기 때문에 그 액수가 달라서 그 체제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在外公館의 정원을 갖다가 본부에 데려다 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本部人件費만 가지고는 본부에 월급 주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在外公館은 그만큼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을 財經院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移替한 부분에 한해서 本部의 월급체제에 맞추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財經院이나 다른 관계부처인 總務處나 해가지고 이 移替하는 서로 在外公館 T/O를 본부에 갖다쓰는 것을 가급적 줄일려고 그래서 지금 李委員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보다 금년에 그 率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그 本部의 人件費 不足分은 줄었지만 그 「포션」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계속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具昌林委員 그러면 T/O를 조정해야지요. 조정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몇년동안 똑같은 것을 되풀이 합니까?

○李萬斐委員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야? 외국에 있는 외교관들 8%이내 쓴다는 것이 어떤 경우야?

○外務部企劃管理室長 金恒經 지금 外務부에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 해외에 계속해서 一般 外務部 外務公務員의 경우 8년 이상을 해외에 계속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정원T/O가 어떻게 돼도 8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外務公務員法上 일단 본부에 들어와야 합니다.

또 公館長人事의 경우에는 일단 한번 公館長을 마치고 다른 대로 轉補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外交安保研究院 內에 지금 1급이상의 公館長이 여러분 계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들어와서 그동안 1년이면 1년동안 本部에서 특수임무를 맡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公館長 나간 것을 대기하고 계시고 이런 경우가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李萬變委員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쳐요. 내가 더이상 말안하겠는데 그러면 여기 외국에 있다가 여기 들어오는 분은 봉급은 활동비는 외국과 똑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니야.

○外務部企劃管理室長 金恒經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오면은 일단 本部의 봉급에서 받고 다만 財源만 거기서 온다 뿐이지 그러니까 예산 전체 토탈로 볼 때는 일부 절약이 되는 겁니다.

○李萬變委員 그래요. 그것은 알겠는데 하여간 근본적으로 고치세요.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런데 한가지 좀 外務委員님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본부의 高位職이 일정한 수가 있지 않습니까? 在外公館이 아무래도 많거든요. 人事가 꼭 그렇게 장기 두듯이 깨끗이 두어지지 않을지 모르나 말이지요.

그런데 역시 많은 인원이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고요. 또 일정한 충진기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朴定洙委員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들이 차례로 나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世應 孔長官! 아까 李愚貞委員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끝까지 들으시라고 그러고 제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李愚貞委員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끝나실 때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십시오.

○外務部長官 孔魯明 알겠습니다.

○外務部美洲局長 任晟準 美洲局長입니다.

朴定洙委員님께서 UN安保理와 관련해 가지고 첫째 安保理 理事國 진출 추진을 위해서 사용한 예산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둘째 앞으로 安保理 理事國으로서의 계획이 어떠냐, 세번째 일본의 安保理 常任理事國 진출

에 대한 우리 입장이 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최근 일부 신문에서 보도된 KEDO 輕水爐事業에 관련한 追加費用을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安保理進出을 위한 費用問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外務部는 安保理 理事國 進出을 주요 외교목표로 해 가지고서 지지확보 교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安保理 지지확보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사업을 책정했다든지 예산을 배정한 것은 아니고 가능한 모든 외교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安保理 理事國 進出交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상외교라든가 외무장관 초청방문외교 또 특사파견 재외공관활동 등 이런 정부외교는 물론이고 의원외교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능한 安保理 지지교섭에 초점을 맞추어 주십시오 해 왔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산은 사실상 뽑기가 어렵고 구태여 安保理 진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사업을 했다는 것은 금년에 특사를 저희가 여러 군데 보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중동하고 아프리카에 한 팀씩 두 팀밖에 안보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액수가 별로 안됩니다.

두번째로 安保理 理事國으로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安保理는 다 아시다시피 국제평화안전유지책을 가지고 있고 특히 냉전 붕괴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국제평화안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美·英·佛·中國·러시아 등 5개 常任理事國과 함께 15개 理事國의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또 우리 독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요한 국제문제에 있어서 우리 입장도 내놓고 또 대책도 내놓고 이런 책임이 막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제평화안전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기여도 하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기반을 강화한다는 그러한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PKO활동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朴定洙委員 내가 그것을 왜 물었느냐 하면 安保理에 들어가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이

슈」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外務部美洲局長 任晟準 에, 그래서 지금 본부조직과 유엔대표부의 조직도 개편하고 철저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일본의 安保理 常任理事國 進出에 관한 정부입장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냉전체제붕괴에 따른 국제질서개편 UN회원국의 대폭적인 증가 특히 금년 UN 5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UN개편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그 중심적인 사항의 하나로 安保理改編問題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安保理 改編에 관해서 우리 입장은 安保理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현실을 반영해야 되겠고 또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원국이 많이 늘었으니까 공평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의 논의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회원국 수를 현재 15개국에서 20개국 내지 25개국까지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대충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늘리느냐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이 안되어 있고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저희 입장은 첫째 현재 15개국 理事國을 23개국 또는 25개국 정도로 늘리는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고 다만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늘리느냐 즉 常任理事國을 늘리느냐 非常任理事國을 늘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각국의 입장을 봐가면서 밝히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해 두는 것은 拒否權制度는 어느 경우에는 확대되어서는 안되겠다 거부권은 다섯 나라만이 하고 그 다섯 나라만이 누리고 있는 거부권도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리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93년8월에 UN에 제출한 서면의견서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했고 따라서 현재 理事

國도 아니고 常任理事國도 아닌 그 중간에 소위 제3의 「카테고리」로써 準常任理事國같은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93년7월에 安保理 改編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제출했고 작년에 일본외상이 UN총회연설을 통해서 安保理 常任理事國으로 자기네들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지금 자기네들 지지해 달라고 저희한테도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입장에서 첫째 일본이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자기네 국력에 상응하게끔 역할을 해 나간다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를 표시하고 있지만 일본이든 독일이든 특정국가가 常任理事國으로 가느냐 안가느냐 여부는 우리 기본입장에 따라서 UN개편의 방향이 확정된 다음에 그 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李萬燮委員 그러니까 일본이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에 우리가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지금은 유보된 상태다...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外務部美洲局長 任晟準 그러니까 현재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고 安保理가 지금 확대되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확대되는지 아직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의 제안에 보면 현재 15개국을 25개국으로 10개 나라를 늘리는데 10개 나라를 다 소위 제3의 「카테고리」인 準常任理事國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본이든 독일이든 常任理事國이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부권은 어느 경우에도 현재로 국한하지 더 이상 늘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安保理 改編은 어떤식으로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이 전혀 오리무중이니까 이것은 대충 정리가 되고 거기에 관해서 방향이 잡히면 그 「카테고리」하에서 일본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李鍾贊委員 이태리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外務部美洲局長 任晟準 아까 말씀올렸듯이 저희도 93년8월에 서면으로 내면서 安保理의

거부권은 더이상 확대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非常任理事國도 아니고 常任理事國도 아닌 중간의 제3의 「카테고리」를 우리는 아이디어로 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기본 「어프로치」가 이해하고 상당히 같습니다.

○朴定洙委員 「비토파워」에 관해서는 外務部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지만 일본에 「비토파워」를 주고 안주고 하고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가 민주화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비토파워」현재 있는 것도 전부 완화한다든지 없애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국제기구를 능률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강대국이 중심이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 나가든지 하는 문제와 관련한, 지금 모래알같이 제멋대로 흩어지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제대로 존속할 수 없다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잘 연구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李愚貞委員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韓昇洲長官이 제실 적에 거부권 있는 일본 安保理 理事國은 반대다 거부권없는 일본의 安保理 理事國은 찬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바뀌었습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것은 정부입장이 아니고요. 그것은 보도가 되었다라도 정확하게 본인이 그렇게 말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금 任局長이 얘기한 것과 같이 앞으로는 UN개편이 확실히 된 이후에 어떤 나라가 어떤 「카테고리」의 나라가 常任理事國이 될 것이냐 非常任理事國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지 현 단계에서 어느 나라는 되겠고 어느 나라는 안되겠고 이런 것은 우리는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우리 국민정서를 우리는 충분히 앞으로 참작을 하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저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나갈 것입니다.

○外務部美洲局長 任晟準 마지막으로 박위원님께서 KEDO輕水爐事業과 관련한 일부 신문의 追加費用金額問題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측의 쿠알라룸푸르회담을 통해서 경수로

공급범위에 관해서 항만시설이라든가 진입로 등을 설치하는 구조문제 두번째 「시뮬레이터」 모의훈련하는 문제 세번째 송전관 배전관 등의 문제가 소위 경수로사업공급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 이것은 추가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계의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이러한 추가공급요구 등은 비현실적인 주장이고 무리한 주장은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KEDO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朴定洙委員 북한측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비용까지도 이쪽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外務部美洲局長 任晟準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저희가 단호히 반대를 하고 있고 KEDO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朴定洙委員 확실히 하세요. 과거같이 질질 끌려다니는 입장은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世應 KEDO문제는 어느局에서 하고 있습니까?

○外務部美洲局長 任晟準 輕水爐企劃團입니다.

○委員長 吳世應 다음 분 하세요.

○外務部國際經濟局長 尹志峻 國際經濟局長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OECD에 96년도 加入展望 그리고 한국과 EU간의 經濟關係展望 두 가지입니다. 먼저 OEC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96년 가입을 위해서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전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식으로 OECD측과의 심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체코 헝가리 불란서가 94년에 가입신청을 해서 95년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96년 전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이 바뀌고 있다가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다소 당겨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지난 3월 하순에 가입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본격적으로 10월 하순에 OECD의 각 분야별로 실무팀

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분야별 협의를 하면서 심사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朴定洙委員 그러니까 우리쪽의 준비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요구라든지 기준을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경우 96년에 안될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外務部國際經濟局長 尹志峻 예, 그렇습니다.

○朴定洙委員 우리쪽에서 준비가 다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동안 外務部에서 그런 보고할 때마다 우리는 완전히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外務部國際經濟局長 尹志峻 그러한 뜻이 아니고 3월 하순에 가입신청서만을 제출을 하고 7월 하순에 우리나라의 경우 분야별 실무자료를 OECD측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OECD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10월 하순에 분야별 협의단이 와서 각 부처별로 협의하게 됩니다.

다음 한국과 EU간의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교역이라든지 투자에 있어서 교역은 극대화되고 있고 투자는 점점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교역을 보면 지난 3년간 연간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투자의 경우에도 EU에 대한 우리 나라의 투자는 약 10억불로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와 비교할 때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상당히 질적으로 좋은 구조를 보이고 있고 EU국간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지난 2년동안 두 배 이상씩 급격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라서 EU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협력관계도 동시에 이와 비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과학기술이라든지 또 박사급 두뇌의 연수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기술이전 그리고 제3국에 대한 공동기술진출이라든지 이렇게 협력분야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어업같은 것도 보면 원양어업에서 OECD는 共榮을 EU와 한국과는 결속된 이러한 입장에서 상당히 공동보조를 취했고, 환경에 있어서 우리와 각 편선 별로 다른 입장도 보이고 있는 EU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 모든 분야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

적으로 볼 때 확대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EU와 기본 관계 입장을 체결하는 목표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外務部아시아·太平洋局審議官 文偉柱 아·太局審議官입니다. 亞洲局長이 싱가포르에 출장중이므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朴定洙委員님께서 라오스 캄보디아와의 수교전망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산문에 라오스와 수교보도가 있었다는 것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오스측은 수교교섭의사를 우리에게 밝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교교섭시기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교교섭문제에 관해서는 양국간의 발표시기를 비롯해 세부사항이 합의되어서 공식으로 발표할 때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례라는 것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定洙委員 그것은 알겠는데요. 年內에 가능해요?

○外務部아시아·太平洋局審議官 文偉柱 그것은 제가 이 시점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朴定洙委員 알았습니다.

○外務部아시아·太平洋局審議官 文偉柱 캄보디아 정부도 수교 희망을 표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아누쿠 국왕의 북한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감안해서 정부의 수상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왕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캄보디아 내부에서 입장이 정리되어야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定洙委員 그 관례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검토와의 수교의 경우도 다 되었는데도 外務部에서 발표보다도... 하여튼 그러한 것을 시인하는 것조차도 주저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참고하세요.

그런데 대만에 관한 것은 누가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外務部長官 孔魯明 航空關係는 通商局長이 답변할 것입니다.

○外務部外交政策企劃室長 潘基文 外交政策企劃室長입니다.

朴委員님께서 北韓 水災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하문을 하셨습니다. 北韓의 水害에 관해서는 이미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북한은 주장에 의하면 이재민이 한 520만명이고 자기를 총 피해액이 150억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유엔 조사단이 갔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북한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정도의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북한이 그야말로 사상 최초로 자기를 나라에서 무언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이러한 水災 사실을 시인을 하고 또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보고 있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북한의 외교행태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統一院과 外務部를 중심으로 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北韓 水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북한의 수재를 보는 기본입장은 첫째 금번 북한 수재는 우리 동포인 북한이 아주 막대한 피해를 본 그러한 인도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원조를 하더라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남북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또 부수적으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수재에 대해서 좀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호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인도적인 고려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최소한의 우리 성의 표시로 大韓赤十字社에서 5만 달러에 대한 원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차원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특히 쌀 지원시 보여 준 북한의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비타협적이고 또 감사함을 모르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와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정부에서도 보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반응도 우리가 잘 검

토를 해서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外務部로서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간에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되 그 검토 과정에서 이미 표출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 가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토대위에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朴定洙委員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에서 공식요청이 없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外務部外交政策企劃室長 潘基文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그러한 북한의 공식요청 여부도 봐 가면서 또 國會나 黨 국민들의 여론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定洙委員 상당히 外務部다운 답변이네...

○外務部在外國民領事局長 姜雄植 在外國民領事局長입니다.

朴定洙委員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駐韓美大使館 비자 발급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고 두번째는 在外國民 專門人力 活用을 위한 규제완화 대책입니다.

그러면 첫번째 주한미대사관 비자 발급 문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주한미대사관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문제가 크게 야기되었던 것은 매년 30-40%씩 급증하고 있는 미국비자에 대한 수요를 주한미대사관의 현 인력과 예산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한미대사관의 비자 불법발급 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감사로 대사관 업무의 효율이 저하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外務部는 이와 관련해서 그간 韓·美外務部長官會談을 비롯해서 韓·美次官補級高位協議會 등 수 차례에 걸쳐서 미측에게 비자 발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동시에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문제 그 다음에 민원인의 편의시설 확충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측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인력 보강 및 신청인 등의 대기공간 확보를 위한 대사관 청사 보수공사 계획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니다.

外務部는 이러한 주한미대사관측의 단기적인 조치 요청과 함께 비자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朴定洙委員 거기에서 내가 한 마디만 덧붙이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개선책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 취급을 당한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자존심이나 긍지가 상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 한번 가기 위해서 비자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는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같은 것 거기 副領事들의 태도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국 대사관에 外務部측에서 강력히 지적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外務部在外國民領事局長 姜雄植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海外僑胞 專門人力 活用을 위한 規制緩和 및 法 制度 改善問題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外務部는 해외교포 전문인력을 국가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재외공관에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을 해서 국내 유관기관에 소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교포들의 국내 체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法務部는 외국국적 교포의 국내 체류기간을 현 6개월 내지 3년에서 1년 내지 5년으로 완화하여 최장 18년까지 장기체류가 가능토록 出入國管理法施行令을 오는 10월 중에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내 초·중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교사 채용시에 우리 교포 2세를 우선 고려토록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6월에 다섯 명 9월에 50명을 이미 채용하여 각 초·중등학교에 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계속 그 수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포들의 국내 활동상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關聯法과 制度改善을 전향적으로 추진 중인데 금년 5월에 개최된 在外國民政策審議委員會에서 교포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포 1세의 국내토지 계속보유를 허용하고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의 단계적 반출 허용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게 되어서 현재 관계부처에서 이에 관한 법 개정을 마련하여 조만간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部는 또한 외국영주권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데 이어서 해외교포들의 국내 활동상의 편의 증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定洙委員 예를 들어서 여기 체류자들이 보험에도 들 수 있고 은행도 이용하고 용자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할 수 있나 이것이지요?

○外務部在外國民領事局長 姜雄植 지금 그 문제는 財經院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현실상 의료보험을 든다든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定洙委員 그런 것까지 해야 세계화가 되는 것이지... 알았어요.

○委員長 吳世應 이 문제에 대해서 長官께서 여쭙어 보겠는데 요새 金昌準 美議員께서 한미사증면제협정 문제를 제기했다가 거절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사증 신청자 중에 7.5% 근처가 그쪽에서 거부당한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어서 100명 시정한 사람 중에 한 여덟 사람이 거절을 한다든가 위조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한테 야단만 치지 말고 우리 국내에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사가 돈 받아 가지고 위조증명서 만들고 그런 사람을 더 열심히 찾아낸다든가 우리측에서도 할 일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러한 것은 역시 범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여행사가 사문서를 위조를 한다든가 이것은 역시 엄연히 법에 저촉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도 그러한 것이 거부율이 적어져서 2% 정도가 되면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金昌準議員의 그러한 노력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점 계속 앞으로도 유의해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委員長 吳世應 제 질의는 外務部에서 그러한 노력을 한 일이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러한 노력을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령 여행사가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할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저희가 旅券課에서 출입을 정지한다든가 등등 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朴定洙委員 관계부처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委員長 吳世應 바로 그말인데요. 지금 外務部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은 여기에서 하실 필요없고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朴定洙委員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外務部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뜻에 따라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外務部通商局長 張基浩 다음은 通商局長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定洙委員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亞洲局長 앞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臺灣하고의 航空關係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혹시 대만하고의 항공관계에서 중국을 너무 의식하고 있지 않느냐 또 대만하고 항공관계에 있어서 태국하고의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순수 민간항공분야의 협력의 문제로 보고 여기에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만하고의 항공수요가 斷交 이전에 1억불의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업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대만하고의 항공관계를 빨리 조속히 정상화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저희가 4월달에 臺灣하고 航空協商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느꼈는데 그것은 이미 대만하고는 非政府 貿易代表部間에 航空協定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서로 합의하고 대만에서 항공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정치적인 측면에 너무 관심을 갖고서 결국 타결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는 항공협정 교섭시 협정문안에 「테러토리」 그러니까 영토의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만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넣기로 강하게 고집을 해 가지고 결국 다른 분야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 하고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하기로 하고 회의를 결렬을 보았습니다.

○朴定洙委員 그러면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들은...

○外務部通商局長 張基浩 태국은 태국항공하고 민간 항공사간에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협정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민간기관간에 항공협정 사례는 일본이나 인도네시아가 예를 들자면 兩國 商工會議所間 또 兩國 交流協會間에 협정으로 되어 있고 민간 항공사간에 쌍무협정을 체결한 것은 태국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또 더 나아가서 영국 독일 화란이 그러한 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간 협정은 미국이 미행정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해서 정부간에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만하고...

○朴定洙委員 그러면 거기에서는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外務部通商局長 張基浩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대만하고의 관계는 업계의 요구도 강하고 시기가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타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委員님들께서 혹시 대만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 주시면 저희로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韓·美 自動車 問題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협상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위 그리고 미국의 요구 우리의

대응책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자동차 수입제도 자동차 수입시장의 수입제도와 관행이 관세 비관세 장벽이 높다고 보고 이를 不正貿易慣行으로 9월말까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자동차 업체인 포드하고 클라이슬러하고 제너럴 모터에서 압력을 넣는데 특히 미국의 입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문 교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관세인하 배기량별 차등세율에 대한 시정 또 할부금 문제 안전검사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문제 또 소음을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진동 등 문제를 미국의 요구를 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작년 6월에 포괄적 개선안을 제시해서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하고 또 이번에는 通商産業部가 外務部長官으로부터 交渉權을 수여받아 가지고 通商産業部가 교섭을 하고 있는데 미측이 제시한 내용 중에 우리로서 합리적이고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국제관례나 또 우리가 도저히 소용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는 WTO까지 간다는 의연한 자세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퍼 301조에 따른 不正貿易慣行의 지정을 받더라도 앞으로 1년간은 교섭기간을 갖고 미국과 교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WTO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인 대응태세를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對日 貿易逆差에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최근의 무역 추이를 보면 계속 對日 적자폭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93년에 84억불에서 95년에 1월부터 7월까지 95억불의 무역적자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도 보면 홍콩도 작년에 엄청난 對日 무역적자를 가졌고 싱가포르 대만 다 주변 국가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보면 현재 자본재하고 부품의 對日 수입의존도가 아직도 우리는 40%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국내 경기가 좋아지면서 좋아지는데 대한 영향과 또 제3국 수출증대를 위해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및 부품 수입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또 한 원인으로는 겉고

현상에 따라서 일본 자재 및 부품의 달러 표시와 가격때문에 對日 수입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도 근본적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의존도가 높은데도 원인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재산업을 육성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또 對日 의존도가 높은 산업기반의 육성을 위해서 韓日 兩國間에 産業技術協力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우리에게 대한 투자를 늘려 가지고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對日 수출증대 기반을 위해서 일본시장 특성에 맞는 우리의 제품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대외 통상교섭 측면에서 보면 이미 韓日 간에 韓日 신경제협력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금년에 3차 회의를 10월 4일부터 갖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협의기구를 통해서 분야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우리의 요구를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世應 대만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가지만 부연하겠는데 사실 노태우대통령 말기에 중국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대만한테 상당히 섭섭하게 해 준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어서 아까 주권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많이 후퇴되어 있어요. 아까 국회의원들께서 대만 가시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外務部에서는 대만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몰라도 여기 代表部에다가 대한민국 무슨 국장 이상 사람은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 사람들 보고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정부 공무원 만나지 않게 해 달라는 그렇게 서운한 정보가 들어가고 있고 外務部 자체가 복지부동 자세로서 이 문제에 지금 접촉을 안 하

려고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원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外務部 자체가 반성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전체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몇 분이 대만에 조용히 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앞으로 접촉을 잘 하셔서 빨리빨리 좋게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朴定洙委員 지금 얘기가 났으니까 한 마디만 하면 아까 李愚貞委員님이 對日 저 자세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對中 저 자세도 문제입니다.

中國은 北韓카드로 우리한테 이용하는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대만카드를 이용도 못하는 그런 외교력이 어디 있어요. 참고하세요.

○外務部通商局長 張基浩 예, 유념하겠습니다.

○外務部企劃管理室長 金恒經 企劃管理室長 답변올리겠습니다. 朴定洙委員님께서 외무부의 전문인력활용계획 그리고 외무분야의 전문인력 활용현황하고 앞으로 국제기구 여러 전문분야에 專門性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외무부는 世界化外交次元에서 우리 외교의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고 특히 WTO출범에 따른 通商外交強化, 또 OECD가입준비, 그린라운드협상 등 各種 외교교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외무부의 전문인력 特別採用制度에는 우선 外務公務員法 第9條에 따라서 一般專門家나 外國語能通者를 特採하는 방법이 있고 또 外務職制에 따라서 외무전문인력을 專門別定職으로 채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0년-95년간 약 5년동안 職級別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1級서부터 5級, 6級까지 총 16명의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1級으로는 지금 駐불란서대사관 소속으로 있습니다만 OECD담당公使로부터 시작해서 독일어 능통자로 독일에서 教育學博士를 받은 여자직원이 하나 채용되어 있고 또 러시아, 터키, 브라질, 중국, 기타 이집트에 아랍어, 호치민總領事館에 베트남어 이렇게 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外務部는 이런 외교력의 外交力量 極大化를 위해서 일반직원들의 質的向上과 함께 이런 특정분야의 전문가 양성에도 형평성

과 직원간의 士氣問題 경험축적의 필요성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무부는 지금 世界化推進委員會의 施策에 맞추어서 96年度 外務考試 선발인원의 일정비율을 國際關係特別考試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신문에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世界化推進委員會에서 고급공무원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방안으로 국제관계특별고시를 96年度 外務分野부터 시범실시한다는 것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修學한 우수한 인력을 주대상으로 외국어를 母國語처럼 구사하는 그런 전문분야 외교관을 양성해서 국제기구같은 분야는 물론 세계 주요국제기구에서의 활동에 우리의 외교력을 더욱 더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現行 外務考試 선발인원의 일정비율을 特別考試로 선발하느니만큼 기존 외무고시 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 응시자격, 조건, 선발인원, 선발의 적정성, 또 자질검증 등에 대한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統一外務委員會를 비롯해서 國會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또 관계법령 개정때 따른 여러 위원님들의 高見과 충고를 충분히 참작하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外務部文化協力局長 金富寬 文化協力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朴定洙委員님께서 韓國國際交流財團이 그 設立趣旨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92년 1월 국제사회에서 韓國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友好親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교류재단의 주요사업은 해외에서 韓國學研究支援 또 각종 국제행사의 추진 및 지원, 문화교류를 통한 한국문화의 해외소개 또 해외우수 박물관의 韓國室設置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外務部로서는 재단과의 수시 정책협의 또 사업심사 등을 통하여 재단사업이 설립취

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指導・監督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그간 국제교류재단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해외 한국학연구 지원사업이 全事業의 57%를 점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美洲 지역에 대한 한국학연구지원이 한국학연구지원 전체사업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등의 事業別 地域別 偏重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是正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한국학연구사업은 지원계약상 보통 3년에서 4년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短期間에 걸쳐 同事業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는 어려우나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대로 추가지원을 억제하고 그 剩餘豫算으로 여타 인사교류사업 또 展示事業 등 사업의 지원을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定洙委員 됐어요. 그 정도로 하세요. 국정감사때 구체적으로 질의할테니까...

○外務部文化協力局長 金富寬 하여튼 저희 外務部로서는 국제교류재단이 브리티시 카운슬(British Council)과 제팬 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 등에 상응하는 좋은 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外務部아시아·太平洋局審議官 文偉柱 亞·太局審議官입니다. 朴委員님께서 1次官補께 질의하셨는데 不參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亞·太局에서 설명을 하시라는 말씀에 따라서 亞·太局審議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委員님께서 뉴질랜드 駐在 前行政官 최승진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외무부가 大使를 召還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뉴질랜드 정부와 혹시 外交上의 문제점이 없지 않았는지 또 혹시 副作用이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번째로는 최승진의 송환을 위한 交渉의 진전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真相에 대해서 외무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吳世應委員長, 具昌林幹事와 司會交代)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現地大使를 소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9월12일자로 우리 外務部代辯人이 발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초 최승진 前行政官의 사건 발생 직후에 同事件은 우리정부의 公信力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건으로서 현지대사로서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大使의 소환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崔前行政官의 자진귀국을 위한 설득 그리고 뉴질랜드정부와의 송환협상이라는 事後收拾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李大使의 소환을 미루고 있던 중에 崔행정관 송환에 대한 뉴질랜드내의 國內法 節次가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李大使의 소환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뉴질랜드측은 당초 大使召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추후에 뉴질랜드의 맥키논外相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韓國의 外務部가 當局者 論評을 통해서 이는 현지대사로서의 책임을 묻어서 소환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것에 비해서 뉴질랜드정부로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兩國의 기존 우호협력관계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정부와 뉴질랜드 양쪽이 모두 崔행정관 송환문제로 인해서 양국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사소환으로 인해서 양국외교관계는 오히려 不正의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앞으로 양측이 더 조심스럽게 상대방과 협조를 해나갈 것으로 서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최승진 前行政官의 송환을 위한 교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이 사건의 真相糾明을 위해서는 崔행정관의 早期歸國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데로 최승진 前行政官이 현지정부에 대해서 難民審査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崔행정관이 難民地位를 충족하지 못하는 단순한 實定法違反者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移民當局에서의 심사결과 난민지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부가 뉴질랜드와 무엇을 교섭하느냐 이것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마치 우리가 難民審査의 그 결과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든지 어떻게 교섭을 한 것으로 보도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

것이 아니고 난민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뉴질랜드정부의 이민당국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절차범위내에서 이 난민심사의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뉴질랜드정부측은 난민심사절차라고 하는 것은 UN難民協約이 그 뉴질랜드의 國內法 一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自國의 국내법의 일부로 된 國際協約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절차를 축소한다든지 내용에 간섭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양국관계를 감안해서 뉴질랜드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섭의 경위와 진전상황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朴九益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長官께서 상세히 답변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真相에 관한 외무부의 입장을 확실히 表明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최승진 前뉴질랜드駐在 行政官이 본부에서 지시한 그 電文을 자신이 평소에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해서 문서내용을 變造해서 이를 外部로 유출한 사건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定洙委員 이왕 그 자리에 섰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안승훈목사 拉北事件 真相에 대한 中國政府의 통고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하고 나가세요.

○外務部아시아·太平洋局審議官 文偉柱 예, 안승훈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中國側에다가 그 진상을 우리에게 밝혀주도록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현재 公安當局에서 계속 조사중이기 때문에 통보할 수 없으니까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현지 우리 公館을 통한 보고에 의하면 조만간 곧 그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를 하겠다는...

○朴定洙委員 그동안 조만간이 몇 달 됐어

요? 外務部가 처음 얘기할 때도 1주일내로 중국정부에서 통고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벌써 한달반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外務部아시아·太平洋局審議官 文偉柱 이번에는 정말로 조만간에 올 것입니다.

○李鍾贊委員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오는 것이지요? 조만간이니까요.

○委員長代理 具昌林 다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朴定洙委員님 말씀하세요.

○朴定洙委員 外交安保研究院長이 없어서 넘어가겠는데 政策企劃室長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27일 北京에서 南北 3次會談이 있는데 이 회담을 굳이 꼭 북경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이 회담을 판문점으로 옮긴다든지 평양, 서울을 오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데에 대해서 外務部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外務部外交政策企劃室長 潘基文 구체적인 장소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北韓側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次는 27일부터 北京에서...

○朴定洙委員 나는 3次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外務部外交政策企劃室長 潘基文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 北側하고도 협의를 해서...

○朴定洙委員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도 없이 앞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아까 같은 그런 답변만 자꾸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정황은 나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정부로서 확고한 기본입장은 있어야 對北協商에 있어서...

○外務部外交政策企劃室長 潘基文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具昌林 그러면 李富榮委員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長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國庫債豫算의 繼續事業編成에 대한 그 후의 저희 外務部の 措置內容에 대해서 말씀이 제했습니다.

국고채예산의 계속사업편성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當該年度 實支出豫算額만을 計上한다는 예산회계법의 기본취지에 따라서 당해년도 지출예산액만을 계상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外務部는 財經院의 예산신청시에 當該 國有化事業의 총규모 계획 등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外務部의 국유화사업 중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총규모에 대해서 사전에 國會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4년 11월 李委員님께서 지적이 계셨던 그 시점이후의 신규사업은 없었습니다.

둘째 國庫豫算의 移·轉用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李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까만 외무부는 가능한 한 국고채예산의 轉用집행을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불요불급한 경우 둘째, 예산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豫算會計法 第37條 豫算의 轉用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여 예산당국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駐英國大使館 이외의 4개 公館에 대한 國有化事由는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싱가포르大使館의 부지구입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의 부지가 나오지 못함으로써 그 예산을 다음의 긴요한 사업에 전용했던 것입니다. 駐英국대사관은 기존 官邸가 런던 시내에서遠거리에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전체규모 또한 협소해서 오찬 만찬 리셉션 등 官邸行事に 많은 불편이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 국유화사업이 진행중인 新廳舍完工後에는 기존의 사무실 건물을 官邸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것을 건의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는 공관건물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있다는 점, 신청사 사업규모 축소로 약 570억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는 점, 또 영국의 부동산거래 관행상 건물의 매입 매각도 容易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예산당국의 동의하에 절감예산중 일부를 기존청사의 관저용도변경사업비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규모는 284만2,000불입니다.

또 駐이집트官邸 신축에 관해서도 90년 10월, 駐이집트대사관은 1974년부터 賃借해서 사용하고 있던 관저가 1930年代에 건축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전기배선의 합선위험, 내벽의 수도관 누수 등을 보고하면서 91년 4

월 관저국유화를 건의해 왔습니다. 당시의 소요예산은 328만7,000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도 國庫債事業에 同 事業費를 반영을 해서 관저신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駐이집트대사관은 94년 11월 관저담당장 및 정문설치, 경비숙소 등 추가공사 필요에 따른 추가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지원요청 검토결과 이집트내의 回教原理主義者들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테러활동 등을 감안할 때 동 추가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싱가포르廳舍敷地買入資金 일부를 관계당국의 동의하에 추가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지원액은 30만弗입니다.

나머지 각 공관 고오베 베네주엘라도 유사한 이유입니다마는 시간절약상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을는지...

○李富榮委員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지요. 싱가포르大使館 新築敷地買入을 하기 위해서 404만불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은 싱가포르大使館 新築敷地를 정말로 大使館을 세울려고 매입을 한 것인지는 아니면 다른 駐英國大使館이나 駐 카이로大使館이나 이런 데에 改築을 하거나 補修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싱가포르大使館敷地를 매입한다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지 사실 그렇게 의심을 할만 해요.

왜 이렇게 94년도 예산에 404만불이나 계상했다가 불과 몇개월도 안되어서 그것을 취소해 버리고 다른 데 増·改築이나 新築하는데 돌려버리느냐 이것입니다. 국민한테 얘기할 때 국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싱가포르大使館 新築敷地買入을 한다고 분명히 예산을 따놓고 이것을 무단으로 다른 데에 돌리고 취소해 버리고 예산을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집행을 하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富榮委員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분명히 404만불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公館이 근무원들도 이렇게 많고 그야말로 廳舍마련이 시급하다고 해서 현지사정이 그래서 大使館 敷地買入을 하기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싹 없애버리고

금방 敷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買入을 없던 것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데에 新築 내지 改築하는데 다 써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또 싱가포르大使館 敷地買入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國有化事業을 하니까 매년 국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장관께서 在外公館 國有化事業 예산집행 이런 것을 單年度로밖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도 外務部の 숙원사업이 獨自廳舍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매년 敷地購入費하고 그 다음에 敷地購入費 追加分을 또 하고 그 다음에 3차년된 건물 신축비하고 이렇게 해서 마련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도 豫算會計法上에 繼續費 이런 것을 豫算當局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야 예산도 적정하게 확보가 되고 廳舍 마련의 꿈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外務部쪽에 의견을 한번 구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싱가포르大使館 敷地買入을 한다고 해서 404만불 청구했다가 그것을 적당한 敷地가 안온다고 해서 다른 데에다가 돈을 다 써버린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싱가포르大使館은 이제 시급하게 大使館新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예요. 이렇게 들쭉날쭉 뒤죽박죽하게 계획이 수립되어도 또 취소가 되어도 좋으나 이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外務部쪽의 近視眼의인 豫算策定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못되었으면 인정을 해야지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더 해주세요.

○外務部企劃管理室長 金恒經 企劃管理室長 설명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大使館 敷地問題는 404만불이 책정되어 지적하신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적절한 敷地를 구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싱가포르이 워낙 국토가 많은 부분이 國有地이고 私有土地가 많지 않기 때문에 駐싱가포르大使館이 이 敷地를 구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 저희가 이해하고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저희 豫算當

局하고 國有化事業問題와 관련해서 저희로서 애로점이라고 하는 것을 한가지 말씀을 올리면 보통 싱가포르...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이 이 敷地를 財經院에 신청한 액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敷地를 구입할 때 모든 시장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불이다 이렇게 시장조사가 가격이 나와서 현지 公館에서 건의가 오면 저희가 豫算當局에 1,000만불 신청하면 심사해서 700만불 800만불로 와서 깎이는 것이 상례입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심사를 해주시고...

그래서 싱가포르 이외에도 92년도에 이탈리아大使館의 官邸를 700만불 받고 거기에 해당하는 1,000만불 이상을 신청했는데 700만불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적합한 주택을 찾지 못해서 국고에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404만불을 받았을 때 駐싱가포르大使館으로서는 최대한도로 適正地를 敷地로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 규모와 그 가격의 大使館規模에 합당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국고에 다시 반납하는 것을 다른 긴요한 국유화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보고드리대로 豫算當局과 財經院과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豫算會計法 37조에 의해서 轉用하게 된 것입니다.

○李富榮委員 나중에 싱가포르大使館 敷地買入한다고 豫算當局에 또 신청하면 外務部에서 또 다른 데 전용해서 쓸 것이니까 쓸 필요없다 그런 협의를 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몇달전 예산을 확정해 놓고 그렇게 신청해서 어렵게 예산을 획득해 놓고 다른 데 써버리고 이것을 또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外務부가 세운 계획을 豫算當局에서 이것을 믿겠느냐구요.

○外務部企劃管理室長 金恒經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대부분의 경우가 실제 현실 시가하고 저희가 예산에 책정된 예산하고 차이가 나서 결국은 저희가 목적하는 그런 敷地나 건물을 구입하지 못한 경우가 國有化事業에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이 이런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실가와 가장 근사하게 豫

算當局과 예산을 교섭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데이터틀 준비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어떠한 일단 쓰지 못하는 적정한 것을 구하지 못하는 예산은 轉用을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李富榮委員 404만불이라는 것이 크다면 큰 돈인데 이 돈을 敷地買入費로 예산을 책정했으면 그 현지의 大使나 현지의 大使館員들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책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겠어요? 이것을 몇달도 안되어서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轉用해 버리면서 어떻게 요 다음에 돈을 또 달라고 하겠어요.

이런 것이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낳고 더욱이나 豫算當局으로부터 外務部가 불신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잘못을 인정 안하십니까?

○外務部企劃管理室長 金恒經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 인정하고 유념하겠습니다.

○李富榮委員 예, 좋습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러면 베네주엘라 고오베 總領事館 廳舍 増·改築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고...

○李富榮委員 그리고 아까 豫算會計法上에 繼續費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 있지요? 앞으로 제가 지적한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單年度別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그런다면 계속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大使館 官邸 新築費라든지 이런 것들 한 3년까지 걸리는 일이면 그것에 합당한 예산을 豫算當局과 협의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増·改築한다고 해서 그냥 또 뒤바뀔 것이란 말이지요.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豫算當局하고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李富榮委員 이것은 豫算會計法 違反입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제까지 집행한 경험에 의하면 물론 豫算當局이 총규모의 계획을 가지고 當該年度 實支出豫算額만을 계상한다는 원칙하에서 금년도에는 설계비 토지구입비 그리고 다음 해에는

다음 1년동안의 건축할 수 있는 이렇게 연도별로 計上을 해온 경우가 저희 外務部の 경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李委員님의 지적을 우리가 언급하면서 豫算當局하고 좀더 금후에 개선방법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하나의 커다란 원칙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利子發生差異로 인한 損失問題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國庫債와 관련해서 起債를 早期에 해서 이자를 얻었다고 하나 사실은 起債時에 利子率과 예금사이의 利子率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國有化事業이 起債는 利子負擔額輕減 등을 위해서 총예산을 敷地確保 新築 改·補修 등 사업집행의 단계별로 소요예산을 分割起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起債된 예산은 實 執行時까지 公館未來銀行에 별도 계좌에 예치해서 필요시마다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借入利子率과 預置利子率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충 1%의 마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94년중 國有化事業과 관련해서 借入金은 총 7건에 1,620만불로서 이 중 250만불은 起債 즉시 집행되고 1,370만불은 預置되어서 35만8,000불의 利子가 발생했습니다. 同 預置金額에 대한 借入利子는 현재 정확히 算出이 안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報告드리겠습니다.

○李富榮委員 豫算損失金額 그 손실액수는 아직 계산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外務部企劃管理室長 金恒經 현재 지금 이차에서 정확히 산출이 안되어서 추후 이것은 저희들이 서두제출을 하겠습니다. 금후 國有化事業의 심의단계부터 필요한 資金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剩餘額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利子負擔率을 줄이도록 加一層 명심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富榮委員 그런데요. 제가 참 딱하게 생각하는데 이자발생한 36만불만 記載를 해놓고 실제로 損害였다는 것은 기재를 안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돈

을 꾸어 가지고 數地나 이런 것을 買入을 못하니까 은행에다 같이 넣어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애기만 하고 실제로 손해본 이야기는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때가 맞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을 무계획하게 꾸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손해본 얘기는 안하고 다시 그것을 은행에 집어 넣어서 얻은 이자애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달러가치가 떨어졌길래 망정이지 그동안 우리가 달러 換率이 떨어져서 우리가 좀 이익을 봤습니다. 손해를 그렇게 크게 많이 안봤을 거예요. 만약에 달러가치가 그야말로 그렇게 올라가지고 換差損이나 크게 봤더라면 어떻게 할뻔 했느냐 말이지요.

물론 外務部 자신이 무슨 國際金利나 이런 것을 다루는 部署가 아니기 때문에 國際金利가 어떻게 변동될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달러가치가 그렇게急落을 해버리거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큰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뻔했느냐는 말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손해를 보지 않았길래 망정이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돈을 함부로 꾸고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다 갖다 넣어놓고 다른 쪽으로 손해를 보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냐 이 말이지요.

이것은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이 廳舍數地買入이나 아니면 그 건물을 세우거나 이런 돈은 엄청나게 金額이 크기 때문에 國際金利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이 문제에 대해서는 行政指導와 監督을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 在外公館의 國有化財産管理를 위해서 T/O에는 없습니다만 임무부여를 해가지고 심의관 한 사람을 증원을 해서 管理室長을 지금 보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좀더 철저한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똑같은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李富榮委員 예, 좋습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다음에 收入對替經費 實收納額이 당초 예산보다 222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것이 왜 이렇게 近視眼的이고 豫測不可能하였느냐 이러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96年度에는 適正歲入豫算計算對策이 되어 있느냐 이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收入對替經費가 대폭 증가한 주요 사유는 海外旅行自由化 조치 이후 세계화추세로 인해서 해외여행자수가 93년도에 242만명이었습니다. 그것이 94년도에는 315만명으로 해서 약 30%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旅券發給 건수가 약 29%가 증가한 137만건이 發給이 되어서 그 여권수수료가 예상외로 徵收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收入代替經費 歲入豫算의 適正計算을 위해서 최근 3년간의 증가율을 포착을 해서 95年度 上半期 收納額까지도 고려를 해서 금년보다 약 19% 증가된 390억3,600만원선으로 策定했습니다. 가능한 歲入豫算額과 實際 徵收額의 差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李富榮委員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수입에다가 그 할 사업을 이게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75%나 超過徵收된다면 예산을 못할 정도로... 사실 작년에는 17% 초과징수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75%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수입이 늘어난다면 여권으로부터 메는 돈인데 국민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자 수자가 늘어나기는 하는 것이지만 그 대신 국민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늘어난다면 국민부담을 경감시켜 줄 생각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초과징수되는 대로 계속 거둬들이기만 할 것입니까? 초과징수되는 것만큼 국민부담을 경감시켜 줄 생각을 해야지요. 그 쪽으로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초과징수되는 것만큼 계속 늘릴 것입니까? 그냥 계속 거둬들이기만 하고...

○外務部長官 孔魯明 이것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93년도하고 94년도에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 가서는 완만한 상승커브를 그릴 것인지 또 여권기환을 지금 5년으로 연장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덜어지고 또 행정간소화의 차원에서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점을 충분히 유의하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李富榮委員 76% 가까이 초과징수가 되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당연히 국민부담을 줄여줘야지요. 그것을 얼마를 줄인다고 하면 늘어나는 것에 사업계획을 맞출 것입니까? 이것은 여기 저기서 국민들이 通過稅를 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경감을 시켜 줄 생각을 해야지 초과징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늘려잡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外務部長官 孔魯明 알겠습니다.

다음은 朴九濤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外政室長이 말씀을 일부분 드렸습니다. 마는 금번 北韓 水災와 관련해서 우리의 지원필요성을 한편으로 동족적인 입장에서는 인정하지만 무한정 북한을 돌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 특히 외무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수해에 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UN에 제출한 피해내용은 저희 潘基文室長이 얘기한 바와 같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저희의 의구심이 있기는 있습니다. UN조사단의 방북조사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 북한측이 제시한 이런 수자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판단해서 북한의 자체능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규모의 것이었다 이렇게 일단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수재보고 이후 정부는 통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서내에서 긴밀한 협의를 그 동안 해왔습니다.

북한의 水災支援問題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앞으로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나 남북한 자원의 이러한 문제에서 보는 시각이 하나 있겠고 다른 한 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연재해를 당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국제적 인도적 견지에서 타당하겠느냐 이러한 측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지난번 북한에 대한 설치원 과정에서 있었던 북한에 대한 국민징서에 비추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朴定洙委員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북한이 정상적인 참여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행동을 해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나라 국민 여러분이 다 바라고 또 북한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인식하에서 저희는 이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북한 條約廢棄 이후에 러·북한 관계와 한·러 관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러·북한조약 폐기결정은 사실은 러·북한간이라기 보다는 소련하고 북한간에 체결된 조약이 러시아연방에 의해서 계승이 된 것입니다마는 러·북조약이 현재 러시아의 사정 또 북한·러시아의 관계 또 동북아정세 더 나아가서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판단을 러시아는 러시아연방이 된 시점부터 이미 예기하고 있었고 제1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정부는 조약폐기를 계기로 이번에 성식으로 조약폐기를 통과한 만큼 향후 북한과의 과거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설정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러시아정부의 이번 러·북한조약 폐기결정은 지난번 김영삼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에 정상간에 합의된 내용의 하나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한·러 우호협력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이번에 이 조약의 폐기를 계기로 해서 한·러 양국간의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가 발전될 것을 바랍니다. 또 한편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朴九湓委員 혹 러시아쪽에서 한·미관계와의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없었습니다.

다음에 文書變造事件과 관련하여 진상을 밝히기 위한 외무부의 조치내용과 뉴질랜드 이민청 결정에 대해서 崔乘震行政官이 항거할 경우 다소의 시일이 소요될 것같은데 李大使를 이 시점에서 소환한 이유는 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외무부는 崔乘震行政官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자진귀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同人에 대한 설득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동인이 이것을 거부함에 따라서 저희는 뉴질랜드정부에 동인이 외교관신분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라고 하는 점에서 조속히 송환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송환요구를 위해서 또 동인의 자진귀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난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제1차관보를 뉴질랜드에 파견하고 7월4일과 5일 당시 서울을 방문했던 「맥키논」外務部長官과 본인과의 韓·뉴外務長官會議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측의 요청에 따라서 뉴질랜드정부는 7월3일 崔乘震行政官에 대해서 강제퇴거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일자로 崔乘震이가 뉴질랜드정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함에 따라서 동인의 출국여부는 앞으로 뉴질랜드의 국내법상 난민처리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崔가 단순범죄자이며 귀국하더라도 정치적 박해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상 난민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뉴질랜드정부에 대해서 외교문서로써 동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박해가 가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장을 했고 대한민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국가인 점을 상기를 시켜서 소위 국제난민협약의 대상이 되는 난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송환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속히 절차를 밟아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은 금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李東翊大使를 왜 이 시점에서 소환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 9월12일 외무부대변인 발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초 崔乘震 前 行政官 사건발생 직후 이 文書變造流出事件이 우리 정부와 외무부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킨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李大使에 대한 지휘책임을 역시 물어서 소환을 검토했습니다.

崔行政官의 자진귀국을 위한 설득과 뉴질랜드정부와의 송환협조 등 사후수습이 우선 그 당시에는 책임을 묻는 것보다 시급했고 사태수습을 위해서 李大使가 계속 남아서 사건의 뒷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했기 때문에 소환을 미루어 오다가 일단 崔行政官에 대한 이민국의 인터뷰가 어느정도 대충 결정되어 가는 본 시점에서 이번에 李大使의 소환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海龜委員님께서 물으신 上海臨政廳舍와 重慶臨政廳舍에 관한 문제인데 李海龜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상당히 핵심부분을 이루고 있고 정곡을 찌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가 91년 12월에 중국 重慶市에 있는 임정청사가 철거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 북경주재 우리 대표부를 통해서 중국 외교부와 重慶市 정부측에 이 건물의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重慶市 정부측은 우리측의 요청을 수용해서 철거계획을 철회하고 92년3월에는 이 건물을 重慶市 지방문화재로 지정했고 93년12월 重慶市는 우리 정부와의 수차 협의끝에 이 건물을 양측이 소요경비를 동등히 분담해서 복원하기로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94년6월 현재 韓國獨立紀念館과 重慶市 人民大會友好協會간에 공식 협정서가 체결되었고 獨立紀念館과 重慶市측은 복원실무를 전문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실무합의서를 추가로 채택을 해 가지고 94년7월부터 12월간

에 세 차례, 95년1월에서 6월까지 세 차례 전문가회의를 개최해서 建物復元 工程確認 및 展示目錄確定 등 세부사항을 양측 합의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외무부분부와 주중대사관 또 문제부분 부직원 등이 총 11회 현지를 방문해서 복원 사업을 협의했고 독려해서 광복5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8월11일 역사적인 개관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저희 정부는 上海 臨時政府廳舍復元 및 관리경험을 살려서 重慶廳舍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중국관할권에 속하지만 향후 獨立紀念館과 重慶臨時廳舍 管理當局간에 同 廳舍管理 協定書를 체결할 경우에 우리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측과 사전 협의없이는 건물구조나 전시물을 변경 교체하거나 우리 관람객을 대상으로 모금함을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上海臨政建物과 관련해서도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서 철거 또는 수용 이러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본국이전이 아닌 현지보존의 경우 소재국 정부의 문화재로 지정 보존됨이 가장 실효성 있고 경제적인 관리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上海市 및 중국정부측 양국간의 우호협력정신 및 문화협력차원에서 우리 문화유적지를 최대한 잘 관리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上海臨政廳舍가 개관된 이후 현지를 관람한 우리 국민들의 건의와 93년 국정감사시 국회측의 요구 등을 감안해서 한국어 구사 안내원배치를 위한 안내원 방한 초청 연수실시와 함께 안내책자 및 안내방송테이프 등을 전면 우리식으로 제작 비치토록 했으며 駐上海總領事は 上海市측 관계관에게 同 廳舍 관람객에 대한 친절안내 등을 수차 당부해 오고 있습니다.

李委員께서 지적하신 소유권 문제는 해당 上海市측과 협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수반되는 문제입니다마는 李委員님이 걱정하시는 점을 저희도 잘알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李海龜委員 重慶廳舍가 문화재라고 그랬는데 上海 것은 문화재가 안되었습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지금 上海는 그러한 지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海龜委員 소유권 문제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所有權確保方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관리문제도 보니까 여차피 중국이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가보니까 될 관매해도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런 모조품이나 이런 것이 관매되지 않고 일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일반상품을 그 조그만 「스페이스」에서 팔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물어 보았더니 관리비가 이런 데에서 나온다 모금같은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돈주고 그러는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을 팔아서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에서 듣기에는... 이런 것이 관리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결국 우리가 관리를 안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욕심같아서는 소유권이 되고 또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된 제반자료들이 거기 전시가 되는 중국 滿洲에서 있었던, 南慶에서 있었던 그런 사진같은 것들이 전시가 되어서 명실공히 舊 臨時政府가 우리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되도록, 지금 보니까 거기 돌르는 사람들은 전부 백두산하고 임시정부는 다 가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곳에 좀 더, 지금도 정부에서 많이 노력해서 깨끗이 정비해 놓고 이제까지 많이 노력했고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예, 報勳處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李海龜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점들을 저희가 좀더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海龜委員 그리고 지금 朴九湓委員님 답변에서 제기되고 사실은 統一院 소관이면서 같은 정부의 소관입니다마는 쌀 세공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것을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국민이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너무 이런 직선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적인 측면 동포애적인 측면에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 놓고 국민의 동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망설여진다 동의를 얻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하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잘못 나가다가는 마치 우리 국민한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다른 분야는 統一院하고 얘기합니다마는 外務部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사회에서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자기 동포들한테 쓸주는 문제로 그렇게 정부하고 실랑이하느냐,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왜 실랑이를 하느냐, 정부는 주려고 한단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을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직설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外務部 차원에서는 또 정부 차원에서는 쌀이 당연히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동포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요청을 하고 일부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느냐는 적나라한 사유가 북한에 있음을 과정적으로 명백하게 보여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로서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왜 국민들한테 동의하지 않느냐 동의하면 내가 주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동의해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林采正幹事, 吳世應委員長과 司會交代)

동의해도 이 정부가 의연하게 북한하고 너희가 같은 동포로서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水害가 나고 그랬으니까 지원을 하겠다,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의료지원을 하겠다, 같이 지원해 나가는 절차를 얘기하자... 의연하게 대북관계를 제의를 하고 저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는대로 그 문제를 노출시키고 응하면 응한 경우에 회담을 통해서... 미국도 거기에 지원을 하면 거기 지원품에다가 적어도 U.S.A를 거기에다 표시를 하지 않느냐, 국제사회의 한 국가로서의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도 절차와 표시와 여러 가지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정상적인 진행을 해서 저쪽에서 비정부적인 도저히 하나의 국가로서 취하지 못할 그런 행태를 그대로 국민한테도 보여주고 국제사회에도 보여줌으로써 이것은 우리 정부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는데 북한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구나 북한 정부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나오는구나, 당장 세계 여러 나라에 요청을 하면서 가장 가깝게 있고 가장 제공이 용이한 대한민국에는 지금 공식요청이 없다 이런 사실을 비롯해서 진행을 해 나가면 국민도 정부를 이해하고 국제사회도 이해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것을 밀고 나가야지 그냥 정부는 주고 싶어 안달하는 것 같이 보이고 국민은 왜 그렇게 치욕적으로 주느냐, 저자세로 주느냐 하고 정부를 불신하고 이런 단순논리로 이 문제를 끌고 나가서 잘못 하다가는 국제사회에도 대한민국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外務部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外務部가 중요한 對北 部處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회의나 그런 外務部의 국제적인 입장을 살려서 이번 水害問題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외국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동포로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 정상적인 진행을 해 나가면 조금도 꿀릴 것도 없고 정당하게 절차와 진행을 해 나가면 나는 국제사회도 이해하고 우리 국민도 이해하고 우리 정부도 떳떳하게 할 일 다 하고 결국 북한 정부가 비정부적인 비국가적인 이런 정부구나 하는 것이 노출되고 만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깨달아 가지고 입장 곤란하니까 다 받아 주면 주고 안 받아 주면 그때 안 주어도 이해가 된다 이런 차원으로 문제를 끌고 나가야지 이 문제를 그냥 준다 안 준다, 국민이 동의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마치 남한의 문제인양... 이것이 사실 북한 정부의 문제인데 남한 정부의 문제이고 남한 국민의 문제인양 이렇게 국제사회에 비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 국민도 마치 이 정부의 문제인양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 統一外務委員會에서도 정부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갖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정부가

바로 생각해서 이것을 너무 무슨 국제사회니 국민이니 국회니 의식하지 말고 정부가 정정당당하게 해야 될 일을 떳떳하게 믿고 나가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문제를 믿고 나가야지 정도로 나가야지 이것을 자꾸 이렇게 트릭으로 나가면 안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外務部長官께서 오늘 정부를 대표해서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정식으로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外務部長官 孔魯明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世應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실 분이 세 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질의를 듣고 그리고 잠시 좀 停會를 하고 그리고 다시 계속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宮 鎮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南宮 鎮委員 여기 委員會의 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세입세출 동의를 받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 外務部 여러분에게 한 위원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세입세출 질의보다 정책질의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 얘기가 마치 행차후에 나팔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고통스러우셔도 좀 들어 주십시오.

먼저 세입세출 질의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의견을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外務部가 오늘 동의를 받으려는 歲入歲出의 목표는 1차적으로 국가적 가치와 요즘 탈냉전 이후에 보편화되고 있는 포괄적 안보이익의 보전과 나아가서 확대에 있기 때문에 오늘 94年度 歲入歲出 決算承認을 위한 검토를 제가 하면서 長官께서 보고한 9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본위원의 다른 차원의 평가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94년도 한국 외교는, 이것은 外務部の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처참한 패착의 연속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늘 이 歲入歲出을 검토하는 저의 심정은 매우 회오의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면서 外務部가 96년도에는 심기일전하고 일대 경각심을 가져서

빛나는 업무를 수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한두 가지 적시를 한다면 첫째로 이 94년도는 우리 한반도에 남북간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訪北으로 일단 불은 꺾지만 어쨌거나 우리 정부는 카터의 방북까지도 반대했었으니깐요. 둘째로 정상회담은 사실상 연속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 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경제제재를 하자고 우리가 합의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계속된 韓·中 韓·러 頂上會談에서 인내하라는 충고를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셋째로는 94년 10월 제네바회담의 합의때 어쨌거나 爐型으로 韓國型이 명기되지 않았고 중심적 역할이 확정적 명문으로 기재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국외자로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넷째로 대북 輕水爐 지원에서 국회와는 아무런 상의가 없이 그 비용의 지나친 상당한 액을 우리 한국이 떠맡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해의 우리가 평가와 더불어 반성을 하면서 내년도에 귀감으로 삼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 금년초 1월에 羅雄培 당시 委員長님 하고 위싱턴에 갔을 때 상원외교위원장 아태소위원회 하원의 국제관계위원회위원장 로드차관보 전부 만나서 이것은 미국이 절대적인 돈을 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서툴렀지만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짚어 볼까 합니다.

아까 李富榮委員이 國庫債務負擔行爲와 관련해서 긴 설명을 했는데 長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차이가 있는 몇 가지... 저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94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94년 실적으로 나타난 사업과는 이것이 전용이나 이런 성질이 아니고 사업변경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라면 豫算會計管理法上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좀 우스개 소리로 얘기하자면 영국에 水害가 나서 영국 관저에 증개축을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지 고베에 태풍이 불어 가지고 대사관이 넘어졌다는지 그래서 개축을 했다는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長官께서도 아까 누누이 설명하셨지만 증개축을 하고 또 신축을 하고 하려면 설계도 해야 합니다. 예산도 뽑아야 합니다. 그 규모가 클 때는 필요한 적절한 감리를 얻는다는가 하는 많은 절차가 있는데 느닷없이... 94년 예산은 93년에 확정된 것이니까요. 했다가 얼마 안 되어서 싱가포르 청사부지는 취소하고 또 다른 다섯 개의 신규사업이 전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여기 베네수엘라 청사 매입같은 것은 느닷없이 싼 물건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을 잡으면 한 10배 이득이 생기게 되어서 이것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廳舍를 매입하는 정도면 적어도 93년도에 시장조사가 되어 가지고 계획이 되었으면 94年 計劃事業에 넣지 왜 계획사업에 안 넣고 계획사업에 들어갔던 것을 사업변경해서 새로 느닷없이 이 廳舍를 사들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다 설명이 나왔었는데 機關運營 官署運營費 不用額에 대해서 李萬燮委員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아까 최승진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外務부가 94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外交情報通信網 事業을 계획했다는 것은 아주 착상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不用額 처리가 되었거든요.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산기 도입의 지연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불용액 내용중에 전산운영 사업이 역시 불용인데 그것이 본부와 재외공관간에 전산기 교체계획이 연기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떠한 것으로 파악이 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總務處 審査期間이 지연된 것이 한 요인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지요. 外務부가 外交情報通信電

算시스템을 현대화하고자 하는데 總務處가 심사기간을 지연시켜서 이것을 6개월인가 하는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예산도 낭비되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못하고 不用處理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李萬燮委員께서도 예산을 따는 外務部の 노력에 대해서 좀 의혹을 갖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外務部가 總務處 하나 설득해 가지고 전산기 도입지연을 왜 시키는가 하는 것을... 좀 국내 예산 외교는 못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外交情報通信電算시스템 現代化 推進事業과 관련해서 전산기를 도입하려고 했는지 임대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外務部の 歲入歲出決算報告書를 잘 들여다 보면 도입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라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 예산을 승인받을 때에 이 외교정보통신망 예산이 전체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임차로 부분으로 분류하셨거든요. 임차로로 했는데 이것을 매입하는 도입예산으로 결산을 처리하신다면 이것이 엄청난 업무상의 착오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런 착오까지는 外務部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정확성이 좀 잘 안 됐거나 부속문서에 있어서 설명이 미진했거나 둘중에 하나인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만 有權的인 해석은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아까 여러 委員들께서 지적했지만 또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在外公館 運營에 있어서 駐美임차로 부족액, 駐日임차로부족액, 駐中임차로부족액 그리고 主要公館중 임차로부족액등 각 주요공관에 임차로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在外公館共同運營費중에 기본급하고 수당에서 轉用했거든요. 그러면 94년도 재외공관임차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줄 때에 93년 대비 15.1%나 인상해서 사실 책정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引上率입니다. 다른 것에 대비해서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료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임차료는 그렇게 가변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94년 임차료예산, 93년대비 15.1% 인상시킨 그 예산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액이 부족액으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92년, 93년은 임차료부족액이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해만 15.1%나 인상시켰는데 94년 임차료예산의 그것도 4~5% 이런 것도 아니고 10%에 해당하는 이 막대한 차질이 생겼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당초 예산을 짤때 좀 세심한 배려가 있다면 이런 것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선의의 해석을 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答辯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不用額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불용액이 94년에 얼마입니까... 121억8,900만원인데요. 이것을 보면 外務行政費는 93년에 4억8,900만원이었는데 94년에는 30억6,000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불용액의 증가발생지표입니다. 왜 이런가?

그리고 93년에는 情報活動費라고 했는데 94년부터는 일반외교활동이라고 했죠?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에서 제가 꼭 보면 이런 비슷한 항목에서 비슷한 내용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96년 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불용액을 보면서 제가 조금 느낌이 있는 것은 經濟活動部分을 보면 94년에 4억6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어느 委員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外務部가 이제 世界化로 가는 마당에 세계화의 징의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동 부분은 각 공관에서 좀 돈을 적극적으로 써 가지고 하나라도 경제질보다 얻고 중소기업 연결시켜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경제활동비용에 불용액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느낄 때 느낌상 이것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오히려 예산 더 잡고 더 활동해서 좋은 성과 얻으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人件費 內容은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건비 부족액을 在外公館共同運營費중에서 수당에서 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在外公館의 共同運營費가 인건비 부족액을 채우는 창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96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지적한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해명을 듣고자 하고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얘기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外務部가 내년도에 빛나는 업적을 세우는데 있어서 좋은 하나의 충고의 말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제 質疑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世應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林采正委員 질의하십시오.

○林采正委員 오선부터 決算인데 사실은 정책 질의까지 전부 다 저인망으로 훑어낸 것처럼 하셨기 때문에 정책은 일체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결산부분도 불용액에서부터 移·轉用額까지 전부 거의 다 나온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여기 不用額調書를 보니까 201호의 관서운영비가 19억556만7,418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해서 불용이 나왔습니다. 관서운영비라고 그러면 經常費인데 어떻게 해서 무슨 계획을 어떻게 또 취소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官署運營費가 19억씩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이 관서운영비의 불용내역이 뭔지, 이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을 보니까 액수는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研究開發費가 다섯개 항목 정도가 전부 변경 취소가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사회, 급변하는 세계업무에 대

응하기 위해서 늘 필요한 것인데 무슨 연구 개발비를 계획했다가 전부 다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가 됐는지, 그레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다섯개 항목이나 됩니다. 현재 이 調書에 나타난 것만 보아가지고도...

이 연구개발비가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해서 불용이 나왔는지 이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이 원래는 國監다음에 하는 것인데 國監앞으로 나와가지고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이런 자료를 사전에 못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에 外務部 豫備費使用調書에 따르면 지출된 액수가 94억4,700만원인데 이것 전액이 전부 다 大統領行幸費뿐입니다. 예비비가 전부 다 대통령행사비 뿐인데 그러면 예비비의 23.1%는 29억2,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外務部の 예비비가 대통령의 행사비만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닐텐데 어째서 이런 예비비사용이 되는 것인지, 외무부는 예비비를 처음부터 대통령행사비용만을 計上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不用額이 23.1%나 되는데 그렇다면 예비비 자체를 비현실적으로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豫備費 算定基準이라고 할까 이렇게 또 많은 예비비가 남는 이유가 뭔지, 물론 예비비니까 남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대통령이 네번씩이나 밖으로 해외로 나가신다는 것이 좋게 생각하면 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一國의 大統領이 네번씩이나 1년에 나간다는 것도 좀 과다하게 생각이 되고 그 네번의 해외방문에 90억3,9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도 우리 경제 형편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좀 과한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長官의 견해를 물겠고요.

94년 6월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방문의 경우에 30억1,700만원이 소요됐는데 여기에 보면 特殊活動費 9억6,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방문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의 9억6,000만원의 특수활동비라는게 뭔가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옛날에는 특수활동비라고 그러면 매력적인 것으로 政府에서 들렸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특수”자 붙으면 의혹의 대상입니다. 국회에서는... 이 특수활동비라는게 원대 9억6,000만원씩 1週日 사이에 나갔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應 예, 수고하셨습니다.

具昌林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具昌林委員 그 輕水爐建設費用問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경수로건설비는 지난번 韓昇洲長官 계실 때 이 부담비율 또 이 예산으로 하면 예산에 대한 국회동의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前任 長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소관이 外務部입니까 統一院입니까? 그것을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外務部長官 孔魯明 統一院이 되겠습니다.

○具昌林委員 그러면 앞으로 外務部는 이 문제는 전혀 關與를 안하십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교섭은 저희 소관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기획단이 사업단으로 전신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소속상으로는 統一院 傘下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통일원 소관이 됩니다.

○具昌林委員 그러면 경수로건설비의 우리 정부 부담비율이 KEDO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것은 統一院長官한테 報告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겠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무래도 그것은 명목적인 선이고 실질적으로는 韓·美兩國間에 이것이 교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물론 앞으로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섭이 진행중인 北韓과 KEDO간에 공급협정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KEDO가 저희 韓電하고 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끝나게 되면 대체적인 비용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때 가서 韓·美·日 3國間의 협의에 의해서 구체적인

비용부담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具昌林委員 그때는 외무부에서 交渉을 하시켰군요.

○外務部長官 孔魯明 따라서 이런 모든 교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가운데 저희 외무부가 교섭의 당사자로서 물론 책임지고 임합니다.

○具昌林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미국정부와의 협의나 일본정부와의 협의에서 우리의 부담비율이 몇 %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선이 얼마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지금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主導的인 役割을 할 것이고 일본은 거기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나름대로의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역할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總體的인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서 숫자가 나올때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具昌林委員 예,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韓昇洲長官이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50%선을 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제가 寡聞한 탓으로 迅速記錄을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다시 물어다 본 후에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具昌林委員 예, 그러면 이것과 아울러서 附帶費用문제가 이제 表面化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대비용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국가는 기회에 미국정부의 要路에 있는 사람들하고 표피적인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미국정부는 한푼도 못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본 輕水爐 建設事業에 대한 비용도 미국은 안낼 것이고... 중요문제도 지금 미국이 거의 충분한 예산을 지원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주도적인 역할이라면 50%는

넘어야 주도적인 역할이 될 것이고 부대비용 문제가 나와서 이 부담을 또 KEDO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주도적으로 또 이것을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미국쪽에서는 전혀 1분도 내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外務部가 미국, 일본정부와의 협상에 지금은 뒷전에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마는 전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相應하는 전략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長官님의 腹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委員들이 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國庫負擔行爲 國有化事業問題인데요. 제가 泰國大使館에 가셔도 보고 여러 지역에 가서 관저 또 청사를 봤는데요. 이것은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 이것이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고쳐야 됩니다. 지금 74년 이래로 이 자료에 의하면 外務部가 국고 부담행위로 해서 국유화사업 한 것이 3,000억이 넘습니다. 지금도 빚이 1,600억이 넘습니다. 2억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집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현지 公館長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관장들이 건축이나 부동산 관계나 전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전문가일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100% 자기 마음대로 땅 사고 팔고 건설하고 지금 이러고 있고 본부에서 물론 國有化事業審議委員會라는 것이 명목상 있습니다마는 企劃管理室長 혼자 하는 것인데 아까 장관께서 審議官 하나 지정을 해두었다 했는데 그것은 발전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외국의 큰 나라처럼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公館長이 제가 알기에는 이 국유화사업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다만 어느 지역이 외교활동에 적합한 지역이나 하는 정도의 공관장 의견은 참고할 수 있을지라도 공관장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하는 이것은 안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공관에 공관장이 부임하셔 가지고 3년동안 집짓는 일에 專念하다 와요. 또 막상 집을 짓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막대한 국고부담행위를 하는 이것은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70년대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21世紀를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報告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국제경쟁력강화에 外務部本部廳舍 건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국제경쟁력 강화하는데 본부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 큰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조금 탈피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데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南宮 鎮委員이 적절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敷地買入하고 新築하는 것을 國庫負擔行爲로 하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增·改築을 國庫負擔行爲로 합니까? 다시 말하면 왜 돈을 꾸어 가지고 增·改築을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아까 고오베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지진 때문에 官邸하고 廳舍가 손상을 입어서 不可不 그것을 전용해 가지고 增·改築을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진은 금년 1월달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增·改築한 것 손상 안입었어요?

최우지간 增·改築을 본예산에 策定을 안하고... 계획해 가지고 미리 계약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본예산에 施設費나 資產取得費나 넣지 않고 國庫負擔行爲로 돈꾸어서 增·改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官邸 경우에는 國有化가 50%가 넘었습니다. 廳舍 경우에는 40% 조금 미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 어느 공관까지는 國有化를 하고 어느 지역 어느 공관은 國有化를 단계적으로 10년후에 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요. 조금 語弊가 있습니다마는 로비 잘하는 公館長이 나가면 거기는 느닷없이 官邸를 사고... 이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보니까 기준도 없더군요.

그래서 이 國有化事業에 대해서 종합적인 指針 그리고 國有化事業審議委員會構成 등등 해 가지고 長官께서 정책을 새로 立案하셔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을 하셔야지 자꾸 우리 國內 公務員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업한다 하면 집부터 짓는다구요. 이것은 아주 後進의인 얘기입니다. 하드웨어 있다고 소프트웨어가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런 비용을 外交官移轉費라든지 教育費라든지 이런데 보충해 주는게 낫습니다. 특히 계획에도 없는 增·改築을 國庫負擔行爲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領事關係豫算이 저는 불충분하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朴定洙委員께서 美國大使館 비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中國大使館에서 朝鮮族이 우리 비자 받을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도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역사의 희생자들인데 지금 우리가 좀 살게 됐는데 그 사람들 한번 편하게 못 해줍니까? 무슨 인력타령이고 예산타령입니까? 여기 不用額이 몇백억씩 있는데 그것 돌려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公館運營經費로 말이죠.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비자나 영사확인 행위를 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옛날에 보도 보니까 일주일동안 걸 거리에서 잔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사실인지, 이것은 장관의 意志部分입니다. 意志를 한번 表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朴九湓委員이 李大使 召還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께서 答辯하시는 것을 꼼꼼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대사의 교체문제가 아니냐 저는 장관님 답변을 들으니까 交替를 해야 할 일인데 召還을 했다 이거예요. 召還이라는 「리콜」이라는 외교행위를 하셨는데 물론 그 내면뜻도 알겠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外務部 內部問題입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政治問題化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놔두고 發端의 事案으로 보면 이것은 外務部 自體問題입니다.

그러면 外務部の 존재이유가 됩니까? 나라와 友邦國간에 外交增進이고 國益增進 아닙니까? 그러면 外務部の 名譽가 훼손됐다 하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회복이 되어야지요.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뉴질랜드와의 우리 國益이 外務部 名譽보다 덜 중요하냐 이것은 조금 語弊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外務部 일일수록 國益을 먼저 앞세우고 뉴질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치면은 그 고려가 먼저고 外務部 名譽回復은 그 다음이 아니냐. 왜냐하면 당사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長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꼭 장관님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苦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美國下院이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對北關聯決議案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美國下院이 해주었다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훌륭한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우리 公館에다 지시를 하실 때 公館長들이 韓半島 平和를 위해서 무엇을 추진하라고 그러니까? 南北對話를 해야 된다고 그것뿐입니까? 저는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자꾸 남북대화 남북대화 하시는데 남북대화가 언제 안했습니까? 했죠. 구체적으로 그 決議案에 있듯이 DMZ에 있는 북한군 前進配置한 것을 減縮시키고 後退시키고 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무기들을 감축시키는 그런 국제여론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指示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 決議案과 관련해서 장관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17時33分 會議中止)

(18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世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林采正委員 추가질의 한 가지 먼저 하십시오.

○林采正委員 어차피 내일 답변하실 것이니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코리아펀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지금 여권

발급하는 데에서 오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收入對替經費 收入에 원래 산정하셨던 것과 실제 수납액이 큰 차이가 나는데 내가 보기로는 그게 나는 작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옮겨보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코리아펀드」 기금때문에 낮추어서 책정을 하시는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고 그러나 사실은 아니든 간에 그러면 여권발급하는 데에서 나오는 비용 가지고 그 기금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대경비 빼고는 대개 다 그쪽 기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권발급수수료중에 일부가, 퍼센테이지는 조금 있다 실무자한테 확인하겠습니다마는 1만5,000원인가 일정액이 자동적으로 공제됩니다. 그래서 수입대체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林采正委員 그러면 부대경비 빼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국고환수됩니까?

○外務部長官 孔魯明 예, 그렇지요.

○林采正委員 그렇다고 할 경우 지금 그 기금이라는 것이 대개 여권발급하는 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여권발급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수입하고 그 다음에 「코리아펀드」기금은 자꾸 늘어나야 할 추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금과 이쪽에서 발생하는 대체경비에서 나오는 비용이 균형이 안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그런 「코리아펀드」는 우리 해외활동이 많아지고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용처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앞으로 감당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실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권발급량은 앞으로 어느 정도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거기서 오는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코리아펀드」가 그 수입을 감당할 길이 앞으로 없을 것 아닙니까? 여권발급량은 한도에 이를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런 대책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래서 收入對替經費를 자꾸 낮게 책정을 하고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배 오해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도 한꺼번에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世應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統一院의 現況報告를 듣고 그리고 2시 반에 외무부 지금 남은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外務部現況報告를 들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時19分 散會)

○出席委員

吳世應	具昌林	金榮龜
朴定洙	徐廷和	安武赫
李萬燮	李世基	李海龜
鄭在文	崔炯佑	黃寅性
林采正	孫世一	李鍾贊
李富榮	金元基	南宮鎮
李愚貞	朴九溢	鄭夢準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姜熙復
專門委員	李益成

○出席國務委員

外務部長官	孔魯明
-------	-----

○出席政府委員

外務部	
次官	李時榮
企劃管理室長	金恒經
外交政策企劃室長	潘基文
美洲局長	任晟準
歐洲局長	韓泰圭
西亞 카局長	金明培
國際聯合局長	咸明澈
條約局長	吳潤卿
國際經濟局長	尹志峻
通商局長	張基浩
文化協力局長	金富寬
在外國民領事局長	姜雄植
外交安保研究院長	李廷彬